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¹⁾

김 성 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국회의원 보좌관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지난 5월 경 한 언론사 기자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언론중재법으로 포털뉴스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 규제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필자는 포털뉴스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포털사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기자는 더 들을 필요 없다는 듯 전화를 바로 끊었다. 포털에 대한 규제가 아니니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바라보는 기존 미디어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포털은 뉴스를 유통하고 그 뉴스는 언론사가 만든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포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언론은 이 문제를 포털사만 책임져야 하는 규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²⁾

인터넷 시대의 뉴스 유통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뉴스에 대한 제

과 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기성 언론과 포털사업자 간의 공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인터넷상에서의 생산 주체와 유통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각의 주체에 맞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생산과 유통이라는 인터넷 분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이들 상호 간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올드 미디어나 뉴 미디어나 인터넷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새로운 시대: 매체 융합과 기능 분화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방송과 신문의 활동 영역도 빠르게 변화했고, 드디어는 서로의 경계를 넘기 시작했다. 인터넷 등장 이전에는 방송에는 방송에 대한 규범, 그리고 신문에는 신문에 대한 규범이 있었다. 라디오, 음악, 그리고 게임 또한 그

1) 이 글의 기본 틀에 대한 연구는 본 협회 소속 김지연 연구위원과 함께 하였음을 밝혀둔다.

2)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 "포털, 책임도 안지면서 언론행세"가 대표적

신문·방송처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인터넷의 작동방식은 '개방적 틀'을 지향,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렇듯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규율과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 매체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선 지금 그 교집합의 영역에 누구의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겼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놓고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를 다툰 논쟁이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IPTV가 어느 하나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방송이기도 하고 통신이기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이나 아니냐 하는 논쟁도 어느 한 쪽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결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관점에 따라 일부 언론의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융합의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법적 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³⁾

방송과 통신 등의 융합 환경이 매체 간 경계를 무너뜨린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령,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의 경우는 콘텐츠 제작, 유통, 전송을 모두 단일 주체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적 역할이 전문화와 분화를 거치고 참여의 규모도 커지면서 콘텐츠의 제작, 유통, 전송 등의 기능을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그러한 세분화를 촉진시켰

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인터넷의 어떠한 특징이 그러한 역할의 세분화를 가져왔는가? 무엇보다 인터넷이란 도구는 과거 신문과 방송이 가진 일방향적 의제설정 기능에 쌍방향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터넷의 작동방식은 신문이나 방송처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소위 '개방적 틀'(Open Architecture)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는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의 틀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무정형의 틀을 의미한다.

이 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가 그동안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뉴스에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뉴스를 읽다 보면 이용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뉴스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을 깨우쳐 주는 뉴스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생각과 전면 배치되거나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는 과거의 '독자기고란'처럼 언론사의 편집 혹은 취사선택의 여지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했다. 바로 그것이 '댓글'이 가능한 인터넷으로 보는 뉴스인 것이다. 인터넷상의 뉴스서비스는 댓글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결국 모든 서비스가 댓글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인터넷 뉴스서비스보다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더 각광받았던 이유가 있다. 그

3) 이러한 개념적 정립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포털뉴스에 대한 부정적 주장이나 특정 법에 의거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땅히 지양되는 것이 옳다.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동되어 있는지는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 "언론 아닌 포털에 신문법 적용 잘못"을 볼 것.

하나의 이용자가 모든 뉴스를 이곳 저곳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보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통 서비스를 하기에는 기존 언론 매체가 어울리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의 똑같은 콘텐츠를 산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의 콘텐츠마다 특정 성향과 논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결국 모든 기사를 다루는 서비스는 특정 성향을 띠는 언론사가 아니라 단순 유통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행해야 했던 것이다.⁴⁾

온라인 공간의 뉴스 이용형태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

방문자(UV)를 기준으로 할 때 주요 포털과 언론사닷컴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페이지뷰(PV)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페이지뷰 규모가 가장 큰 '다음'과 언론사닷컴 중에서 가장 페이지뷰 규모가 큰 '조선닷컴'을 비교할 때 2007년 10월 기준으로 '조선닷컴'은 '다음'의 42%에 불과하다.⁵⁾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서 보듯 개방화된 틀은 참여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더불어 혁신도 가능하게 했다. EU는 지난해 발표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안'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 "융합기술의 발달로 콘텐츠 소비행태가 일방향 전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가 아닌 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정책이 필요

〈타 인터넷 매체와 비교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소비 수준〉

2007년 10월 기준 (단위 명)

UV 기준				PV 기준			
순위	사이트	방문자 수(명)		순위	사이트	방문자 수(명)	
		2005년 10월	2007년 10월			2005년 10월	2007년 10월
1	naver.com	20,016,762	22,286,980	1	daum.net	3,967,120	3,265,039
2	daum.net	19,405,588	18,734,363	2	naver.com	2,739,706	2,630,174
3	nate.com	11,891,964	9,922,663	3	yahoo.co.kr	580,894	683,924
4	joins.com	4,869,233	9,878,879	4	nate.com	383,811	664,200
5	chosun.com	5,477,892	9,446,146	5	empas.com	220,252	404,195
6	yahoo.co.kr	8,086,150	6,312,140	6	paran.com	207,251	231,797
7	cyworld.com	-	6,078,586	7	cyworld.com	-	227,960
8	hankooki.com	2,445,517	5,869,258	8	hanafos.com	129,354	147,680
9	dailyseop.com	219,690	5,039,881	9	chosun.com	161,655	136,454
10	paran.com	4,890,003	4,401,682	10	joins.com	96,451	95,302

출처: 코리안클릭

4) 혹자는 포털 뉴스가 특정 이념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포털이 특정 성향을 띠는 즉시 이러한 중립적 성격의 유통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5) 김제영·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08. 5.

지금이라도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드는 담론을
형성할 필요 있어

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껏 우리가 포털뉴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는지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용자의 뉴스 소비행태 변화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⁶⁾

이제 새로운 융합 서비스 환경에 맞게 기능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EU는 2002년에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역무를 통합하는 등 수직적 규제를 계층별 수평규제로 전환하는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복잡해진 시장을 유연하게 확정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3년 역무를 전자통신망, 서

비스, 콘텐츠로 역무를 3분화했다. 또한 허가제를 ‘일반 인가’ 방식의 등록제로 간소화했다.⁷⁾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가 수평규제의 틀에 합의한 바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 지금에도 분류기준에 대한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드는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융합 환경에서 규제의 기준은 ‘기능’

일반적으로 정보 서비스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

〈표1〉 인터넷 산업의 기능별 3분류 체계

계 층	분 류	특징 및 기능
3	콘텐츠제작자(CP)	-창작 혹은 제작자(Publisher) -정보 자원을 가공하여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비영리 행위 포함)
2	서비스제공자(SP)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중개 혹은 유통자(Distributor) -게시판 서비스, 검색 서비스, 뉴스서비스 등, ASP, IPTV 서비스, 오픈마켓 등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역할
1	네트워크제공자(NP)	-물리적 접속 제공자(Physical Access) -물리적 네트워크 운영, 인터넷 접속 및 전송 서비스를 제공

〈표2〉 3주체에 대한 진흥 및 규제체계

계 층	분 류	진 흥	규 제
3	콘텐츠제작자(CP)	자율심의 및 사전 검열 금지	콘텐츠의 질적 자기 책임
2	서비스제공자(SP)	면책(Safe Harbor)	이용자 접근 보장
1	네트워크제공자(NP)	망 투자 및 고급화 지원	자연 독점 규제

6) 지난 17대 국회 내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했으나 정작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다.

7) 다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규제를 적용기로 했다.

괄하면서도 각 기능적 특징을 뚜렷하게 나누는 분류로서 아래와 같은 체계가 타당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명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콘텐츠 제작] - [서비스 제공 또는 정보 유통] - [물리적 전송]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가장 아래 단계에는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 제공자(NP: Network Provider)가 자리 잡고 있다. 물리적 접근과 전송을 담당하는 KT나 SKT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능은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가장 상위 단계에는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가 있다. 게임·음반·영화·뉴스 등 모든 성격의 정보를 가공하여 저작물을 제작하는 창작의 영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콘텐츠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 영역(SP: Service Provider)이다. 이 영역은 정보와 콘텐츠가 유통되는 매개의 역할을 행한다. 이 각각의 영역은 하는 역할이 다른 만큼 그 성격에 맞는진흥책과 규제책이 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 제공자 영역의 경우 인터넷 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사업 분야인 만큼 망에 대한 투자 및 고급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금껏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⁸⁾ 그러나 망에 대한 동등접근 및 비차별 전송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돼 가고 있어 초창기 인터넷 시절과 달리 차별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물리적 지원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품질관리(QoS)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유형에 따라 또는 정보 전송자에 따라 트래픽의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비용을 책정할 수도 있게 된다.⁹⁾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 영역의 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지능화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경쟁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공정성 문제는 향후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⁰⁾

둘째, 콘텐츠 사업자 영역은 창작이 활성화되도

8) 정부의 설비 투자 역사에 대해서는 '사이버인터넷역사박물관' (<http://www.i-museum.or.kr>)을 볼 것

9)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 통제는 사실상 인터넷의 발전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 '인터넷 사회센터'의 바바라(Barbara) 교수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보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콘텐츠제작 및 서비스 유통 영역)에서의 시장 혁신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레벨의 통제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일명 IPTV 사업법)이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제14조)과 함께 금지행위(제17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0)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참여자들은 소비자 요구의 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을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혁신의 양은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네트워크 레벨의 시장 참여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그 양이 소규모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 중립성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제공자는 혁신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트래픽을 차별화하여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대량 혁신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터넷은 '바다'라고 불리듯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간,
 끝없는 단속의 숨바꼭질이 아니라 이용자에겐 교육과 계도가
 저작권자와 사업자에겐 자율적 협업유도가 필요

록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규제를 푸는 것이 옳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내용규제 수위가 과도하여 콘텐츠 창작 환경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따라서 광고를 포함하여 내용규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¹¹⁾ 특히 우리나라의 내용규제는 음란물 규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의 폭이 넓고 관련 조항의 해석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란물과 유해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와 사법기관 간의 판단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¹²⁾

이런 상황은 콘텐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부는 창작 환경의 가장 큰 저해 요소를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저작권법 강화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창작 환경이 과거의 오프라인 시절과 다르기 때문에 대응책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인터넷이 '바다'라고 불리듯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끝없는 단속의 숨바꼭질이 아니라 이용자에

겐 교육과 계도를, 그리고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에는 저가 유료화 모델 마련 등 자율적인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작 환경이 열악한 이유에는 이렇듯 자율보다 타율 혹은 규제에 의존하는 정부의 잘못된 저작권 대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¹³⁾

효과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 시스템은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중앙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 시스템은 정부의 딱딱하고도 강제적인 규제에 비해 적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다.¹⁴⁾ 따라서 정부 규제의 폭을 크게 줄이고,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규제와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적 변화이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등급 시스템도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하는 구조를 격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 최근 국가의 사전심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방송법 제32조2항이 규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TV광고 검열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게임에 대해 국가가 아닌 게임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콘텐츠를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을 엔터테인먼트 게시판에 올렸다가 검찰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지만 검찰은 “자율기구인 영등위의 등급은 절대적이지 않고, 검찰 자체적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통방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13) 최근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속에서 더 나아가 망에 대한 차단까지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창작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콘텐츠 담당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망에 대한 통제 업무도 담당하겠다는 것은 3분류와 수평적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14) 자율규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황승흠 외,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참조.

3. 서비스 제공자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 대해 논할 차례이다. 사실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가 않았다.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 인터넷 또는 새로운 융합 환경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 그들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관심조차도 없었다. 존재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였다. 근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OSP)라는 개념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기존 산업군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은 부가적인 기능에 머물렀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부가 통신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이 점차 발전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크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배급 또는 유통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가령, 상품과 소비자, 판매자와 소비자,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이질적인 요소들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사업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도록 부담 지우는 규제 제도가 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고지(Notice & Take-it-down) 의무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프로그램 접속규칙(program access rule)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 사업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자사와 독점으로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디지털밀리터리저작권법' (DMCA) 512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유형을 4개로 나누고 있다. 1) 수동적으로 디지털 파일의 전송 통로만을 제공하는 전화망 또는 케이블 사업자 2) 디지털 파일을 임시로 저장해 주는 캐쉬 서비스 3) 인터넷 사용자에게 의해서 디지털 파일이 게재되고 저장되도록 하는 게시판 서비스 등 4) Directory, Index 또는 하이퍼링크와 같이 정보검색 도구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¹⁵⁾

미국의 DMCA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DMCA의 시도는 인터넷 매체가 전통적인 매체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의 유통구조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DMCA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직접 책임이 없는 주체에게 최소한의 주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그 외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안전한 항구(Safe Harbor) 조항이라고 칭한다. 책임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은 관련시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책임을 제한해 줌

15) DMCA는 전화망 사업자를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포괄하고 있다. 이는 DMCA가 저작권 분야에 한정된 책임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망 사업자처럼 물리적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 거의 없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진입 가능,
따라서 항상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어

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피하도록 하여 정보 유통 활성화와 시장축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지금부터 서비스 제공자 시장의 특징과 국제적인 규제 추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4. 서비스 제공자의 종류와 성격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개별 정보나 지식 그 자체 보다는 그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구성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자 원하는 정보를 가려내고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세 인쇄술의 발전으로 책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서분류법'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도서분류법은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 왔는데, 19세기 중반 이탈리아인 안토니오 파니치는 도서분류법 개발의 의미에 대해 '이제 가난한 학생도 부자와 함께 책을 읽고 논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통찰하고 있다.

이를 테면 도서분류법을 개발하고 이를 도서관에 적용한 사람들은 낱개의 책(또는 그 안의 정보)들을 일관된 규칙에 따라 하나의 구조 속에 배열·할당하고 색인 목록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 자체의 개별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증대시켰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최초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뉴스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인터넷 검색이 바로 이와 같은 서비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검색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의 대량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항상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지식)의 사회적 가치를 배가시켰고 정보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검색 서비스 또한 이용자의 정보가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재구성돼 가고 있다. 검색 서비스가 고정된 양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그들의 일상적 요구에 부응하는 '감응적 작업(Affective Work)' 방식을 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지식산업 시대의 전형적인 작업방식이기도 하다.

P2P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등도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일정한 구조로 배열시키고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온라인 서비스들이다. 이런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는 한 번의 배열로 정보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확장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도 온라인 서비스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판매정보를 구성하여 구매자가 접근하도록 도움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게 한다. 유통되는 것이 일반 정보가 아니라 거래 정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맥락이 같다.

RSS 서비스와 같은 매쉬업 형태의 서비스도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매쉬업 방식의 정보 유통은 온라인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¹⁶⁾

16) RSS는 Rich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업데이트 되는 웹사이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 표준. 블로그, 뉴스 등을 RSS 구독기에 등록하면, 웹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블TV 또는 IPTV 사업자도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수의 정보를 모아서 디지털TV 플랫폼 상에서 적절하게 배열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IPTV 등이 얼마나 많은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는 IPTV 사업자의 정보유통 구성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진입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진입을 가로막는 기득권도 없다.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항상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게다가 소위 잠금 현상(lock-in)이 거의 없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한 평가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즉, 이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깝다.

5. 외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일본의 온라인 책임제한법, 독일의 온라인서비스법 등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고 있다.¹⁷⁾

미국의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두면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완전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고 무리한 강제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 가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작권

자의 통지에 의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일반 공중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책이 성립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판단할 때 발행인(Publisher)과 배포자(Distributor)로 구분하여 이들의 책임을 상이하게 보고 있다. 즉, 발행인은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책임을 추궁 받지만 배포자는 명예훼손의 표현이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계시에 관한 법률'(소위 온라인책임제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정보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이 성립해야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했을 때 그 조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¹⁸⁾ 특히 일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을 저작권법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일반적 권리 분쟁 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DMCA 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1997년의 온라인서비스법(연방정

17)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術과法센터, 2006.

18) 또한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와 같은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공개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구분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면책해 줄 필요 있어

보통신서비스법 제1장에 해당)은 서비스 제공자를 수익을 목적으로 고유의 혹은 외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로를 임대하는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 정의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종류에 따라 그 책임 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5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이용을 저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근을 단순히 ‘매개’만 한 경우 그 내용물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은 없으며 다만 제한적인 내용물 차단 의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법은 ‘저작권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은 책임제한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 조항에 머무르고 있다.¹⁹⁾ 또한 게시물 삭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역시 임의적 면책에 머물고 있다. 미국 등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차단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기억해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현재의 면책조항은 실제적인 의미의 면책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²⁰⁾

최근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면책 규정이 없어 생긴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IPTV의 콘텐츠 심의를 두고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하자, 방송 콘텐츠를 대변하는 케이블 사업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²¹⁾ 콘텐츠 심의에 대한 근거 논리를 보면 양쪽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에서 보면 방송법상 서비스사업자란 것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방송 시간이나 채널을 빌려주는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

19) 저작권법 제103조는 제5항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문제는 최근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이 여기서 더 나아가 면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정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제27조), 유출통지 의무(제32조), 손해배상 책임(제36조)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를 충분히 취했을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은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중인 ‘정보통신망법’도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제89조),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제124조) 및 과태료 부과(제145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면책은 없다.

21) ‘콘텐츠 자율심의 두고 KT-케이블 신경전’, [아이뉴스24], 2008년 5월 2일

설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보면 자신이 제작은 하지 않았더라도 송출한 콘텐츠에 대해 선정성 등의 시비가 발생할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구분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면책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면책 규정이 있으면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우려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는 자신의 콘텐츠 창작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와 함께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자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면책을 언급한 것이 있었다. 2006년 10월에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뉴스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한 게시중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유통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뉴스 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일종으로 보고, 뉴스 제작자로서가 아닌 유통자의 책임을 수행했을 경우 면책을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²²⁾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

어쨌든 세계 각국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책조항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유통 구조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란 사회적 기대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유통 및 접근방식은 급속히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더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Information Discovery' 프로젝트가 한창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넷 개발자들은 초창기부터 고퍼 및 웹을 통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을 개발해 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들은 상호 연관관계 없이 흩어져 있다. 이는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 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에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 툴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정보접근 방식이 우리사회를 매료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려는 이유가 될 것이다.

7.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포털뉴스의 지위

이제 앞서 언급한 3분류 틀에 입각하여 포털뉴스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 보겠다. 일단 포털뉴스는 포털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유통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때 뉴스 서비스 제공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는 그 지위와 책임이 구분돼야 한다. 3분류 체계를 따라 해석하게 되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제작자(Publisher)로서 뉴스 작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사전 검열을 최소화하고 자율책임 하에 뒤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언

22) 개정안 제33조의2(게시중지조치 청구 등)에는 “뉴스서비스제공자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에 대하여 게시중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뉴스서비스제공자등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판단 내리기 어려워

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문법'에 그 정신이 녹아 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은 뉴스라는 정보 서비스를 유통(Distributor)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유통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뉴스를 유통할 뿐만 아니라 제작도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어떤 형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저작물을 인터넷으로만 유통하는 인터넷 신문, 유통을 주로 하되 일부 기사도 생산하는 인터넷 포털 등 너무나도 복잡한 인터넷 뉴스 사업자에 대해 어떤 지위와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뉴스를 제작하면 제작한 부분에 대한 책임, 유통한다면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즉, 3분류라는 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해당 기능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오프라인 시절에는 신문사가 사실상 3개 기능을 구분 없이 모두 수행했다. 기사가 신문 기사를 제작(Publisher)했고 편집국을 거쳐 신문으로 인쇄(Physical access)하면 지국에서 배달(Distributor)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한편으로는 종이 신문으로 인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신문사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제작과 유통이라는 2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됐다. 또한 온라인 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온라인으

로만 제작 및 유통을 하기도 한다.

결국 오프라인상에서는 종이신문으로 유통되는 뉴스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3개 기능 주체로서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3분류에 따른 지위와 책임을 달리 줘야 한다. 즉, 인터넷 포털이 유통만을 담당한다면 뉴스 콘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유통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06년 10월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제작과 유통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언론중재법상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온라인에서 제작과 유통을 하는 기존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포함시켜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였다.²³⁾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오프라인으로 활자화되지 않거나 자체 생산한 기사를 30%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언론' 개념으로 확장한 듯하다.

다음으로, "언론사와 기사공급 계약을 맺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뉴스서비스 제공자'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²⁴⁾ 자체 생산 능력 없이 유통만 담당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제작과는 별개로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작과 유통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뉴스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23)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현행법의 인터넷 신문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24) 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의 매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게시 중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⁵⁾

이는 뉴스에 대한 저작권이 언론사에게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의 유통에 대한 책임, 즉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관계로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게 된 법적 미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포털뉴스 이용자가 자신이 그 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바라는 바는 금전적인 보상에 우선하여 일단 기사의 유통을 정지시켜 달라는 데 있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유통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이 사안에는 개인의 Privacy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²⁶⁾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포털뉴스에 대해서는 언론도 제작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유통된 뉴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기사 전

체가 잘못됐다면 포털에 마땅히 삭제를 요청해야 하고 일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재송고해야 한다. 물론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언론중재위원회가 요구한 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문제가 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책돼야 한다.

8. 유통과 제작의 협력과 상생

기성 언론에서 소위 ‘포털 책임론’이란 것을 제기하면서 이 용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뉴스에 대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뉴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제작자인 언론사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수평적 규제 원칙에 따라 유통 사업자가 뉴스 콘텐츠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새로운 산업과 경제구조에 맞는 수평적 규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융합 환경을 고려한다면 기능별로 책임

25) 안 제33조의2 신설.

26) 서비스 제공자는 그 책임론에서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언론중재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서비스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게시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27) 혹자는 포털 뉴스 자체가 아니라 포털 뉴스 밑에 달리는 댓글이 문제인데 언론중재법 개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뉴스가 있기 때문에 댓글이 있는 것이며, 그 댓글 유통에 대해서는 이미 정통방법이 다르고 있는 반면 뉴스 기사는 법적으로 해결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한편, 인터넷상에서 소위 ‘Notice & Take down’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게시물을 서비스 사업자가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서비스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인터넷상에서 완벽한 검열과 통제가 가능함을 상정하는 것이다.

을 부과하는 구조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법제도적 원칙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산업은 네트워크 제공자가 동등접속의 원칙을 지켜주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유통의 혁신적 구조를 개발하며, 콘텐츠 제공자가 더 많은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뉴스와 관련해서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서로 갈등하는 존재일 수 없다. 올드 미디어가 콘텐츠에 강점이 있고 뉴 미디어가 유통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소비자가 가장 좋은 콘텐츠를 가장 편리한 유통 경로를 통해 향유하도록 해주는 길이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유통 경로가 불편하거나 거꾸로 유통 경로가 아무리 좋더라도 볼 것이 없다고 한

다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뉴스 제공자와 유통자는 그 법적 지위와 책임은 다르지만 서로 상생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영 · 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08년 5월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術과法센터, 2006
- 황승홍 외,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사이버인터넷역사박물관(<http://www.i-museum.or.kr>)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저작권법
- 언론중재법 개정안, 2006년 10월 1일
-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
- [아이뉴스24], 2008년 5월 2일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권 헌 영

광운대 법과대학 조교수

- 전 대통령령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 논문 및 저서 : 「개인정보권의 헌법적 수용·헌법재판소의 결정분석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시대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쟁점」 등

I. 머리말

인터넷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초창기부터 사회적 이슈였다.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의 역사가 이제 15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¹⁾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97년 이후부터 10여 년간 이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²⁾ 특히,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인터넷 규제 논란은 어김없이 불거졌다.³⁾ 인터넷 규제 논란은 초기에는 음란이나 도박, 자살사이트 등과 같이 주로 사회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체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미군장갑차 관련 여중생 사망 사건’,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대통령선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내용으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의 논의는 주로 ‘공론의 장’에 관한 것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주요 핵심 논의 대상은 명예훼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신 수단인 매체적 성격보다 공적 의사표현의 수단인 언론매체적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특히,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언론 환경이 크게 변모⁴⁾하기 시작하자 인터넷포털에

1)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는 1982년 최초 접속을 시점으로 기산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상용서비스인 한국통신의 KORNET서비스(www.kornet.net)의 개시연도인 1994년을 시점으로 한다. 이는 인터넷의 기술적 접속의 의미보다 인터넷의 사회적 접속의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2) 필자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논란의 과정을 우리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에 관한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개방적인 사회, 투명한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이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자 ‘참여적인 (사상의) 시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인식(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인터넷이 담당하기를 바라는 공동체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인터넷방송이 나타나자 성인방송의 음란물 문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내용규제 정책이, P2P서비스에 의한 음악파일 공유문제가 발생하자 저작권보호 규제강화정책이, 포털서비스가 나타나자 인터넷사업자 책임강화정책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UCC서비스를 통해 선거참여가 확대되자 선거법상 표현행위 규제강화 정책이 나타났다. 대체로 이 모든 정책이 논란을 거듭하였고 또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다.

4) 서울고등법원 2008.7.2. 2007나60990 사건이 그 사실에 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 11월 NHN의 뉴스서비스 1일 방문자는 470만 명, 다음은 330만 명, 네이트는 100만 명, 야후코리아는 140만 명이다. 이는 포털뉴스서비스가 언론환경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한 통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이 기존의 미디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견해는 물론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종묵·박광순(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비교

인터넷포털의 책임 문제를 기존 규제의 틀에
끼워 넣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는
우리 사회의 창의력 부족이 한 몫

대하여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⁵⁾

그러나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문제는 조금 다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사업자인 포털은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언론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포털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건 분명하다.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책임문제는 인터넷사업자의 책임문제와 언론사의 책임문제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듯하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인터넷언론서비스 같기도 하고 인터넷검색서비스 같기도 한 뉴스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에 있어서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터넷사업자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포털의 책임에 관하여 그 특성에 맞는 책임을 찾지 아니하고 기존 규제의 틀에 어떻게든 끼워 넣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창의력 부족이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인

터넷 서비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되새겨보고자 한다.

II.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론

1. 포털 뉴스서비스

인터넷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언론의 지형이 변모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쇄미디어에서 제공되었던 뉴스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특징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상황에서 전달매체가 인터넷으로 바뀌었다. 기존 뉴스제공자인 언론이 자신의 뉴스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면서⁶⁾ 종이신문의 판매부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⁷⁾

반면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신문사닷컴보다 뉴스서비스를 늦게 실시하였으나 인터넷뉴스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신문사닷컴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의 위상까지도 넘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2년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인터넷포털사이트가 뉴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⁸⁾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2001년 ‘야후’에

연구: 포털사이트와 신문사닷컴의 관련 뉴스, 하이퍼링크, 댓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제7권2호(2007.6) 336~337쪽 참조.

5) 이런 논의는 입법안의 도출로 이어졌는데, 17대 국회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 4505,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06.6.19; 의안 7108,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2007.7.19)’ 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 4595,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2006.7.7)’, 18대 국회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 249,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2008.7.14; 의안 397,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08.7.24)이 대표적 사례이다.

6) 이른바 신문사닷컴이다. 가장 많은 일일접속 건수를 갖고 있는 신문사닷컴은 디지털 조선일보·조인스닷컴·동아닷컴이라고 한다(안종목·박광순, 앞의 글 337쪽).

7) 안종목·박광순, 앞의 글 337쪽

8) 안종목·박광순, 앞의 글 337쪽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2003년 이후 각종 뉴스사(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뉴스서비스를 확대하기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네티즌이 포털사이트로부터 해당 뉴스사이트로 이동하고 있고, 또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대부분 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털서비스는 단순한 '검색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 '뉴스서비스' 기능인 언론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⁹⁾

포털사이트는 원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관문역할을 하는 사이트로서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는 복합사이트인데 초기의 단순 정보매개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커뮤니티 포털, 미디어 포털 등으로 진화하였다.¹⁰⁾

포털사업자는 뉴스가 반복적 이용제공에 적합한 콘텐츠를 착안하고 최근에는 뉴스 제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뉴스를 확보한 후 독립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뉴스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편집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언론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3년을 기점으로 포털이 뉴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

대하고 있다고 한다.¹¹⁾

2.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

포털사업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것은 법적 책임에 있어서 포털사업자는 타인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간접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협하여 온 우리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는 항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¹²⁾

즉,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화하면 '사적 검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책임을 감면해 주면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¹³⁾를 살펴보면, 미국은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을 출판자(publisher),¹⁴⁾ 배포자(distributor),¹⁵⁾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¹⁶⁾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미국의 경우는 가능한

9) 안중목·박광순, 앞의 글 337~338쪽

10) 황용석·이웅재(2007),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2007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262쪽

11) 황용석·이웅재, 앞의 글, 262~263쪽

12)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17대 대선 국면에서는 특히 포털의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김재영·최민재(2007),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대선 관련 포털뉴스서비스 분석'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2쪽.)

13) Brian C. McManus(2001), "Rethinking Defamation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35 Suffolk U. L. Rev. 647

14) 신문사, 출판사, 방송국과 같이 자신이 제공하는 내용에 관하여 중요한 편집기능과 통제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5) 도서관, 신문가판대, 전송만 하는 방송국, 서점 같은 곳을 말한다.

16) 전화·전신 회사를 말한다.

17) 이것은 보통법상의 책임 원리로 언론책임의 원리를 적용한 것과 같다. Sable Comm. v. F.C.C., 492 U.S. 115, 127-30 (1989) (기간통신사업자로 본 경우);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280-82 (1964) (출판자의 책임기준을 적용한 경우); Ciani v. New Times Publ'g Co., 639 F.2d 54, 61-62 (2d Cir. 1980) (배포자의 책임기준을 적용한 경우).

포털사업자에 국가 수준의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적 검열을 행하는 사법권력으로의
비화를 가져올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¹⁸⁾ 이런 노력은 1996년 통신법에서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제 3의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어떤 정보에 관하여서도 그 정보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더 나아가 “의설적이고 기타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물에 대하여 선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었다.¹⁹⁾

우리의 경우 인터넷사업자의 면책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정보유통의 익명성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대위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이득설, 현실적으로 해당 표현물을 삭제, 차단 등 기술

적 조치에 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력 보유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관리자 책임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²⁰⁾ 그러나 이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 스스로 민간 사업자인 포털사업자에게 국가 수준의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아서 사적 검열을 행하는 원치 않는 사법 권력으로의 비화를 가져오게 된다.²¹⁾

인터넷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결국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한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지위에 서야 한다.²²⁾ 이때 방조자의 지위에 서는 것에 관하여도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연대관계를 고려해 보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다.²³⁾ 이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사업자는 일방당사자와 연대하여 타방당사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이용관계만을 형

18) 미국에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이런 원칙이 적용된 판례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 1991); *Stratton Oacmont v. Prodigy Service Co.*, 1995 WL 323710(N.Y.Sup. Ct. 1995); *Zeran v. American Online, Inc.*, 129 F. 3rd 327(4th Cir. 1997) 등이다.

19)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 clause)이다.

20) 박선영(2003.1),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인터넷 법률」 15호 117쪽(정상규(2005), “사이버 명예훼손의 체문제”, 「언론중재」 25권 2호, 통권95호 2005.6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61~62쪽에서 재인용).

21) 예를 들어 명예훼손행위가 불명한 정보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는 삭제를 요구하고 타방 당사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각각 사업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사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원치 않는 사법권력화’의 사례이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법리는 법원에서조차도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이고, 사회의 변화를 신중하게 반영하여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 공간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은 헌법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는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과는 다른 논의이다.

22)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3) 언론사의 경우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언론사 간 취재와 기사 작성 및 편집에 있어서의 연대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한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포털사업자가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으로는 ①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게시, ②삭제의무 등 작위의무의 발생(ISP에 의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 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이 있을 것,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등의 세부요건으로 구분), ③삭제 등 조치의 지체 또는 불이행이 제시되고 있다.²⁴⁾

이러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포털서비스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

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²⁵⁾²⁶⁾고 판결하여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대법원 2001.4.27 99나 74113 판결에서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

24) 정상규, 앞의 글, 62~65쪽.

25) 대법원 2003. 6. 27. 2002다72194

26) 이 판례는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판례로서 다수의 평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기섭(200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법률신문』 3221호 (2003.11) 법률신문사 13쪽; 김용석(2004),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자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746-755 쪽; 오용규(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재판과 판례』 12집 (2004.01), 대구판례연구회, 399-444쪽; 장철익(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언론중재』 24권 1호 (통권90호 2004.03. 봄) 언론중재위원회, 63-75 쪽; 황찬현(2006),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정보법 판례백선 I』, 박영사 601-608쪽

대법원은 자료실, 게시판 등에 올려진 내용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 입장

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²⁷⁾

이어서 대법원은 2006년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²⁸⁾고 하여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쳐 2007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된다는 사정 및 위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차단요청의 유무, 침해 사이트의 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의 용이성,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정보나 사이트 내용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의 유무·정도, 침해 사이트에 관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차단조치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위 침해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²⁹⁾고 밝히고 있어 역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다.

법원의 이런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는 제3자의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표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고, 이에 의한 타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방조자의 책임을 인수하게 된다. 이것은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이 정한 바와 같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반영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이다.³⁰⁾

27) 이와 같은 대법원의 엇갈린 책임인정을 하나는 공적 영역이라고 보고 하나는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으나 역시 양자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견해가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는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권영준(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2006.6), 한국법학원, 20~21쪽).

28)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29) 서울중앙지법 2007.12.26. 선고 2005가합112203

30) 양자는 모두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알거나(알 수 있었던) 때’와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뉴스서비스 책임론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뉴스서비스 책임론은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데 그 터를 잡고 있다.³¹⁾ 대체로 언론학 분야와 기존의 언론기관을 통해서 형성된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인정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³²⁾

첫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포털이 변경함으로써 기사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의제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³³⁾ 둘째, 인터넷이용에서 특히 포털이용의 규모라든지 정보전파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의제설정 주도권이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³⁴⁾ 셋째,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소비는 포털의 뉴스에디터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되고, 또한 게이트키퍼의 결과물로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박스'가 네티즌의 1차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

나.³⁵⁾ 사회적 주요의제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³⁶⁾ 넷째, 포털은 비록 제한적인 취재기능을 갖지만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의 재매개 활동 자체가 뉴스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인 게이트키퍼를 구성한다는 점³⁷⁾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사의 신문사닷컴이 제공하는 뉴스에 비하여 상호작용성이나 게이트키퍼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된다.³⁸⁾

그러나 황성기 교수는 포털사이트가 '뉴스 전달서비스' 내지는 '뉴스 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여타 매체와의 차별성을 갖는 요소인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 및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이라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⁹⁾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 책임론은 대체로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인 것으로

31) 김재영·최민재, 앞의 글 12쪽: "포털에 대한 규제논의는 포털이 언론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포털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포털 뉴스서비스로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피해구제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2) 황성기(2007),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2007-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200쪽.

33) 이희완(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통권 422호, 한국언론재단, 128~130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4) 이민규(2006), "인터넷 언론: 포털과 블로그, 저널리즘 영역에 도전", 「신문과 방송」 통권 421호 한국언론재단, 125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5) 최민재·김위근(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한국언론학회, 437~463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6) 최민재(2006),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한국언론재단, 128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7)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제25권 제4호(통권 97호), 언론중재위원회, 8~10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8) 안중목·박광순, 앞의 글, 365쪽.

39) 황성기, 앞의 글, 202쪽.

포털이 언론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게되면,
편집통제권의 강화만 가져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

보인다. 그리하여 인터넷포털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위하여 그 언론성을 살피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와 편집 및 배포라고 하는 언론의 핵심기능을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입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에 대하여 황성기 교수가 기존의 언론기관과 포털사업자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점은 법해석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¹⁾

아직 언론성을 인정하는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 포털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 이용자들(네티즌)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 카페, 쇼핑몰,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⁴²⁾이다. 이러한 포털사이트는 법적인 의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이다.⁴³⁾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론에서 더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언론성을 인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주장 사이의 이해득실에 관한 것이다. 마치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적으로 더 강한 책임을 포털에게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링 의무, 즉 편집통제권의 강화만 가져와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이 언론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위법성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⁴⁴⁾ 이런 견해는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⁴⁵⁾ 이런 점에서 포털의 법적 성격 및 그 책임범위의 설정문제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새롭게 설계하여야 할 내용이지,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이유에서 선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⁴⁶⁾

40) 실제로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부분 신문관련 법규나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책임 법규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가 규율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41) 황성기, 앞의 글 202~205쪽에서는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으로서의 일정한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념적 지향성을 언론의 요건으로 하고, 포털은 언론사와는 다르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포털은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만, 기사의 배치나 크기, 제목, 섹션별 분류 등의 외형적이고 형식적 측면을 통제하는 ‘형식적·외형적 편집통제권’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는 ‘배포자’에 불과하여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42) 서울고등법원 2008.7.2. 2007나60990

43) 황성기, 앞의 글, 198쪽.

44)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

45) 대법원 2006. 3. 23. 2003다52142; 대법원 2008. 2. 1. 2005다8262; 대법원 2008. 2. 14. 2005다75736; 대법원 2008.4.24. 2006다53214

46) 황성기, 앞의 글 205 및 228쪽도 같은 견해이다.

Ⅲ. 판례의 동향

1. 개 관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 책임과 다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법원의 견해는 아직 형성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의가 시작된 이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만큼 시간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다만, 최근 하급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간에 큰 이목을 끌었던 두 가지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공적 영역에 관한 사건으로 신문기자가 정당의 대변인을 오인하여 발생한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영역에 관한 사건으로 자살한 딸의 애인에 관한 명예훼손 기사 사건이다.

2. 공적영역에 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2006나92006)

가. 사실개요

뉴스제공자인 언론사의 기자가 정당의 대변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정당과 대변인의 성명을 오인 작성, 그 기사를 소속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기사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에 자동 전송되었다. 기사를 받은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뉴스팀은 제목을 축약 편집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그 후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있자, 언론사는 약 1시간 만에 기사를 수정하였고, 그 즉

시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분야별 주요뉴스에 링크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도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나, 언론사는 포털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포털사업자는 몇 시간 뒤 해당 대변인의 보좌관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언론사에 확인을 하고 이후 수정사실을 통지 받고나서 뉴스를 수정하였다.

나. 주요 판결 요지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포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최근 하급심 판례는 포털이 단순히 기사의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편집 및 배포 기능 갖춘 언론매체로 인정

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언론 책임 인정의 근거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해 포털사업자는 100여 개의 우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털사업자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포털사업자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펴건대, 당해 사업자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인터넷포털사이트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⁴⁷⁾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

47) 이 판결에서는 비난 댓글을 방치한 책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언론매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적영역에 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가. 사실개요

딸이 애인의 변심으로 비관자살을 하자 그 어머니가 죽은 딸의 유서를 인터넷 미니홈피에 게시하였고 그 내용이 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⁴⁸⁾ 또 애인이 다니던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수가 급증하고 여기에서 네티즌들이 이 게시글 퍼나르기를 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한 해당 사연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각 언론사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다시 각 주요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 일반에 제공되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고, 언론의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져서 지속적으로 뉴스서비스의 내용은 추가되었다.

나. 주요 판결 요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관련기사의 게재에 관하여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⁴⁹⁾

48) '원고가 망인과 사귀던 중 혼인을 전제로 망인과 성관계를 맺어 망인으로 하여금 2번이나 임신을 하도록 하고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었고,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도 매몰차게 대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

49) 이 판결에서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인터넷 포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난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000등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론의 책임법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다. 언론 책임 인정의 근거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피고들이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 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 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

고들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펴건대, 피고들이 자체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취재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 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4. 평 석

위의 두 판례는 모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위의 뉴스서비스 책임론이 입법론적 입장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즉, 광범한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고, 그 편집에 있어서 불가침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배포에서도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언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접이 필요한 것이고, 언론의 자유는 주로 책임과 통제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언론사와 맺은 뉴스 공급계약을 유사 취재의 개념으로, 일련의 제목 수정행위 또는 분야별 배치 행위 등을 편집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매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사건을 다른 법원이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책임론을 언론책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에 따른 수많은 요구가 포털로부터 제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여 온 법원의 노력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하물며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인터넷포털의 책임법리를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두 사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뉴스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주요한 요건으로서의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고 이미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서비스는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글의 게시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권이 강화된 분야이기 때문이다.⁵⁰⁾ 포털의 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하다는 입법론

⁵¹⁾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론의 책임법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⁵²⁾

I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의 쟁점은 뉴스서비스의 언론성에 관한 것이지만 이를 주장하는 뉴스서비스의 언론책임론은 대부분 입법론에 관한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견해에 있어서는 아직 대법원이 판결로 인터넷포털 뉴스에 관한 판단을 내린 바 없지만, 대법원이 갖고 있는 견해인 포털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뉴스서비스에도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제3자의 정보에 관하여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또는 관여하여야 할 법률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도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의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성을 인정

50) 정상규, 앞의 글, 63쪽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별로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1) 이동찬(2008),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제30집(2008.5), 한국법학회, 1~25쪽.

52) 또한 공적 영역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는 판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견해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해당 법원이 인터넷 포털에 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내용보다 절차적으로 네티즌과 인터넷사업자, 정부 및
정치권이 동일한 지위로 참여하여
합의점 찾아내는 과정 필요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의 핵심기능인 취재와 편집 및 배포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으므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이 행하는 '뉴스 매개 행위'의 일련의 과정인 정보공급계약과 형식적 편집 등을 언론의 고유기능과 동일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견해를 갖고 억지로 새로운 현상을 제어하고자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법리를 구성하고 인터넷포털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하고 있는 점은 여러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법리 구성을 언론으로 할 경우,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적 검열'에 의한 포털의 권력화를 조장하는 것과 그에 따른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리고 포털의 '원치 않는 사법권력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제기되는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론도 문제점이 있다. 역시 전통적인 언론이론으로 접근하는 데서 어려움이 생긴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은 그가 언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존의 규제 틀에서만 묶어 두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픈 것은 인터넷 규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우리는 항상 대립하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 사회에는 규제론자와 자유론자만 존재하는 듯한 모습이다. 규제론자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무턱대고 막자는 것이 아니고 자유론자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충분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책임론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관한 문제보다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내용보다 절차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네티즌과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이 동일한 지위로 참여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한 이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규율 제도가 거기서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때는 전통적 방식의 언론매체로 가든지, 새로운 책임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자율규제 방식이 나오든지 뭐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포털, 세계 최고의 인터넷뉴스포털, 세계 최고의 게임 포털 등 네티즌들의 창의력으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최고의 책임제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

<참고문헌>

권영준(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

스티스」 통권 제91호(2006.6), 한국법학원

김기섭(200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법률신문」 3221호 (2003.11) 법률신문사

김용석(2004),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자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김재영 · 최민재(2007),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대선 관련 포털뉴스서비스 분석'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박선영(2003.1),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인터넷 법률」 15호

안종목 · 박광순(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비교연구: 포털사이트와 신문사닷컴의 관련 뉴스, 하이퍼링크, 댓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2호(2007.6)

오용규(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재판과 판례」 12집 (2004.01), 대구판례연구회

이동찬(2008),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제30집(2008.5), 한국법학회

이민규(2006), "인터넷 언론: 포털과 블로그, 저널리즘 영역에 도전", 「신문과 방송」 통권 421호 한국언론재단

이희완(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통권 422호, 한국언론재단

장철익(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언론중재」 24권 1호(통권90호 2004.03. 봄), 언론중재위원회

정상규(2005),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언론중재」 25권 2호, 통권95호 2005.6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최민재(2006),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한국언론재단

최민재 · 김위근(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한국언론학회

황성기(2007),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2007-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제25권 제4호(통권 97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 이응재(2007),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2007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황찬현(2006),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정보법 판례백선 I」, 박영사

Brian C. McManus(2001), "Rethinking Defamation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35 Suffolk U. L. Rev. 647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

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

대법원 2003. 6. 27. 2002다72194

대법원 2006. 3. 23. 2003다52142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대법원 2008. 2. 1. 2005다8262

대법원 2008. 2. 14. 2005다75736

대법원 2008.4.24. 2006다53214

서울고등법원 2008.7.2. 2007나60990

서울고등법원 2008.7.2. 2007나60990

서울중앙지법 2007.12.26. 선고 2005가합112203

Cianci v. New Times Publ'g Co., 639 F.2d 54, 61-62 (2d Cir. 1980)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 1991)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280-82 (1964)

Sable Comm. v. F.C.C., 492 U.S. 115, 127-30 (1989)

Stratton Oacmont v. Prodigy Service Co., 1995 WL 323710(N.Y.Sup. Ct. 1995)

Zeran v. American Online, Inc., 129 F. 3rd 327(4th Cir. 1997)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강 경 근

송실대 법대 교수

- 송실대 법과대학 학장,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학회 회장 등 역임
- 논문 및 저서: 「헌법」, 「국민투표」,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등

I. 인터넷포털사이트는 포털이라는 이름의 언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정한 법이다.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는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인 포털은 여기의 언론사에 속하는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인가, 또는 뉴스통신사업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신문사업자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포털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래 포털,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 : Portal이라는 단어는 ‘입구’를 뜻한다) 또는 웹 포

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일종의 인터넷에 의한 정보 유통의 통로 개념이다. 정보의 생성과 저장의 형성 개념은 아니다. 구글(www.google.co.kr),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http://kr.yahoo.com) 등의 포털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보 검색의 통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포털사이트들은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다. 하지만 점차 정보검색, 커뮤니티, 메일, 메신저,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P2P, UCC, 게임, 뉴스, 사진, 지도, SMS, 라디오, TV,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는 정보검색기능에 가장 충실하다. 그 첫 화면에는 『iGoogle | 로그인, 웹문서 | 이미지 | 뉴스 | 블로그 | 학술검색 | 더보기 >> Gmail 캘린더 · 노트 · 툴바 · 데스크톱 · Picasa · YouTube』등이 보일 뿐이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도종 포털이 각종 뉴스로 채워져 있는 원색의 화면을 우리에게 익숙케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 무료하게 생각될 정도다.

그런 데 비긴다면 우리의 토착 포털인 네이버,

다음은 물론 야후 등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정보 검색의 통로가 아니라 각 일간지 뉴스를 모아, 이를 보기 좋고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정리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게 해 준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간지를 종이신문이라 한다면 이는 '화상신문'이라 할 정도로 정보 전달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

대개 오늘의 우리들은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에 들어가서는(사실 인터넷 접속은 곧 포털에의 입장인 것이 현실이다), 보면서 흥분과 격정을 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지난 촛불집회에서의 다음의 아고라의 기능을 생각해 보라) 신문 대신 읽으면서 각종 댓글을 통하여 밑바닥 정서도 알고, 그러면서 난무하는 유언비어와 비속어 등으로 상처를 입고 명예를 훼손당한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한다.

우리의 포털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전달 등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이며 정보 유통을 통한 그 통로의 역할은 지식 검색 등의 부수적 기능으로 보일 뿐이다.

이건 포털이라는 이름의 언론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로 의율하여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야 하는 당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¹⁾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 취사선택하

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입법은 당위의 문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적

1) 서울고법 2008.1.16. 2006나92006 판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84]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입게 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나마
구제해 줄 수 있는 입법 필요, 이는 대증요법이라는
비판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

어도 법원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최소한 언론중재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인,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의 대상에 포털이 포함되는 해석 내지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석의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다.

포털을 언론중재법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신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되겠는데, 위 법 제2조 제8항은 “인터넷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하고 제9항에서는 “인터넷신문 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고 규정하는 바, 이는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인터넷신문이고, 그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신문법 제2조제3항제5호),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

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신문법시행령 제3조)으로 하였다든 점에서, 포털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백인 상태인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언론피해 구제의 측면에서는 언론으로서 취급받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²⁾

결국 입법적 해결의 방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입게 되는 피해의 구제를 우선적으로나마 구제해 줄 수 있는 입법이야말로 해석의 한계선에서 나오는 황금의 다리가 된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당연히 포털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증요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일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신문법 개정을 통하여 비단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피해 구제의 경우에 있어서만 언론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언론의 개념에 포섭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포털 자체를 언론에 포함시켜 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포털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포털 자체는 역시 그 본질이 정보의 통로에 있는 것이지 그 생성과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

2) 동일 : 양삼승,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24권 제4호(통권 97호), 2005년.

며, 포털사이트의 한 기능으로서의 뉴스 전달의 면을 전체로 확대하여 이를 언론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칫 인터넷을 통하여 존재하는, 포털의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참여적 시장이라는 특성을 말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포털의 뉴스 제공의 면만을 뽑아내어 이를 언론으로 보려는 입법안도 가능하겠지만, 기교적으로 흐를 수 있어 법 적용자와 입법자의 자의를 막기 힘들다. 즉 새로운 정보전달매체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추는 임시방편(Ad hoc)적 입법이 되어 법의 일반성·추상성 원칙에 반한다.

또 하나의 방식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기왕의 언론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독립한 법제를 따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포털의 사회적 독자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존의 언론매체인 신문, 방송 등과 달리 취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체 융합의 현실에 계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Ⅲ. 인터넷포털의 규제를 위한 입법안

1.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입법안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고자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박찬숙의원안, 노웅래의원안 등이 있다.

(1) 박찬숙의원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11.

1. 의안번호 : 3146」 및 「발의연월일 : 2006. 7. 7 4595」 두 법안이 있는 바, 최근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나.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의를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9호).

(2) 노웅래의원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11. 8. 의안번호 3263」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10. 10. 의안번호 5131」 두 법안이 있는 바, 최근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언론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언론의 범위에 현행법의 인터넷신문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나. 언론사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어 인터넷을 통

인터넷포털의 규제를 위한 입법안은
언론중재법, 신문법의 개정,
독자 입법안 등 존재

하여 지속적으로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뉴스서비스제공자라 정의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다.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신문사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의 매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기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중재위원회에 게시중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3) 평가

박찬숙의원안은 인터넷 포털과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중재 등을 신청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하기에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포털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노웅래의원안은 언론보도의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이나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는 현행법의 구제수단에 제외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하기에 인터넷언론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인터넷신문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하고, 기사를 단순하게 매개하는 포털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매개된 기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언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노웅래의원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도 마련한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다.

2. 신문법 개정을 통한 입법안

신문법의 규율대상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법안은 윤원호의원안, 김영선의의원안, 심재철의원안 등이 있다.

(1) 윤원호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11. 21. 의안번호 5431」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편집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어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을 운영하는 자는 기사를 제공함에 있어 기사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기사를 생산한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2) 김영선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7. 14. 의안번호 249」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기타인터넷간행물”에 관하여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심재철의원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7. 24. 의안번호 397」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

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그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인터넷포털사업자로 하여금 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 기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도 즉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기사의 조회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4) 평 가

윤원호의원안은 인터넷포털에 의한 기사의 편집·조작 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면서도 신문법을 개정하여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포털이 제공받은 기사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래의 기사를 생산한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현실의 실제 범주를 확장하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김영선의원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

헌법은 통신을 그것이 기능하는 역할 내지
기능에 따라 규범적 위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포털은 뭐라 해도 우선은 헌법 제18조의 통신

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는 언론을 그렇게 나누는 당위성이 부족하며 개념의 일관성 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심재철의원안은 인터넷포털은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리 확보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전제로,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안 역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할애하고 뉴스 제공의 측면을 상당하게 중시하는 입장이라 평가된다.

3. 독자적 포털 규제를 위한 입법안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매체 중심의 법제에 포섭하려는 시도 외에 아예 이를 독자적인 언론의 매체로 보아서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이 있다.

진수회의원안은 2007.6.18. 의안번호 6878인바, 이

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검색서비스와 연계하여 신문법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신문, 인터넷신문과 방송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뉴스 등의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제2조제9호)로 정의함으로써 이른바 맞춤형 독자성의 법안을 제시한다. 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제공자의 허락 없이 당해 뉴스콘텐츠의 제목 및 내용의 임의적인 편집이 금지되며(제16조제1항),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오보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뉴스서비스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서비스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동조 제4항).³⁾

IV.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 통신으로 볼 것인가

1. 인터넷언론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신문법 개정을 통하여 그에 적용되는 언론으로 하는 방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실제로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

3) 진수희안에 대해서는 이동찬, 포털뉴스의 법적규제에 관한 논의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집, 2008.5, 12-13면 참조.

설기준"이라 할 때의 '통신'은 언론으로서의 통신인 점에서,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이라 할 때의 통신이 정보유통의 매개를 의미하는 것과 비교된다. 헌법은 통신을 그것이 기능하는 역할 내지 기능에 따라 규범적 위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는 뭐라 해도 우선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의심 없이 인터넷언론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터넷언론이라 지칭되는 정보전달매체는 하나의 정의에 포섭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규범 시스템이 이를 '온라인미디어'라 하는 뉴스전달매체 내지 정보전달매체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정보유통의 매개, 즉 '통신매체'로 포섭할 것인지 또는 그 양자가 융합된 실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일관되게 정의·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On-line 언론'의 징표는 '디지털언어' 사용, '인터넷' 등 통신망에 의한 표현의 송달,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성', 즉 쌍방향성 등에 있다. 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 상호작용성(Intersactivity), 통신·방송의 융합화(Integration) 경향 등으로 인하여,⁴⁾ 특히 그 상호작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지 정보전달매체의 기능만 지니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왕의 인쇄물이

나 방송 등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오프라인에서의 언론매체나 매스미디어에 적용되는 법제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⁵⁾

2. 인터넷언론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접근의 특이성

헌법 제21조의 언론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이라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의 충돌을 조화하는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⁶⁾ 반론권(Right of Reply)은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일방적 인상만 형성되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의 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반론권의 행사는 틀린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며,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다.

또한 인터넷언론으로서의 인터넷신문은 디지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발행되는 신문⁷⁾,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n-line Media이다. 기존 언론사가 발행 주체로 있는 종이신문 내지 그 종이신문에 부가적으로 송출하는 종속적 온라인신문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에서의 반론권 인정 여부나 범위는

4) Lawrence Lessig, "The Path of Cyberlaw", 104 Y.L.J. 1743(1995) 및 Lawrence Lessig, Reading the Constitution in Cyberspace: <http://www.law.emory.edu/ELJ/volumes/sum96/lessig.html>.

5)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 신문은 속성상 언론매체로 인식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판지일보 등의 패러디 신문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자게시판 등을 언론매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은 확실치 않다. 이재진, 언론매체 인정, 사법 관할권이 쟁점, 「신문과 방송」(2003.1, 385호), 28-31면.

6) 憲裁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결정[판례집 3 518-541] 특히 524-525면.

7) '오마이뉴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이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그간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002.2.9). 이와 같은 유권해석이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지만, 언론의 의의에 관한 헌법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구체적인 실정법상의 적용 양태에 실익을 주는 판단이기보다는 원론적 평가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 수준에 그치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은 각각 신문법이나
방송법으로 포섭 가능,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터넷언론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요구됨

기사 내지 콘텐츠가 작성되고 전송되는 경우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⁸⁾

그런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의미를 매체로서의 언론 전체로 본다면,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계속성을 지니는 정기간행물로서의 신문이라는 매체에 한정하지 아니 하고,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언론매체 전체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의미의 신문에 해당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용 범위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접근은 기존 언론에 부과되었던 법적 규제를 인터넷언론에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하에 따른 기왕의 접근 방식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의 완화 경향을 점차로 기존의 언론매체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 방식이 더 요구될 것이다. 다만 인터넷언론은, 종이언론에 비하여 ‘확장된’ 통신영역 내지 소규모적 집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언론에 비하여 의제(Agenda) 설정기능

과 영향력이 산발적이고 또한 인터넷이용자가 방송에 비하여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 수준에 그치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등의 경우에는 각각 신문법이나 방송법으로 포섭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요구된다. 반론권에 대해서 본다면, 일방향적 정보전달매체 내지 매스미디어의 상대방인 정보수용자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언론수용자의 언론매체에 대한 이 권리는 의사소통의 쌍방향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온라인언론’이라도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으로 지칭될 수 있는 포털 등과 같은 정보전달의 장들은 가능한 한 헌법 제21조 제3항의 언론의 자유에 포섭하여 그 실정법상 보호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8조의 통신으로 취급되면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관련법의 규율 대상인 현실에서,⁹⁾ 인터넷언론 발행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내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로 이해되어¹⁰⁾ 언론법제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¹¹⁾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8) 최영·김병철,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언론학보」, (2000년 제44-4호), 177면.
9)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법 제2조제1호) 등을 말하며, 정보통신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동조 제3호)을 말한다.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수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통신망 내에서 또는 다른 통신망과의 사이에 디지털화된 내용물의 송·수신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보호와 규제를 받게 할 가능성¹²⁾ 등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인터넷언론 관리자의 책임이 무겁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다.

V. 인터넷포털사이트 뉴스 피해 구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으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한, 그로부터 나오는 피해의 규제는 직접 관련되는 법률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반론권을 준다든지 정정보도청구권을 주려는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박찬숙의원안은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포털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며, 노웅래의원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도 마련한 점에서 구체적이다.

포털 관련 법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이상의 영역에서 이를 언론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다른 인터넷매체와의 비교에서 형평과 일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인터넷포털사이트 전체를 언론으로서 보는 방식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인터넷언론으로 보고 거기에 신문법 등의 법적용을 하는 법기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포털에 대해서 당해 부분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자를 게시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법제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털 전체를 신문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윤원호의원안은 한 발 앞서 있어 따라가기 벅차며, 김영선의원안은 이를 기계적 수직으로 나누어서 본다는 점에서는 법적 안정감은 줄 수 있으나 개념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게 되며, 심재철의원안은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규정한 안이라 여겨진다.

진수희의원안은 포털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자는 것으로서 입법적으로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푸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임시방편(Ad hoc)적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이후 매체의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진전된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참고문헌〉

- 姜京根, 『憲法』, 법문사, 2004년
- 姜京根, 정보화 사회와 대의정 그리고 헌법의 개정,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6집제3호) 1998. 6, 25-41면.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 한다.

12) 인터넷언론으로 일컬어지는 당해 사이트의 관리자 내지 인터넷사업자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자(Publisher)로 취급되어 무과실책임에 유사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엄격책임을 지는 반면, 전혀 편집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배포자(Distributor)로 취급되어 통상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 姜京根,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제3호) 2000.
- 姜京根,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 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세미나: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 2000. 11, 23-25면.
- 姜京根,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2003, 여름호.
- 權奇昶,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제137호) 1997. 4, 1-32면.
- 김대호, 미디어융합과 규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0년 봄).
- 金敏培,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법적 문제-수정헌법 제1조와 CDA를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1집제2호) 2000.12, 243-261면.
- 金榮秀 · 曹圭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적 기준과 언론권,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연구소 제11호) 2000년 7월, 155-197면.
- 金榮秀 · 지성우, 독일 멀티미디어 관련법상의 방송 · 통신 · 멀티미디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제14권제2호)
- 金日煥,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서설적 연구,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7권제1호) 2001.5, 207-232면.
- 金日煥,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효율적인 기본권보호에 관한 예비적 고찰,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제3호) 2002.10, 65-85면.
- 朴宣映, 인터넷 신문 · 방송과 반론보도,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0년 봄)
- 朴宣映,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9집제1호) 2000. 11, 143-159면.
- 朴宣映,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제2호) 2000. 11, 158-177면.
- 朴宣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의미와 범위,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제4호) 2000. 12, 86-110면.
- 성동규 ·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년)
- 成樂寅,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제2호) 2001. 12, 33-67면.
- 成樂寅, 인터넷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한국기자협회 제18회 기자포럼」 2002. 2. 19.(화)
- 梁建, 표현의 자유에 관한 1990년대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연구소 제11호) 2000년 7월
- 양삼승,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제25권4호(통권97호) 2005. 12.겨울) 언론중재위원회.
- 廉東信,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상 책임-독일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법무부 제5호) 2001. 3, 138-157면.
- 李光眞, 인터넷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법무부 제8호) 2001.9, 68-83면.
- 李東勳, 인터넷사회에서의 언론자유와 뉴패러다임, 『實甫金榮秀교수화갑기념 헌법학의 제문제』 2000년, 285-301면.
- 李昇鎬,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법무부 제10호) 2002. 1, 5-23면.
- 李時佑, 정보화사회와 기본권의 변천-정보의 자유와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8권제3호) 2002. 10, 86-117면.
- 李仁皓, 방송 · 통신의 융합과 언론의 자유,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8집제4호제1권) 2000. 6, 247-270면.
- 장현진,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Law & technology, 제3권제1호(2007년1월),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정동훈 포털뉴스의 피해 현황 및 사례연구
- 정윤식, 뉴미디어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97년 봄호 통권62호)
- 조동기/김병준/도준호/강상현, 『인터넷 뉴미디어 진흥을 위한 법 · 제도 조사연구』(정보통신진흥연구원 정책연구 01-16) 2001. 12.
- 曹圭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규제대상과 법적 한계, 『實甫金榮秀교수화갑기념 헌법학의 제문제』 2000년, 319-337면.
- 崔承列, 정보개념, 정보보호의 특수성 및 정보중계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법무부 제7호) 2001. 7, 81-120면.
- 최영 · 김병철,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언론학보」, (2000년 제44-4호)

- 한상희, 뉴미디어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미디어융합현상에 대한 헌법이론의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법률」(법무부 제11호) 2002. 3.
-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1년 겨울)
-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2000년 봄).
-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5권제2호) 1999.10, 23-53면.
- 黃贊鉉,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34권제1호) 2001. 2, 5-39면.
- Wolf-Rüdiger Schenke, Grundrechte Probleme der Telekommunikatio/朴鍾秀(번역), 통신의 기본권적 문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제2호) 2001. 12, 1-31면.
- Gerit Manssen, Der Staat in der Telekommunikation/ 임현(번역) 통신사업에서의 국가의 역할,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30집제2호) 2001. 12, 70-91면.
- Walter Rudolf,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eines Rundfunkgesetzes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金炳圻, 민주적 헌정질서하에서 방송법의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8집제4호제1권) 2000. 6, 193-67면.

공적 사항·공인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小考

함 석 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I. 언론소송의 세 가지 키워드

【취재, 분석, 보도로 이어지는 기자의 작업과정은 법관의 판결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업무성격이 법질서나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점, 그 효과가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점,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기초 위에서 사실을 구성하는 작업과정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법관에 비하여 속명적으로 매우 불행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기자는 사건의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있고, 법관은 사건의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언론보도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므로 사건 초기에 드러난 최소의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취재원이나 자료의 신빙성은 직관에 맡겨야 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심증으로 보충하는 모험도 불사한다. 엄격한 증거원칙을 통과한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는 법관의 눈으로 보면 기자는 가히 야생마이자,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¹⁾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언론은 그 자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신속함을 추구하여야 하는 반면, 정확성과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속성 때문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막강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피해 역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언론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 침해된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언론, 피해자들, 입법 관계자, 학자들과 법원이 모두 이런 상반된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해 왔다. 언론과 관련된 법,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과 이론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고민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구성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을 시의적절하

1) 윤재윤/함석천, 언론분쟁과 법, 청림출판(2005년), 23쪽.

게 보도하는 것 역시 언론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해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언론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다. 즉 진실성과 공공성의 요건이 충족되면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책임은 면제된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법 이론으로 언론사에 더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다. 공공성과 진실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진실성에 대하여는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진실이 아니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언론은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 요건을 상당성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정보전달의 최전선에 있는 언론사로서는 확인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 29 판결)

정리해 보면,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해도,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① 공공성이 있고 ② 진실하거나, ③ 진실하지 않더라도 상당성이 있으면 오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3가지 요소 중 공공성을 포함하여 두 가지만 갖추면 면책된다.

최근까지만 해도 상당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

발했다. 진실성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언론사의 보도는 대부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당성, 그 가운데 주로 언론이 필요한 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여부가 언론소송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다.

그런데 2002년을 전후해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최근 주목할만한 변화는 公人, 公的인 논쟁에 관한 공공성 범위를 확대한 것과 상당성의 완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법원이 주도해왔는데, 2002년경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요체는,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 관찰의 대상에 대하여는 언론의 지속적인 검증과 비판이 가능하고 그 폭이 넓어야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마련되고 자유민주사회가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변화를 대법원이 주도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법리 전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법리 전개를 알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 공공성과 상당성 이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고, 공적 사항을 보도할 때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공인 등의 대응경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언론의 비판 기능 확대와 한계 - 공공성과 상당성 판단의 변화

1. 언론환경의 변화 과정

새로운 판례 경향의 핵심은 주로 정치이념에 관한 공적인 논쟁, 그리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

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 억압받던 언론은 1992년 문민정부 출범 후부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사끼리의 과다 경쟁, 상업주의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고, 확인절차 없이 보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언론은 사회의 여론형성기능을 담당하는 중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실로 다양한 언론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해 왔다. 그 결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논의가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격권 보호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어 기본 골격을 갖춘 후로는 1990년대 후반 무렵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둔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검토되었고, 그 밖에 보도의 공공성에 관한 논쟁,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 공직선거에서 상호비방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각론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명예훼손 소송의 인용률이 높아지고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반면, 언론은 공인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공인에 대한 보도 비중을 늘려가면서, 공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해 왔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한 공인의 부류를 보면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장관, 검사, 군장성, 도지사, 경찰 등 고위 공직자의 거의 전 부문을 망라했고,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학교법인, 종교인, 대학교수와 연예인이나 방송인,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론이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거 없는 보도를 일삼아 공적인 인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과, 비판이 중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권력기관이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2. 판례의 태도

이러한 격론이 벌어지던 중에 대법원은 공적인 논쟁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공적인 논쟁과 공인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는 보도 대상인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올바른 정책 결정과 감시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판례에 나타난 이유를 본다.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

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

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은 공적인 논쟁에 관하여 언론의 비판이 폭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정치이념 논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한도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 해 공인 혹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 64384 판결. 강조는 필자 삽입)

대법원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정립해온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판례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New York Times 사건을 연상하게 된다. 입증책임 측면에서 이 판례는 New York Times 사건의 현실적 악의론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 수위를 폭 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확실히 종전 명예훼손 법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추세의 변화라 할 수 있다.

2002다64384 판결의 사건은 모 전북지사의 집에 도둑이 들어 3500만 원과 보석 몇 점이 도난되는 사건에 관해 야당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언론 소송이었다. 당시 야당은 도둑의 진술을 근거로 도난품 중 미화 12만 달러가 더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모 전북지사의 도덕성을 비판하였다. 미화 12만 달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야당은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야당의 발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야당이 전문 언론기관은 아니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표현으로 볼 때 확실히 현실적 악의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전 판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후로도 검사가 피의자의 전과를 확인하지 않고 이증기소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관해 같은 이유로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이 있었

고, 이러한 법리 변화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판례의 의의

공적 논쟁, 그리고 공인에 대해 공공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대법원 판례가 밝힌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논쟁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의 공적 시스템을 투명하게 전개하기 위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이 비판 기능을 다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여론형성기능과 비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위축된 언론이 공적인 논쟁과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 기능을 다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 횟수와 수위가 올라가지만, 다른 한편 권력기관에는 매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같은 수위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많이 주어진다. 정확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이상 어느 의견이 옳은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언론의 비판 기능이 권력의 반론 기능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신랄한 비판이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다 해도, 자유로운 논쟁에는 필수적일 수 있다. 반대 사실, 반대 의견에 대한 토론이 결국 진실 발견과 올바른 의견의 진정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토론에 참가한 자, 중국적으로는 시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미국 사례에 나타난 위축효과에 대한 표현을 잠시 인용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이후로, 우리는 줄곧 허위에 기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야기된 공인의 평판 훼손에 대하여는 발언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다만 이것은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혹은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해버린(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러하다.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은 특히 가치가 없다. 그러한 진술은 思想(idea)의 자유 시장에서 진실 발견 기능을 방해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고 인상적이어도 반대 진술만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개인 평판의 훼손을 야기한다. 그러나 허위가 그 자체로 거의 가치가 없다 해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논쟁에는 필수적이고”, 출판자에게 허위 사실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는 공인과 관련된 발언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발언에 대하여 틀림없이 “위축(chilling)” 효과를 야기한다.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이 필요하다.” 이 숨 쉴 공간은 公人인 진술이 허위라는 점과 그 진술이 법적 책임을 야기할 정도의 잘못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점을 증명하였을 때에만 명예훼손(libel or defamation)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하는 법리에 의하여 지지된다.】(Hustler Magazine & Larry C. Flynt v. Jarry Falwell, 485 U.S. 46, 52 (1988))

언론의 보도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를 보고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시민들이다. 법원이나 행정부, 그리고

언론도 언론보도에 대한 판단자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도 있고, 영리를 위하여 인기 에 영합하는 보도를 일삼을 수도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부질없는 비난을 일삼을 수도 있다. 이러한 왜곡된 현상은 결국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정해 나갈 부분들이다.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그리고 금지청구 등 법률이 정한 구제 수단들은 시민들이 올바르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언젠가 중요한 이념이 될 수 있는 사상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도태되게 해서는 안된다. 작은 생각이라도 고개를 들고 검증받을 수 있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관례의 변화는 이와 같은 언론의 속성과 시민사회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언론의 비판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한계 설정에 관한 사례 검토

1. 기준

공적 사항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그것이 추세라고 해도 그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틀 속에서 보장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

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판례 동향을 보면 공적 사안이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신빙성 없는 자료에 근거해 내용을 꾸민 경우이거나, 공론화를 통해 비판 여론을 일깨우자는 의미보다는 보도대상을 오로지 비방할 목적인 때에는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추상적인 법리 소개보다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경우에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보도 혹은 표현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판례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²⁾

- 원고 X5를 “**불법단체**”, “**불법, 불순세력**”이라고 칭한 부분

[이 표현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 의견 표현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원고 X5는 정부에 의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단체에 머물러 있었고, 정부가 원고 X5의 정치투쟁 및 총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 X5의 투쟁 과정에 폭력행위가 수반되었으므로 위 의견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공적 단체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 원고 X5의 투쟁을 “**정권타도투쟁**”이라고 칭한 부분

[원고 X5의 투쟁 방법과 투쟁 구호를 기초로 한 피고들의 평가를 표현한 의견에 해당하는바, 위 기사는 이러한 의견의 근거되는 사실이 원고 X5의 투쟁 과정에서 나온 ‘김영삼 정권 퇴진’이라는 과격한 구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의견 표현은 위와 같은 과격한 구호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 원고 X5의 투쟁이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계렬라식 빨치산전투**’라거나,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으로 표현한 부분

[여기서 ‘체제와 국가전복’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나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은 바로 원고 X5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이다. 그런데 (중략) 당시 원고 X5의 간부는 총파업 투쟁이 단순한 노동법 무효화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운동”, “꺾대기 민주주의를 청소하고 민중 중심의 실질 민주주의 건설이 목표”라고 공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중략) 원고 X5의 집단농성이나 시위현장에서 수집된 유인물 (중략)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여 원고 X5의 파업투쟁을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 체제전복투쟁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것인바, 그 유인물이 바로 원고 X5가

2) 잡지에 실린 여러 표현들 가운데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만 추출하여 간추렸다.

공식적으로 제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검공안부장의 발표문이나 당시의 서울신문 논평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 그들의 시위현장에서 수집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유인물은 원고 X5의 시위, 농성 현장에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또한 원고 X5나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검 공안부장의 발표문이나 서울신문 논평기사에서도 원고 X5 간부의 위 공언과 위 유인물의 내용을 들어 그들의 투쟁이 체제부정적이고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 X5의 강령 등에 나타난 공식적인 이념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 정황과 원고 X5가 벌인 총파업투쟁의 양태 및 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고 X5의 현실투쟁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존중·유지하는 태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 X5가 공적인 존재로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원고 X5가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정치투쟁에 뛰어 들었으므로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앞에서 본 일반론에 비추어 고려하면 원고 X5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의혹의 제기 차원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제시한 을 제106, 107호증 등의 자료만으로 곧

그와 같이 단정까지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고,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X5의 그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제시된 정황 및 현실투쟁의 강도와 양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X5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렬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록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 X5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계렬라식 빨치산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부대의 유격전투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원고 X5의 투쟁방법, 투쟁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구호 등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 문제가 된 보도 부분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 김일성의 정치행태로 볼 때 이 증언(여운형의 암살범은 김일성이 직접 보냈다는 내용의 증언)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늘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 때 1TV의 다큐멘터리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000(원고)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남00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폭동, 제주 4·3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항쟁으로 미화시켰다.

- 대법원의 판단

주사파라고 표현한 부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부분만의 구조를 보면 이는 원고의 사상적 경향을 그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한 소위 '순수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7면의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기사부분은 1/3면 미만에 불과하고 분석의 전제사실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 사건 기사에서 따로 소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기사는 특정인의 정치사상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언론 특히 방송에 좌익세력이 대거 침투해 있으면서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고발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사실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 원고도 주사파(주체사상신봉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서,

기사 전체의 취지와 연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부분은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의 부분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관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

결론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만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IV. 공인 등의 대응 경향

1. 공인(公人) 등의 분류

누가 공인인가에 대하여는 실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공인의 개념은 법률상 개념도 아니고, 확정된 언어용례에 따른 표현도 아니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혹은 사인(私人)에 대비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 즉, 공직자를 뜻한다. 하지만 언론법(media law)에서 말하는 공인의 개념이 반드시 사전적 의미와 같지는 않고, 같을 필요는 없다. 여기에 관해서만도 국내외의 수많은 글과 사례가 있고, 공인의 분류기준과 방식 역시 나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 확립된 개념 정의는 사실상 어렵다.

재판례에 나타난 바로는 대통령, 전현직 국회의원, 법무부 차관, 서울시장 비서관, 국정원 정책특보 등 고위공직자 부류, 유명 연예인, 언론사 대표, 언론계에 알려진 시사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엄격한 의미의 공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공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공적인 인물 부류에 포함되는 인사들이다. 한편, 판례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³⁾

이와 같이 공인 혹은 공적인 인물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체계가 선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사건에서 공인 여부가 문제될 때에 해당 사건에서 주장·입증을 통해 밝혀야 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공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여 언제나 공인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앞으로 그 범위와 개념이 계속 정립되어 가야 할 분야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공인 등의 대응

최근 언론 관련 분쟁 중에 공인이 제기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신청이나 소송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은 주로 익명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는 범죄보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보도의 빈도 역시 높다. 따라서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이 언론분쟁의 당사자가 될 확률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 언론의 영향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 보도회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 글에서 공인 혹은 공적인 인물로 분류된 당사자들이 제기한 각종 언론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따로 내지는 않았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의 연혁을 간단히 소개하여, 공인 등이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반론보도 혹은 정정보도를 이용해 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에 대하여는 권력기구가 소송으로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언론의 위축효과를 낳게 되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올바른 정책 시행을 알리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상 대응매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부기관이 반론보도청구등을 이용하는 것은 무기대응의 원칙상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참조.

부는 후자의 주장에 따르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 반론보도(견해 대립은 있지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정정보도 역시 그 연원은 반론보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의 생성연원을 보면, 정부부처 등에서 언론에 응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론보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프랑스의 반론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반론권은 1799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법안으로 제출되었다가 1822년부터 법률로 시행된 제도이다.⁴⁾ 1789년 프랑스혁명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가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반론권이 인정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 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상호비방, 부질없는 정쟁만을 일삼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의회는 그에 대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권은 사실의 주장에 대한 반론뿐만 아니라 논평, 의견에 대한 반론까지 인정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넓게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1822년 법률을 모방하여 바덴주에서 1831년 출판법을 제정하고, 이어 1874년 연방 차원의 제국출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생성 초기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행사주체가 관청 혹은 사인(私人)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이행의 강제수단으로 벌금 등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어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말하자면 ‘관(官)’의 색채를 강하게 담고 있는 제도였다.⁵⁾ 그러나 1960년대를 전후하여 제정된 주별 출판법들⁶⁾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오로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을 민사상 청구권으로 순화하였고, 그와 같은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⁷⁾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색은 프랑스와 달리 의견이나 논평에 대한 반론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의 주장’에 대한 반론만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반론보도청구제도를 둔 이래 반론보도청구제도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어, 오늘날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확실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⁸⁾ 확실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에서 세계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반론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980년 독일형의 반론보도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교롭게도 반론보도청구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언론통폐합이라는 역사적 불운이 함께

4) Koch, Rechtsschutz durch Gegendarstellung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Tübingen 2000, S. 5.

5) Löffler, Presserecht-Kommentar zu den Landespressegeset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einem Besonderen Teil und einem Textanhang, München 1997, § 11 Rn. 180 참조.

6) 독일은 현재 16개의 주(Land)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이고, 독일 기본법상 출판, 방송에 관한 사항은 각 주의 입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7) 아직까지 바이에른주 출판법 제13조 제1항 c는 반론문 게재 거부시 신청에 의하여 과료를 부과하되 위 신청은 철회 가능하고, 또한 신청에 의하여 과료와 함께 반론문의 게재를 함께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8) 유럽 각 국가의 상황과 반론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öffler, aaO, § 11 Rn. 288ff. 참조.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각 폐지, 방송법은 2000년 폐지 후 같은 이름으로 제정됨) 등에 규정되었다가, 2005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생성 이래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모습을 띠어왔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 반론보도청구는 언론기관에 정보가 편중되고, 언론기관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의 현대적 상황 아래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시민 등에게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할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진다.⁹⁾ 우리의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평가를 보면, 1960년대 독일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관(官)의 색채보다는 시민의 권리로써 순화시키기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을 순수한 민사상 청구권으로 변화시킨 노력이 연상되기도 한다.

잠시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과 도입배경, 그리고 그 존재의의를 살펴보았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 형성 초기에는 주로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인 등이 반론보도청구권을 이용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이러한 연혁적·내재적 특징이 반영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공적 논쟁에 대한 비판 정도를 넓게 인정하고, 공인 등에 대한 보도의 면책 기준을 높인 시점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권은 공인 등이 그들의 법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여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글을 마치며

이상 2002년을 전후해 공적 사항,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보도의 비판기능을 확대해 온 판례 경향과 배경,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았다. 판례 변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다 신장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언론은 항상 인격권 보호를 생각해야 하고, 공정성을 잃거나 풍문이나 소문에 근거해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때에는 아무리 공적 사항,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인 등은 손해배상청구보다는 반론보도청구 등으로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응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언론은 시대환경에 따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시대 요청에 따라 언론의 책임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의 자유와 법적, 윤리적 한계

김 경 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몰래카메라는 통상 취재대상이 자신의 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피침해이익(彼侵害利益)의 성질로 볼 때, 허락된 사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동의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취재보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김경호, 2003). 이러한 몰래카메라가 동원된 방송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연출된 프로그램보다 훨씬 생생한 현장감과 긴장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증가와 함께 몰래카메라의 사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송의 위험성과 윤리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Boylan, 1997; Lidsky, 1998; Logan, 1998). 첫째, 카메라 기술의 발달이다.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기술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근래의 디지털 기술은 직경 1mm 정도의 초소형 카메라까지도 가능케 하여 취재대상의 눈에 띄지 않게 촬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해졌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은 취재과정에서 몰래카메라와 같은 보다 은밀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언론인들을 자극하고 있다(Kim, 2001; Walsh et al., 1996). 둘째, 경쟁적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시청률 싸움 또한 몰래카메라 사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매체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는 분산되어가고 있고, 방송사의 재원인 광고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몰래카메라가 적격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시청률 전쟁에서 생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감시견(watchdog)의 역할과 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즉 취재보도를 통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을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비판하는 것이 공적 존재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공중에 노출시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은밀한 취재방법이 부득이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Stewart, 1975)과, 취재대상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Walsh, et al, 1996)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취재방법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반사회적 범죄행위들을 공중에 노출시키고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취재방식이 부득이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Nick, 1999). 즉 공공의 이슈에 대한 제한 받지 않는 건전하고 공개된 토론을 위해서 취재의 자유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¹⁾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른 여타의 취재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감추어진 중요한 공적 이슈들을 공공의 관심사로 끌어내 왔고, 그 이슈에 대한 공개된 토론의 장이 되어 왔음을 자신들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다.

반면, 후자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언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²⁾

한마디로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한을 누리는 주체이지만, 이 보장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으며, 취재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까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³⁾ 이들은 또한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취재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몰래카메라 사용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또한 취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두 법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인격권 침해

1) 미국의 몰래카메라 사례와 프라이버시 침해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명예권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독립된 인격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890년 당시 변호사였던 사무엘 워렌(Samuel D. Warren)과 루이스 브랜디스(Louis D. Brandeis)가 '하버드 리뷰'에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⁴⁾ 그로부터 40년 뒤 연

1)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2)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682 (1972); Shulman v. Group W Production, Inc., 995 P.2d 467 (Cal. 1998).

3) Cohen v. Cowles Media Co., 501 U.S. 663 (1991).

4) Warren & Brandeis (1890).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Review 193.

방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브랜드스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하면서 법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발전하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에는 언론의 공격적인 취재행위가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렌과 브랜드스가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해왔으며, 이로 인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언론의 취재행위가 프라이버시를 법적 권리로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언론의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이어진 미국의 첫 번째 사례로 '다이트맨 대 타임' (Dietmann v. Time, Inc.)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라이프(Life) 잡지의 기자들이 무면허 의료기술 행위를 탐사보도하면서 가짜 환자로 위장, 다이트맨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취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⁵⁾ 판결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다이트맨의 허락 없이 그의 사무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취재 행위가 뉴스의 제작과 보도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취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몰래카메라와 같은 비밀스런 도구의 사용이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법리는 이후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왔다.

1999년 '샌더스 대 ABC' (Sanders v. ABC, Inc.) 사례에서 ABC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잠입취재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⁶⁾ 전화로 점괘를 보는 텔레사이직(tele-psychic)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위해 ABC 여기자가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고, 자신의 모자와 브래지어 속에 감춘 고성능 마이크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고인 샌더스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행위를 녹화했다. '프라임타임 라이브'는 촬영된 내용을 방영했고, 샌더스는 ABC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는 낮은 정도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하고, 몰래카메라로 무장한 잠입취재기자에 의해 작업장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닐지라도 프라이버시는 합법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다른 사적인 공간에 견주어 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여 그곳에서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가 법적으로 무용(無用)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업장을 침범한 사람의 신분과 침범의 성격, 동기와 의도 등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몰래카메라 사용이 다시 한번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푸드라이온 대 ABC' (Food Lion v. Capital Cities/ABC, Inc.) 사례는 푸드라이온 슈퍼마켓에서 표백제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재포

5) 449 F.2d 245 (9th Cir. 1971).

6) 978 P.2d 67 (Cal. 1999)

장, 판매한다는 제보를 취재보도하면서 발생한 경우이다.⁷⁾

ABC 소속 두 기자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사용,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몰래 녹화했다. '프라임타임 라이브'는 취재된 내용을 방송했고, 푸드라이온은 기자와 PD를 포함한 ABC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충성의무 계약의 불이행 (breach of duty of loyalty)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푸드라이온사의 동의가 거짓진술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될 수 없으나, 언론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허용된 출입의 범위를 넘거나 그 동의를 악용했을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가 사용된 작업장은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고기 재포장 행위를 촬영한 것은 기자들에게 허용된 출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위장 취업한 기자들의 작업장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은 고용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입의 허가는 원천무효가 되며,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 사례들과는 달리 몰래카메라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데즈닉 대 ABC' (Desnick v. ABC) 사례는 ABC '프라임타임 라이브' (PrimeTime Live) 기자들이 데즈닉 안과병원 (Desnick Eye Center)의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을 취재보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⁸⁾ 기자들은 안과

본원을 방문하여 공정한 보도를 약속하고 촬영 협조를 얻었으나, 약속과는 달리 몰래카메라를 지닌 위장환자를 본원으로 보내 수술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병원은 안과질환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며, 환자로 위장 촬영한 것이라도 의료행위는 사적인 것이 아닌 환자를 상대로 한 전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취재보도에서 데즈닉의 사적인 문제나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로 위장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이 데즈닉의 사적 소유권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2년 '메디컬 랩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대 ABC' (Medical Lab. Management Consultants v. ABC) 사례도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이다.⁹⁾ 이 사건은 '프라임타임 라이브' 기자들이 메디컬 랩에서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 분석 내용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취재하면서 발생하였다. 취재기자들은 투자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랩을 방문하여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설립자인 대바라지와 랩 시설을 촬영했다. 또한 랩 직원들의 출입을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촬영했고, 이렇게 수집된 비디오 클립을 방영했다. 메디컬 랩은 ABC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기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바라지가 자신의 의지로 기자들을 랩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부대시설로 안내한

7) 887 F.Supp. 811 (M.D.N.C. 1995), 194 F.3d 505 (4th Cir. 1999).

8) 44 F.3d 1345 (7th Cir. 1995).

9) 306 F.3d 806 (9th Cir. 2002).

것은 자신이 랩을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라이타임 라이브'의 취재보도 내용에서 대바라지의 사적인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고, 대화의 대부분이 랩 운영과 자궁경부세포진검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법이 보호하고자하는 프라이버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한국의 몰래카메라 사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심층 탐사프로그램, 뉴스보도,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의 장르와 상관없이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판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그다지 많다. <표1>의 사례는 언론사의 위법

<표1> 원고 승소 사례

원 고	피 고	판 결 요 지	사 건 번 호
김○○ 외	KBS 제이알엔(외주제작사)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이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박○○ 외	김종학 프로덕션 MBC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백○○	MBC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정○○	KBS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김○○	MBC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9577 판결
최○○	SBS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성○○	MBC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성이 인정돼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고, <표2>의 사례는 반대로 언론의 취재보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사례 1. '최○○ 대 SBS'

'최○○ 대 SBS' 사례는 대학 내에서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경찰이 현직 교수를 체포하는 현장을 동행취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다.¹⁰⁾

당시 SBS 기자는 레슨을 받고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 교수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촬영했고, 더 나아가 연습실 내부도 무단으로 취재했다. 이렇게 취재된 내용은 「8시 뉴스」를 통해 “서울 유명 대학의 현직 바이올린 교수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 취재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에서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 속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듯이 취재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

했다. 현직 대학교수가 교내에서 불법으로 과외 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취재·보도의 공익이 인정되지만, 해당 연습실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적 공간으로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사례 2. '성○○ 대 MBC'

'성○○ 대 MBC' 사례는 「시사매거진 2580」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문화를 취재보도하면서 사전 동의와 달리 보도하여 발생한 경우이다.¹¹⁾ 기자들은 촬영 협조를 구하면서 공정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약속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음주장면과 나이트 클럽 화장실 등에서의 대화를 무단으로 촬영했고, 퇴폐유흥에 물든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원고 성○○ 등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C의 취재보도가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원심을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상 원고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영

10)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그 촬영 후에라도 원고들로부터 그 방영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례 3. ‘김○○ 대 MBC’

‘김○○ 대 MBC’ 사례에서도 성○○ 사례와 비슷하게 인터뷰 허락의 내용과 달리 원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음성도 변조하지 않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¹²⁾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은 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중증 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며,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촬영 동의를 얻었다. MBC는 촬영된 내용을 “생명인가? 죽을 권리인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고, 익명성 보장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아버지 김○○의 건강상태나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병원 홍보담당 직원과 담당의사가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의 방송이라는 설명과 함께 방송사의 급한 사정, 익명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재차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인터뷰를 허락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 소속의 방송관계자 등 직원들은 원고가 익명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인터뷰

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얼굴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익명성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터뷰 당시 설명하였던 방송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리포터의 설명을 통하여 마치 원고의 아버지 김○○이 죽음에 임박한 말기 암 환자로서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사례 4. ‘정○○ 대 KBS’

‘정○○ 대 KBS’ 사례는 「KBS 저널」이 불법 성형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주기로 하였으나, 눈 윗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아래 부분은 그대로 방송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이다.¹³⁾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KBS 저널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9577 판결.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처리 등의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당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실제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실제 부작용이 문제가 된 코 부분 이외에도 그 아래 부분을 선명하게 노출하여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사례 5. ‘김○○ 대 KBS’

‘김○○ 대 KBS’ 사례는 대법원의 판결로 외주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KBS는 몰래카메라의 위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이다.¹⁴⁾

KBS는 「병원 24시」 프로그램에서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라는 제목으로 세쌍둥이 미숙아와 그들의 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방영했다. 원고는 세쌍둥이를 출산했으나, 그 중 2명은 사망했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원고는 살아남은 아이와 자신에 대한 촬영은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다. 1심 재판부는 촬영과정에서 외주제작사가 취재대상으로부터 촬영 동의

를 구했는지 여부를 방송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제지하는 등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KBS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 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KBS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사례 6. ‘백○○ 대 MBC’

MBC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남산의 두 얼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얼굴 및 음성에 대한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송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으며, 원고를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허위로 연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방송사가 방송을 내보내기 전 허위작출 여부 확인과 초상권 침해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¹⁵⁾

1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주제작사 소속 PD에 대해 MBC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MBC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아무런 조치나 확인 없이 원고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방송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음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제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외주제작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방송사의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사례 7. ‘박○○ 대 김종학 프로덕션’

‘박○○ 대 김종학 프로덕션’ 사례는 김종학 프로덕션이 제작해 문화방송에 공급, 방영한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 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영분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¹⁶⁾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표2〉 피고(언론사) 승소 사례

원 고	피 고	판 결 요 지	사 건 번 호
○○○○ 코리아	SBS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남○○	MBC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46767 판결
정○○	MBC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 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 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며,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정OO 대 MBC’는 언론사가 승소한 사례인데, TV 뉴스 앵커를 지낸 모 방송국 기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기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보도된 경우이다.¹⁷⁾ 「MBC 뉴스테스크」 ‘카메라 출동’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일어나는 취중백태를 보도하는 중에 원고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기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항의하는 과정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없이 내보냈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점,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

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주요 방송국의 앵커를 지낸 원고는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남OO 대 MBC’는 취재보도 된 내용이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¹⁸⁾ ‘OOOO코리아 대 SBS’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진실된 공익적 내용을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¹⁹⁾

3. 몰래카메라 사용과 언론윤리의 문제

법원 판결에서 보여진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전문인으로서의 언론의 윤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언론 윤리적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17)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46767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있음을 의미한다. 비판의 핵심은 카메라를 감추고 취재대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가 동원된 취재에 신분의 위장이나 취재 목적의 속임, 정보원과의 약속 파기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 모두가 전문직 종사자인 언론인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김옥조, 2004). 또한 모자이크처리와 음성변조 등을 통해 신분의 익명 처리를 약속하고 촬영에 임했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방송하는 등의 행동 역시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시사 범죄 고발프로그램 등에서 취재원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연출하는 식의 장면을 구성하기도 하고, 취재대상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여학생들을 가출한 것처럼 위장시켜 인신 매매범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한국언론재단, 2000).

윤리강령의 위반도 이러한 비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와 언론인 협회 등의 단체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인이 취해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용인될 수 있는 취재활동과 금지해야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취재보도의 지침으로 설정하고 그에 준하는 활동을 소속 언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심의규정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역시 비밀촬영 등 위법적인 취재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전문 언론인 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도 정상적인 취재방법으로 중요한 정보

를 습득할 수 없을 경우에만 몰래카메라와 잠입취재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KBS는 방송강령 제35항에서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MBC는 몰래카메라 준칙을 따로 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보도의 경우, 뉴스의 가치가 침해되는 프라이버시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 취재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SBS 역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활동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더 나아가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윤리강령이나 제작 지침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취재보도 현장에서 윤리강령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몰래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어서 윤리강령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소속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언론인이 다수이고, 강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윤리강령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언론인의 30퍼센트 정도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한 연구 결과도 강령의 구속력 부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취재 현장에서는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야만 문제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박한 순간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따져가며 취재를 해야

하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윤리강령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언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고, 언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시카고 대학교 리차드 엡스타인(2000) 교수의 지적처럼 언론인들이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보도의 진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청률을 의식한 부분의 진실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맥을 같이한다.

4. 몰래카메라 사용의 허용범위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판례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²⁰⁾

첫째, 취재 대상이나 내용이 지대한 공적 관심 사이어야 한다. 몰래카메라는 그 자체로 취재대상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촬영내용이 반드시 중요한 공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공익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보도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국민 이익과 직결된 경우이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그 목적이거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이를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보도하는 '데즈닉(Desnick)' 사례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정○○' 사례에서의 사용 등은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단순한 '공적인 문제' = '알 권리 충족'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활동은 취재대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공익적 근거를 가질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즉, 몰래카메라로 인해 침해되는 프라이버시보다 얻게 되는 정보가 현저하게 큰 가치를 가져야 한다.

둘째, 동일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체 취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어야 한다. 몰래카메라가 아닌 다른 유형의 취재방법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복수의 정보원이 있고, 그들과의 인터뷰 내지는 심층 취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도, 굳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성'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윤리강령에 따른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정상적인 언론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목적, 마감시간의 압력, 사용된 정보원과 보도 내용의 신뢰성 등에 따라 따져볼 수 있다.²¹⁾ 즉, 몰래카

20) <그림1> 참조.

21)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and Associated Press v. Walker, 376 U.S. 254 (1964).

메라의 사용이 필요한 성격의 프로그램인지, 마감시간의 압력에 쫓기는 상황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인지,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이 신뢰할 만한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윤리강령을 준수한 행위인지도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언론사는 윤리강령으로 취재보도의 기준·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을 전면 위반하면서까지 몰래카메라가 동원되었다면, 이를 상쇄할 지대한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언론사가 패소한 사례들의 대부분은 결국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로부터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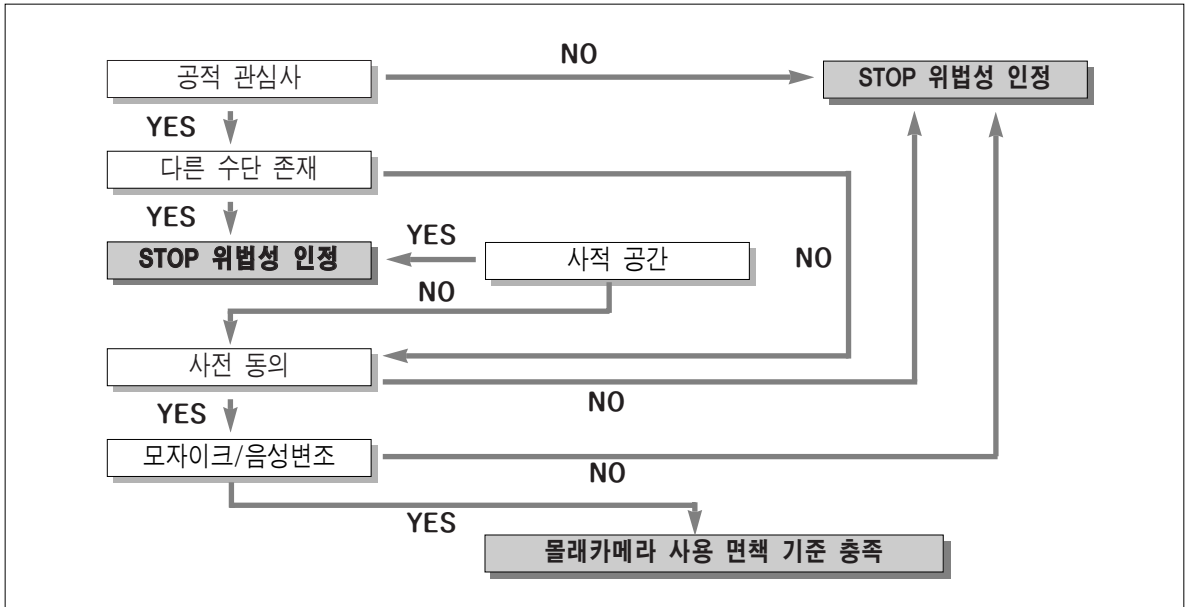
넷째, 사전 동의 범위 내에서 취재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대부분의 취재는 취재대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취재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요건을 구성할 뿐 아니라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 동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 취재 범위와 방향 등을 사전에 약속한 이상 이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전 동의를 파괴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취재대상의 의사와 반하게 실명이나 신상에 관한 개인적 문제를 노출시킨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성은 인정될 수 없다. '성○○ 대 MBC', '박○○ 대 김종학프로덕션', '김○○ 대 KBS', '김○○ 대 MBC' 등 다수의 한국사례들은 사전 동의에 따른 취재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적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집이나 사무실, 연습실 등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는 높은 정도의 사생활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촬영은 엄격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작업장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이트맨 대 타임' 사례와 '샌더스 대 ABC', '최○○ 대 SBS'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면허 의료시술과 불법 레슨이 이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이 강하게 보장되는 사적공간에서의 불법 취재보도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사전 동의를 전제로 촬영, 보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재대상에 대한 익명보장을 해야 한다. 사실 몰래카메라의 이용 자체가 촬영·작성 거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방영은 공표거절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취재된 내용의 방송 여부와 상관없이 취재과정에서 이미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성변조, 모자이크, 앵글처리 등의 방법으로 취재대상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사전 동의에 모자이크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기술적 처리를 통한 익명성 보호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일곱째, 외주제작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최종편집 권한이 방송사에 있는 만큼, 인격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김○○ 대 KBS' 사례와 '박○○ 대 김종학 프로덕션' 사례에서 법원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초상권 침해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운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1〉 몰래카메라 허용 기준 개요도



5. 맺는 말

몰래카메라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주요한 취재 수단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취재보도 할 필요가 있다. 또 윤리강령과 취재준칙에 준거해서 충실하게 정보를 습득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문인으로서의 언론인은 취재대상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알 권리 충족만큼이나 중요한 임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윤리학자인 밥 스틸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²²⁾

몰래카메라는 “적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보도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등, 국민 이익과 직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몰래 카메라의 사용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보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도저히 획득할 수 없거나 그런 가능성이 없을 시, 보도 방법의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속임수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려는 뉴스 기관은 가장 엄격한 규범을 만족시킬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 스틸의 기준은 〈그림1〉에서 제시된 기준과 함께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 윤리적 한계와 허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

22)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김경호 역(2008). 저널리즘과 진실, 이상한 동거. 32페이지 참조.

〈참고문헌〉

- 김경호 (2003).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246~273쪽.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언론재단 (2000). 언론인의 직업윤리: 책임 언론을 위한 현실 점검과 대안 모색. 서울: 한국언론재단.
- Boylan, J. (1997). Punishing the press: The public press some tough judgments on libel, fairness, and fraud.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r./Apr.), 35, 24.
-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김경호 역(2008). *저널리즘과 진실, 이상한 동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Epstein, R. A. (2000). Privacy, publication, and the First Amendment: The dangers of First Amendment exceptionalism. *Stanfaord Law Review*, 52, 1003~ 1047.
- Kim, G. H. (2001). Media liability for surreptitious and other intrusive newsgathering practic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 Lidsky, L. B. (1998). Prying, spying, and lying: Intrusive newsgathering and what the law should do about it. *Tulsa Law Review*, 73, 173~249.
- Logan, D. A. (1998). Masked media: Judges, juries, and the law of surreptitious newsgathering. *Iowa Law Review*, 83, 161~229.
- Nick, D. (1999). Food (Lion) for thought: Does the media deserve special protection against punitive damage awards when it commits newsgathering torts? *Wayne Law Review*, 45, 203~236.
- Stewart, P. (1975). Or of the press. *Hastings Law Journal*, 26, 631~637.
- Walsh, J. J., Selby, S. J., & Schaffer, J. L. (1996). Media misbehavior and the wages of sin: The constitutionality of consequential damages for publication of ill-gotten information.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4, 1111~1144.
-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193~220.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 대구중재부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정 결 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0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결진 위원(대구 중재위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대구중재부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대구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인 위원(전 대구방송 보도국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문제의 제기

언론의 취재 보도는 언론매체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론매체와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이 묵시적 동의는 언론매체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제공하고, 국민은 언론매체가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데 합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바로 올바른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올바른 보도’는 흔히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보도는 사실에 입각해 바르게 보도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아가 직접 취재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기록이나 자료, 관련서류를 찾아 확인하고, 관계 전문가나 권위자, 목적

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인용을 통해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확한 보도에는 그 기사의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이 밝혀져 있다.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올바른 보도라면 그렇지 못한 보도는 그릇된 보도, 오보가 된다. 오보는 언론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확신마저 부정하게 할 수 있다. 또 오보는 의사소통채널을 붕괴시키고 언론이 국민과 한 묵시적 합의 약속을 깨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암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접수 처리된 사건의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본다.

주제논문

II. 오보의 정의와 발생원인

1. 오보의 정의

오보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릇되게 보도 되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보도의 잘못으로 인해 쓰이고 있는 허보·오보·과장보도·왜곡보도·편파보도·불공정보도·부정확한 보도 등은 언론이 보도를 그릇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체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또 진실한 보도를 하지 않는 보도이다. 따라서 오보란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라고 할 수 있다.

2. 오보의 발생원인

오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자의 취재보도와 관련된 개인의 미숙성과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내외적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자의 미숙성은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및 과실뿐만 아니라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결여, 상대방의 의식적인 기만에 의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전문지식의 부족, 편집과정에서 확인 미비 등은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있다.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광고주의 압력, 권력의 간섭,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이나 통신기사의 확인 어려움 등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으로 오보를 발생하

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요인들이다.

III. 오보의 유형과 특징

오보의 유형은 크게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객관적 오보는 주로 이름, 철자, 주소, 장소 등과 같은 사실 확인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나타나는 오보의 현상이며 또 공표사실이나 발표문, 보도 자료 등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의 미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객관적 오보는 주로 언론인의 확인부재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주관적 오보는 부정확한 제목, 과대·과소표현, 생략 등과 같이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언론인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어 나타나는 오보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IV. 조정·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징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가 신청되는 보도기사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전제는 뉴스의 보도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정 또는 중재가 신청된 보도기사는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가 아닌 오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정·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오보의 유형과 특징

을 찾아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신청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류해 그 유형과 특징을 찾아보기로 했다. 때문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기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오보의 원인과 유형의 기준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연구문제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들이 어떠한 오보 발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 가운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조정 신청된 모든 기사인 47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내용을 분석했다.

2) 조사측정항목

이 연구의 기본취지는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들이 어떠한 오류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항목들을 측정항목으로 하여 기사를 분류해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기사의 중심주제, 신청기사의 보도공정(균형)성, 신청기사의 정보원의 활용출처, 신청인의 주장

에 나타난 신청기사의 오류 유형, 신청기사의 오보 유형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3. 분석결과

1) 조정·중재신청 기사의 중심주제

조정·중재신청 기사들을 중심주제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범죄 관련기사가 29건(61.8%)으로 신청기사건수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청기사가 많은 중심주제는 정책·행정 분야로 10건(21.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중심주제는 전체 신청기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2) 조정·중재신청기사의 보도 공정(균형)성

신청된 기사의 보도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36건(76.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관계 속에서 한쪽의 의견이나 입장만 편향되게 보도한 일방적 내용의 경우가 쌍방향적으로 대립, 갈등 입장을 고르게 다루는 기사인 11건(23.4%)보다 월등히 많다.

3) 조정·중재신청기사의 정보원(news sources)의 활용출처

신청기사의 내용에서 어떠한 정보원(news sources)을 활용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정보원으로 개인을 정보원

주제논문

으로 활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20건(42.6%)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관과 자료를 함께 활용한 경우가 13건(27.6%), 정보원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8건(17.0%), 개인과 기관, 자료를 모두 활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6건(12.8%)으로 가장 적었다.

4) 신청인 주장의 오류 유형

신청인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어떤 유형의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신청인이 보도내용 기사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객관적 오류가 33건(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허위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거나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했다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했다거나,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했다고 주장하는 주관적 오류는 11건(23.4%)이었으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보도가 되었다고 주장한 기타오류가 3건(6.4%)이었다.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오류들의 세부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오류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가 25건(75.8%), 잘못된 정보 확인이 8건(24.5%)으로 정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가 전부다.

주관적 오류의 경우는 정보 확인을 하면서 기자가 임의로 정보를 잘못 확인한 경우 7건

(63.6%)으로 가장 많다. 즉, 정보 확인을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로 기자에 의한 주관적 정보 확인이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과대표현의 사용이 3건(27.3%), 사실생략이 1건(9.1%),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미동의를 3건으로 나타났다.

5) 중심주제별 세부 오류 유형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의 중심주제에 따라 나타난 세부 오류 유형이 있다. 정치기사의 경우 모두가 잘못된 정보 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행정 관련 기사의 경우는 사실 확인미비가 9건(90%), 잘못된 정보 확인이 1건(10%)으로 사실 확인미비로 인한 오류가 절대적이다. 교육과 의료의 경우도 사실 확인미비가 각각 2건이다.

사건·사고·범죄 기사의 경우 잘못된 정보의 확인이 12건(41.4%)으로 가장 많고, 사실 확인미비가 11건(37.9%), 미동의를 3건(10.3%), 과대 표현이 2건(6.9%)이다. 문화관련 기사의 경우 1건이 사실 확인미비로 나타났다.

6) 신청기사의 보도 균형성에 따른 세부 오류 유형

보도내용이 일방적 혹은 쌍방적인가에 따라 주장된 오류의 세부내용이 어떠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인 경우 오류가 나타난 경우가 36건(76.6%)이며, 쌍방적인 경우

가 11건(23.4%)으로 일방적 보도에 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인 경우 사실 확인미비가 19건(52.7%)으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 확인이 14건(38.8%)이나 된다. 즉 일방보도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와 잘못된 정보 확인이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쌍방향적인 경우에도 사실 확인 미비가 6건(54.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쌍방향인데 불구하고 미동의에 의한 오류도 3건(27.3%)이나 되고 있다.

7) 오보의 유형과 특성

조정·중재 신청된 보도기사들이 어떠한 오보 유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오류의 유형이 오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보도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객관적 오보가 33건(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객관적 오보는 모두 사실 확인미비와 잘못된 정보 확인으로 인해 오보가 발생했다.

주관적 오보는 11건(23.4%)으로 기자가 정보 확인을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보도해 오보가 된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은 과대표현의 사용, 사실생략 등으로 인해 오보가 되고 있다.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미동의가 3건

(6.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미동의에 의한 오보는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오보에 가깝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라고 주장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한 기사를 중심으로 그 유형과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대구 중재부에 신청된 47개의 모든 기사를 통해 그 유형과 특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첫째, 사건·사고·범죄 관련기사와 정책·행정 관련기사가 신청기사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언론의 특성과 매우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지역 언론의 특성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나 범죄, 지역의 정책이나 행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 언론의 취재보고 임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신청기사의 보도 균형성에서는 일방적 보도가 대부분이며, 뉴스 정보원의 활용출처도 다양한 출처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청인이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 오류의 유형 가운데는 객관적 오류(7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제논문

특히 객관적 오류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75.8%)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잘못된 정보 확인(24.2%)으로 인한 오류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확인미비로 인한 오류발생은 정책·행정기사, 의료, 교육, 사건·사고, 문화 등 대부분의 중심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자가 임의로 관련 사항을 보도했다거나 취재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했다거나,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의 생략 등으로 인한 주관적인 오류(23.4%)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관적 오류의 대부분은 정보 확인을 하면서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오류가 많이 발생된 중심주제 역시 사건·사고·범죄 관련 기사였다.

넷째, 오보의 유형으로는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이며, 객관적 오보는 사건·사고·범죄관련 기사와 정책·행정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오보는 4건의 오보 가운데 약 1건 정도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건·사고·범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오보이든 주관적 오보이든 사실 확인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황이해와 취재보도에서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보가 발생한 경우가 40건(85.1%)으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자가 취재,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사내용에 오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범죄와 같은 속보성 기

사의 경우 취재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재과정상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유에는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개인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실 확인의 미비,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부족, 상대방에 대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 또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취재보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거나 줄이려면 기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의식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전문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대기자 제도의 활성화, 언론사 내에서의 지면심의 기능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보는 언론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오보는 독자, 시청자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스원(news sources)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언론은 오보를 낳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언론과 국민 간에 맺어져 있는 묵시적 합의를 지켜나가는 길이다. □

토 론

사 회 권 태 인

전 대구방송 보도국장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주제발표해주신 정결진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상(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언론사의 정정보도문은 아주 작게 보도하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문도 원 보도에 맞게 보도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정정보도문은 조정중재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위원회가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계속 연구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덧붙여 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대구교통방송 방송편성제작국장) : 취재

관행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오보를 한 후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일반적으로 관행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관행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주제논문은 관행을 따르다 오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보가 나온 이유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정만진(대구시 교육위원) : 오보를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분류하였는데,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국민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 독자입장에서 보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소외되기도 합니다. 관변자료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 측면에서 오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지역의 언론사들이 영향력이 큰 데 비해 신청 건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우리 언론이 과연 대

토 론

중이 알고 싶은 것을 보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련자료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
문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언론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찾아 보
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쪽에만 치우쳐
보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공적영
역과 사적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적영역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만을 보도하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
서 보면 오보가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관
련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면 홍보가 될 수 있고,
잘 분석하여 보도하면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
습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7건이지만 실제 3년간 신
청된 건수는 77건입니다.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
외하였기 때문에 47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구
지역의 신청건수가 적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언론 현업에 계신 분
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미화(매일신문 편집부국장) : 요즘은 관련자료
를 보도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발표내
용에 객관적인 오보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
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고된 기사를 데스크에
서 확인하고 보도하였는데, 현재는 전자조판체
제가 갖추어져 송고된 기사를 여러 부서에서 검

색할 수 있고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오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자조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보를 줄여 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규모가 작은 신문사
들이 많이 신청됩니다. 이런 신문사의 기사는
사실미확인으로 오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1차적
으로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면 그 만큼 오보
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재일선에 계신 기
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문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터넷신문사들은 취재인력이 부족하여 사실 확
인 없이 다른 신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다 오보
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보를 줄이도
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훈(경북뉴스 편집국장) : 보도자료를 받고
마감시간 때문에 확인취재를 못하고 보도하였는
데,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한 측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공
무원이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 보도
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
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보도자료를 보도한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초상권과 관련된
질문은 사무총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대
로 보도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초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보도에서 범죄사실 자체는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공익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도 얼굴 사진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보상(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식사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로성 목적의 보도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성(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 : 과장보도도 오보로 분류되는지 묻습니다. 일전에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설업자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기자가 한쪽 당사자의 입장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하였습니다.

정걸진(발표자, 중재위원)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쪽만 크게 보도했다면,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오보입니다.

김재성(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 : 기자가 상대방을 부추기어 다툼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걸진(발표자, 중재위원) : 그러한 보도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임경희(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회장) : 주제 발표하신 내용 중 오보 분석 결과 경제관련 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기업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주인공은 아파트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가 광고주로서 언론사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아파트 광고가 나오면 광고성 기사도 함께 나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불만스러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도된 오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걸진(발표자, 중재위원) : 경제관련 기사는 오보일 확률이 적습니다. 그 만큼 경제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성 기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도 기업적인 측면이 있고 사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입장에서 보면 의도된 오보일지라도 언론현실상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문을 모두 구독하여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좋은 신문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조적 오보도 사라질 것입니다.

조길성(광복회 대구지회 사무국장) :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편파적인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하여

토 론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농림부가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재부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막판에 결렬되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이의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권성(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정결진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활발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전에 위원회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본부장의 상담과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광건(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본부장) : 우리 센터에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주관하고 제도에 관해 연구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과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단체나 대학교, 기업체,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교육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위원장) : 위원회가 오보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것 중 정정보도문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정보도문의 크기나 제목 형태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조정성립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하였음에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정에 주력해 왔지만 중재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 가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뉴스도 조정대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포털이 취급하는 보도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긴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중재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법원 이외의 곳에서도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구를 갖거나 법률적 체계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법원 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우리 위원회가 세계 속으로 전파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의 중심이 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심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 미디어와 인격권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I. 서론-배경과 목적

2008년 상반기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를 뒤흔 든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 파문에 따른 촛불시 위는 개인 미디어의 위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드러낸 신종 미디어 사건이었다. ‘일인 저널리즘’, ‘스트리트 저널리즘’ 등의 새로운 용어가 일반화 되면서 급변하는 매체환경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의 졸속성과 불가피성 등을 두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란 속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도형태는 그 자체로 주목을 받았고 시위를 확산, 지속하는 동력이 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현상 중 하나는 소 위 ‘디지털 게릴라’의 등장이었다.

쇠고기 촛불집회에서는 일반시민이 거리에 가지고 나온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문자메시지의 위력이 제도권 언론을 압도했다. 일명 ‘스트리트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개인 미디어들은 제도권 언론이 사회적 현상의 진단을 위해 제공하는 프레임의 거부했다. 자신의 시각으로 현장에서 생

산해 낸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존의 정보유통 양상을 뒤바꿔 놓았다. 이들은 때로는 시위 참가자면서 동시에 정보 전달자 역할도 자처했다.

과거의 집회가 주도세력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데 비해 2008년의 촛불집회의 주요 특징은 주도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뒤늦게 ‘광우병 대책범국민회의’ 등의 조직이 구성됐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범국민대책회의 집행부는 법적 처벌대상이 돼 하나둘씩 구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배대상이 돼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 역할을 한 것도 없는데 법적 중징계 대상이 된 아이러니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상명하달식 결집과 운영이라는 기존 집회의 일반적 형태를 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진행의 모습을 갖춘 것은 개인 미디어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전자 민주주의(e-민주주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생산해 낸 정보 중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 요소를 걸러내지 못한 상태로 제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개인의 신분이 함부로 노출되기도 했다. 소문 수준의 각종 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실의 공표와 퍼나르기로 인해 ‘여대생 사망설’, ‘전경의 성폭행설’ 등이 급속도로 퍼지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08년 7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 기강과 법질서 확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때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은 무너졌다. 이제는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년 동안 모든 사회부문과 집단의 욕구가 제한 없이 분출됐다. 무질서한 불법시위와 파업으로 한 해에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12조 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꿈인 선진강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 정국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번 미국 쇠고기 파문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과감하게 바로잡겠다. 다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쇠고기 시위 때문에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이 무너졌다”고 진단하는 동시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법치주의, 국가기강 훼손 이면에 바로 일인 미디어를 통한 쇠고기 시위의 확산과 차단 실패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소통실패도 인정하고 있다.

소통의 수단은 늘어났지만 소통은 단절됐다. 미디어는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고 소통하는 그 역할에 실패했다.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사과와 반성이었다. 이 글은 쌍방향을 거부한 일방통행식의 흐름, 기성 미디어의 한계를 질타하며 등장한 ‘스트리트 저널리즘’과 개인 미디어가 향후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개인 미디어의 폐단을 줄이고 그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미디어의 명과 암 △개인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법제적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인 미디어의 출현에는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기성 미디어의
실패에 있어

II. 본론-쟁점 및 논의

1. 개인 미디어의 명과 암

개인 미디어가 나오는 데는 반드시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성 미디어의 실패에서 찾는다. 기성 미디어가 제 역할을 충실히하며 시위자들의 요구와 분노를 정확히 전달했다면 개인 미디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기성 미디어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는커녕

거꾸로 이들을 ‘친북세력’, ‘좌파’ 등으로 이념적 색깔을 뒤집어씌웠다. 대다수 순수한 입장에서 쇠고기 협상의 졸속을 비판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검역주권을 요구했던 시위자 다수를 이처럼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기성언론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일인 미디어는 등장했고 오히려 각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로 불리는 거대 신문사들의 이념공세는 기성언론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내는 동인이 됐다.

과학과 기술발전의 산물인 전자 미디어 시대는 이런 개인 저널리즘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개인이 소지한 캠코더나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은 실시간 촬영과 유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인터넷상 포털의 위력은 개인 미디어 생산자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해서 기성 미디어를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상의 보도가 기성언론의 이어받기식 보도로 더욱 강력한 사회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수순을 되풀이 했다. 전자 민주주의의 위력과 발전을 보는 듯 했다.

기성 미디어의 보도에 식상해하던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개인 미디어의 위력은 배가됐다. 퍼나르기와 새로운 영상 등은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힘이었다. 그러나 기성 미디어를 대체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던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빛을 잃는 것도 순식간의 일이었다.

개인 미디어의 최대 약점은 전문성 부족이었다. 기성 미디어가 몇 차례에 걸쳐 게이트 키핑(gate-keeping) 과정을 거치며 정제된 정보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그런데 개인 미디어는 게이트 키핑 과정없이 그야말로

개인 혼자서 취재, 보도, 편집, 유통시키는 ‘일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안고 있었다. 아무리 신선하고 훌륭한 뉴스감이라 하더라도 저널리즘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타인에 대한 인격권을 지켜주지 않을 때 약재가 되는 법이다.

시위대와 구타논란 과정에서 전경의 신원이 노출 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잘못을 범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최대 약점인 ‘믿거나 말거나’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의 유통 문제는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대생 사망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유통되기도 했다. 이런 괴담 수준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 개인 미디어는 설 곳이 없어진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건강한 공론의 장인 인터넷이 유언비어와 괴담 유통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합리적 진보의 목소리는 수용하되 ‘낮에도 촛불을 들어 사회를 마비시키자’고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극렬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 때문에 개인 간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쇠고기 파

문 수사와 관련한 수사진행상황을 보면 작은 문제가 큰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 같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이처럼 극히 일부의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정보 유통 때문에 크게 훼손될 위험성에 놓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2. 개인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향후 개인 미디어는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인터넷상에서 저널리즘의 한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각 개인 표현의 자유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지만 그 누구도 선불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발달과 미디어의 다양화, 다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 미디어가 보다 신뢰받는 대중 미디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개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와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그 역할도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1) 저널리즘의 기본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 미디어도 당당한 미디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충족시켜야 한다. 저

널리즘의 기본이라면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킨다는 것이다. 취재, 보도의 자유가 곧바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도에 따른 전적 책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보도뉴스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저널리즘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시위 가담자이면서 동시에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중립적 입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개인 미디어의 주관성과 편향성 시비는 바로 이런 정보생산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어디서부터 의견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존중돼야 한다. 또한 ‘놀라운 사실’, ‘새로운 영상’ 등을 공개할 때는 그 근거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본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내가 본 것’, ‘내가 찍은 것’은 진실의 일부를 구성할 수는 있다.

저널리즘의 기본요건인 사실관계의 확인과정, 사실과 의견의 구분, 형식적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 등은 개인 미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개인 미디어 신뢰확보의 전제조건이 되며 정보전염병을 차단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적 실무지식이 필요하다.

개인 미디어도
 당당한 미디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해야

개인 미디어의 위험성은 법적 책임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제작의 전문성과 언론법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또 다른 사회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 미디어의 위험성은 의욕이 앞서고 신속하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검증과 확인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인 미디어는 책임보다는 도발을, 보호보다는 공개를 우선시한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한 개인에 집중되는 만큼 기성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개인 미디어 제작의 유용성이나 책임성, 법적 보완책 등을 연수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드물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따지는 법제는 더욱 다양화되는 데 비해 개인 미디어의 자기보호 장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 미디어의 유용성과 역할은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신용권 훼손 등 미디어가 자주 범하는 개인 법익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언론중재위원회가 다양한 실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유사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도 큰 교육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 연구 등은 개인 미디어 보호차원에서 필수정보가 될 것이다. 법적문제는 향후 개인 미디어의 발전과 퇴보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뒤편에서 따로 진행하고 자 한다.

3) 게이트 키피ng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 미디어는 혼자서 취재와 보도, 편집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일인 미디어를 의미한다. 이것은 몇 차례 검증과정을 거치는 대중 저널리즘에 비해 신속한 측면은 있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인 미디어에 게이트 키피ng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논의해보자.

방송뉴스나 취재물의 경우, 취재기자 외에 영상 쪽 담당 피디와 부,국장 등은 내용의 정당성과 취재의 균형성 등도 살피지만 법적 위배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게 된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전담 변호사의 자문까지 얻어서 보도여부를 판단할 정도다. 최소한 서너 차례 검증과정을 거치며 그 내용은 영상의 노출 정도, 보도의 정당성과 법적 위배 여부, 사회적 책임, 신속보도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정상을 참작 받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미디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혼자서 비전문가가 제작하더라도 그 영향력과 파급강도는 대중 미디어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똑같은 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인 미디어 생산자는 매우 위험한 저널리즘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일인 미디어도 어떤 형

태로운 게이트 키핑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보도의 자유만큼이나 개인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인 미디어 단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게이트 키핑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를 게재하는 포털 등 관련책임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일인 미디어가 온라인을 타고 빠른 시간에 전파되고 이를 기성 대중 미디어가 확산 전파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순식간에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기사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인 미디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경우 그 사회적,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일인 미디어가 져야한다. 게이트 키핑 없는 저널리즘은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일인 미디어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3. 법적 과제

최고기 파문에 따른 촛불시위로 개인 미디어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새롭게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정부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개인 미디어의 창구역할을 했던 아고라 운영자는 구속됐다. 사이버상의 모욕죄 등은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실명제를 강화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이명박 정권 초기 광화문

을 비롯한 전국을 뒤흔든 촛불시위에 놀란 정부는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해서 인터넷이 시위문화화를 주도, 확산시키는 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끈질기게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가담자들을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것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많은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익명의 제보와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이 그 토대가 됐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언론 정책은 일인 미디어가 설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학계

에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9월 9일 (사)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온라인 표현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선 안 되며, 인격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의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신문법·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에 혼재한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비해 과도한 규제는 풀고, 뉴스를 선별·배치하는 편집권을 행사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언론중재법상의 권리와 의무주체로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의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김학웅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법원들은 ‘익명은 한 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법정형에 정한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자칫 정치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표적 수사처럼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일인 미디어, 스트릿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통제방법이 다각도로 모색되며 여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는 통제기제를 개발하고 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찾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인터넷은 진화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통제와 일방적 소통이나 억압만으로 국정을 펴나가는 데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III. 결론 및 제언

일인 미디어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시켰다. 일인 미디어의 신선한 충격은 기성 미디어의 반성과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을 노출시켜 국가적 통제권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결론은 단순하다. 일인 미디어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은 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역기능을 차단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자칫 순기능마저 억압하는 무리한 개입과 억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벌써부터 ‘방송통신심의위는 온라인 표현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선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시되는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마저 의심받고 있다. 국가기관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같을 리 없다.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일인 미디어 차원에서 자기 규제를 위한 자율규정 제정 등이 모색돼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최후에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다소간의 혼란과 논란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출판물에 게재될 것을 승인 또는
용인 하에 한 발언은 명예훼손 책임져야**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음악시장 조사회사인 오리콘(オリコン)이 월간지의 코멘트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발언자인 烏賀陽弘道씨에게 5,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지난 4월 22일 코멘트 기사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 1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烏賀陽씨에 의한 반소(反訴)는 기각됐으며 5월 2일 항소했다.

문제가 된 코멘트는 출판사 인포번(インフォバン)이 발행하는 월간지 「사이조오」(サイズ-) 2006년 4월호에 게재되었는데, 오리콘의 음악 히트차트(ヒットチャート)에 관해 烏賀陽씨는 “예약만 해놓고, 다음에 해약하는 공(空)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코멘트를 했다.

이 소송에서는 취재에 응한 개인의 코멘트와 기사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주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재판부는 “편집권은 출판사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코멘트를 그대로 게재하는 데 동의하거나, 게재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용인하고 코멘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의 경우는 烏賀陽씨가 원안에 스스로 수정을 가하고 편집하여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 “코

멘트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5월 13일자) □

**일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채택**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11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성립되었다. 이에 앞서 10일에 열린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사업자 등이 행하는 유해정보의 판단 등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조해(阻害)하는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로 정의했으며, 휴대전화회사 및 ‘퍼스컴’(personal computer) 메이커 등에 ‘필터링 서비스’(filtering service)의 제공을 의무화시켰으나, 벌칙은 두지 않았다. 유해정보의 판단은 민간의 제3자 기관에 위임하되, 다만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필터링 추진기관은 총무성이나 경제산업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일의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다양한 정보에 관한 정보발신이나 액세스(access)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다. ▲필터링의 기준을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는, 표현·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또한 사업자 등이 행하는 유해정보의 판단 등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등 8개 항목의 부대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민간방송연맹은 11일 이 법안의 성립에 대해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6월 10일자) □

EU가맹국들 아동 포르노사이트 규제 강화

아동포르노 등의 사이트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EU)은 올해 말까지의 4500만 유로(약 750억 원)를 들여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가맹국 중 프랑스는 지난 6월10일 인터넷 업체와 협력하여 아동포르노, 테러나 인종 증오를 복돋우는 사이트의 봉쇄책을 올 가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에 이은 조치로, 영국에서는 아동포르노 ‘화상(畫像)’의 해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EU의 계획은 아동학대, 인종차별,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증폭시키는 비합법 혹은 유해한 콘텐츠를 감소시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①비합법·유해 콘텐츠에 관한 핫라인의 설치 ②필터링소프트의 연구 ③인터넷업자의 자주적인 규제능력의 향상에 노력한다는 세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규제는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침해한다는 비판

도 있으나, 아동의 보호를 중시하는 자세만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9월 이후 이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 인터넷 업체에 전달하여 액세스 봉쇄를 하는 한편 내용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에도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8년 6월 24일자) □

프로그램 편집은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

중군위안부 문제를 취급한 일본 NHK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취재에 협력한 시민단체가 NHK와 2개의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2일 2심판결을 파기, “취재대상자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신뢰(기대권)는 원칙적으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프로는 NHK가 교육TV에서 2001년 1월에 방송한 ‘전쟁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추궁되는 전시성(戰時性) 폭력’으로, 시민단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바우넷)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민간법정 등을 취급했다.

바우넷(바우네트)는 “외부의 압력으로 취재 시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변(改變)되어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NHK는 “편집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취재대상자가 기대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무는 없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기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취재대상자에게 각별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일정한 내용과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에서 취급할 것을 설명하고, 그 설명에 따라 취재에 응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기대권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의 경우 “바우네트에 각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고, 취재 시에 일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방송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 기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横尾 재판장은 개별의견에서 “기대권을 침해한 경우 위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보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대권의 보호는 프로그램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편집은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따라서 기대권의 법적 보호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송의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2004년 NHK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의 범위 내”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취재를 담당할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100만 엔의 지불을 명했으며, 2007년 2월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바우네트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NHK를 포함한 3사에게 2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6월 17일자) □

Guardian, 거대 할인점 Tesco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단 승리

유럽에서 이뤄진 거대 할인점의 세금회피 계획

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상급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Guardian」은 Tesco와의 명예훼손 전쟁에서 승리했다. 어제 예비 심리에서 Eady 판사는 사실탐정에 의해 밝혀진 Tesco사의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세금 계획안이 「Guardian」을 상대로 한 향후 명예훼손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Guardian」의 탐사보도 에디터이자 신문사를 대변하고 있는 David Leigh는 오늘 지면을 통해 두 계획안은 Tesco의 수익에 대해 최대 3천만 파운드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Tesco는 역외 은행과 투자사를 통해 10억 파운드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도한 「Guardian」을 제소했으며, 신문사는 그 수치가 일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Tesco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제안에는 수용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사는 여전히 Tesco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인지세 등 85백만 파운드에서 95백만 파운드 정도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명예훼손법은 원고가 정정보도 제안에 대해 수용이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Eady 판사는 Tesco에게 12월 15일까지 「Guardian」의 정정보도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확정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의 정정보도 제안은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며, 판사는 보도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정정보도 제안이 이뤄졌는가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Eady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신문사와 책임 편집인 Alan Rusbridger가 Tesco의 세금 회피 사실에 대해 악의적인 조작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Tesco는 Eady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esco는 성명을 통해 어제의 예비심리는 법정 다툼의 시작에 불과하며, Tesco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고 본 소송은 내년에 가서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Tesco는 이 사건에 대해 「Guardian」은 많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ress Gazette 2008년 7월 30일자)

않는 게으른 사람이며, 그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을 축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Taylor는 그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그 기사에 대해 한 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더 피해를 크게 했다면서 신문사가 자신과 접촉한 적도 없으며,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aylor는 「Express Newspaper」가 향후 자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신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구했다.

(Press Gazette 2008년 4월 17일자)

자신의 연금수령을 비하한 신문사에 소송 제기

다섯 자녀를 가진 한 어머니가 「Express Newspaper」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주부인 Anna Jean Taylor는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하지?” 라는 제목의 2007년 2월 22일자 기사가 자신을 일 년에 3만5천 파운드의 연금을 축내는 다섯 아이의 엄마라고 묘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Taylor는 5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크게 싣고 ‘무임승차 가족’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Daily Express」의 기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그녀에 대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엉덩이를 붙이고 움직이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에 관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Eady 판사는 Max Mosley와 「The New of World」에 관련한 이번 판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새로운 점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53쪽짜리 판결은 프라이버시 소송과 관련해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 해석에 있어 그의 주목할 만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목요일에 Eady 판사는 Mosley가 첼시에서 다섯 유력인사와 함께 사도마조히즘적인 혼외 정사를 가졌다고 보도한 「The New of World」의 기사와 사진, 비디오와 관련해 6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4만5천 파운드의 비용도 「The New of World」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신문사 자체

의 비용도 몇 십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Eady 판사는 유럽 인권 조약과 판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The New of World」가
익명의 여성을 취재원으로 해 공개한 그 기사
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
다. 기사에서 익명의 여인은 사도마조히즘적
관계를 가지는 은밀한 조직이 있고, 그 사이
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밀에 붙이는 것은 불문
율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에 대해 익명의 여성은 모임의 신
뢰를 깨고 기자는 그 여성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혐의는 의
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
카메라를 제공하고 그 작동법을 알려준 것
은 그녀가 그 모임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의
심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판사는 인권법 하에서 비밀에 관한 법률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생활 보호
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것은 법이 시민의 자율
성과 명예, 자존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
다.

그는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판사의 무책임
한 판결이 아니라, 의회가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1998년 입법한 법률이 법
원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ady 판사는 수석 기자인 Neville
Thurlbeck가 익명의 여성과 대화한 기록을 제

출할 수 있었다라면 「The New of World」의
Mosley와 관련한 도청이 공공의 관심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Thurlbeck의
신뢰성이 부족한 증거와 관련하여 Eady 판사
는 그가 녹음 목적을 말하는 대화를 기록한
내용 등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
게 만들며, 그러한 내용들이 기사에 대한 신
뢰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준
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인 문제와 사생활에 대한 일반적 이
슈에 있어서 Eady 판사는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다면 성
적행위를 하는 사람 누구도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밀도 없다고 종종 얘기
되어 지지만, 현대사회에서 성인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페티쉬 등의 성적인 행동들
에까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도 말했다. 판사는
또 범죄적 사안을 노출하기 위한 사생활의
침입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범죄라는
것이 매우 미미한 것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의 취
재를 위한 사생활 침입은 항상 허용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마리화
나를 피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
을 것인가? 분명히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ady 판사는 추가 의견을 통해 「The New

of World」의 기사가 공중의 관심사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그 모임이 나치를 주제로 한 일이었다. 하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만약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치 역할을 하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비웃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생활의 침입은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Eady 판사는 「The New of World」의 편집인 Colin Myler와 Thurlbeck가 그 모임에 나치적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선의의 의도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하나의 표석이 될 수 있음은 부인했다. 그는 이 판결은 사실관계와 출판의 원칙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탐사보도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8년 8월 1일자) □

**Facebook에 올린 잘못된 정보에 대해
22,000 파운드 배상판결**

자신의 관한 가짜 Facebook 소개란을 만든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업가에 대해 고등법원은 그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2만2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pplause Store Production의 운영자인 Mathew Firshet는 자신의 학교 동창이자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Grant Raphael이 “Mathew

Firshet가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제목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맥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와 관련한 영국의 첫 명예훼손 소송으로 여겨지는 이 소송에서 Richard Parkes 판사는 Firshet에게 1만5천 파운드를 회사에게 5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Mathew Firshet는 또 사생활 침해와 관해서도 2천 파운드를 받게 됐다.

담당 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Firshet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당한 돈을 빚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유포한 것은 Firshet가 심각한 신용적 문제가 있으며 그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Raphael은 그 내용이 자신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Firshet의 형제에 의해 발견되어 삭제되었으나 그 사이트에 16일 동안 올라있었으며 Firshet의 성적 취향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달 초 심리에서 Firshet의 변호사인 Lorna Skinner은 판사에게 Raphael과 Firshet는 2000년부터 사이가 틀어졌으며, Raphael은 그 때부터 앙심을 품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Firshet를 자극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8년 8월 1일자) □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기사가 지목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자 판결(2007가합1170)

사실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는 원고 유○○(이하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7. 7. 10.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7. 11. 「뉴스광장 1, 2부」 등을 통해 ○○지역의 홍삼원이 중국산 인삼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원」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 보내자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원」이 중국산 인삼액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로 오인하게 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 사실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가공·판매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1170 손해배상(기)

원 고 : 유 ○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 2008. 4. 25.

판 결 선 고 : 2008. 5. 23.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0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이○○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방송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에 대한 각 사실조사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 ○○읍 ○○리 ○○상가에서 「□□□□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인삼제품 즉석판매가 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홍삼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KBS 안동방송 저녁 7시 뉴스',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및 '뉴스광장 1, 2부'라는 프로그램을 각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취재과정

(1) 피고는 2007. 7.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포한 ○○지역의 중국산 홍미삼 부정유통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접하자 이를 취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2007.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루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 ○○읍 소재 홍삼가공업체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였다.

(2) 그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은 이 사건 홍삼원을 방문하여 위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 중인 홍삼액의 원료인 홍미삼의 원산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홍삼원에서는 위반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3) 한편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위 동행 취재 과정에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를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위 업체가 문을 열지 않아 취재하지 못하였고, 대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 사건 홍삼원에 대한 위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다.

(4) 취재 후 피고는 중국산 홍미삼의 부정유통문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스를 정리·편집하면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 대신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던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일부 구성하여 아래 다.항의 내용으로 각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내용

(1) 2007.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의 보도내용

피고는 2005. 7. 10. 19:20경 자신의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 시간에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촬영장면을 배경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내용으로 25초가량 보도하였다.

(2) 2007.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2007. 7. 11.자 '뉴스광장 1부 및 2부'의 각 보도내용

(가) 피고는 2005. 7. 10. 19:38경 자신의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시간과 2005. 7. 11. 06:40경 '뉴스광장 1부' 시간, 같은 날 07:17경 '뉴스광장 2부' 시간 등 총 3회 동안 별지 2 기재 내용으로 1분 13초가량 보도하였다.

(나) 위 각 보도의 도입부 무렵 별지 2 기재 앵커 멘트가 나오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중국산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또는 화면 하단에 '중국산 홍삼액 국산으로 둔갑시켜'라는 자막(뉴스광장 1부 및 2부)이 나왔다.

(다)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이 연속되면서 초반에는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내부가 배경화면으로 나오다가 위 취재기자 멘트 1 중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습니다' 부분부터 이 사건 홍삼원 내부 장면(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기재) 및 이 사건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는 홍삼액의 상품포장용 박스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장면(상품포장용 박스 외관에 기재된 문구가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박스 중앙에 크게 새겨진 '蔘'이라는 문자 및 도안 자체는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이 각 배경화면으로 나왔다.

(라) 이후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의 후반부인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중국산 인삼의 국산 둔갑 판매가...'부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 등이 들어가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출입구 주변의 도로에 놓여진 물건, 주변 상점의 구조물 등이 함께 나왔다. 다만, 위 출입구 유리에 부착된 상호와 전화번호 자체는 불투명 처리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에 가리는 등으로 인해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마)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출장소 김○○ 소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진 다음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2인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되었다.

2.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홍삼원이 위 기초사실 중 다.항 기재와 같이 배경화면으로 방영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속여 홍삼액을 가공하여 부정유통,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홍삼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이 사건 홍삼원의 상호 등을 직접 방영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방영된 부분(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 원고가

사용 중인 상품포장용 박스)도 화면 전체를 불투명하게 처리(핀-아웃, 일종의 모자이크 효과) 하였으며, 불투명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은 다른 홍삼원의 내부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등,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부분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가사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 직후인 2007. 7. 11. 'KBS 안동지역 저녁 9시뉴스'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추후보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홍삼원의 경우에도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써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상호나 전화번호,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배경 화면으로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된 점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를 보도하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이 일부 노출된 점, ② 이 사건 홍삼원 내부의 장면은 불투명 처리되지도 않은 점, ③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원고 이외의 업체는 위 박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을 클로즈업한 화면의 경우,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그 처리 정도가 미흡하여, 화면상으로도 위 박스 중앙의 '蔘'이라는 글자 자체와 글자의 형태, 위치 등 그 독자적인 디자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특히, 단골고객)이라면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홍삼원의 방영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홍삼원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원료로 홍삼액을 즉석 가공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를 단속한 사실을 주로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홍삼가공업체를 적발하였다'라는 내용의 취

제기자 멘트와 동시에 그 배경화면으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직원이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 포장용 박스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이 방송된 점, ② 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나간 점, ③ 이후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의 배경화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직원이 이 사건 홍삼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용된 점, ④ 마지막으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지역 인삼 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한다’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 배경화면으로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방송된 점, ⑤ 이 사건 각 보도 자체에서 이 사건 홍삼원 장면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 특히 이 사건 홍삼원의 단골고객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속여 홍삼액으로 가공하여 팔아 오다 적발된 홍삼가공업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홍삼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가공·판매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추후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허위 가공, 판매한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추후보도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추후보도를 하였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불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홍삼원의 영업규모,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 방송시간, 이 사건 각 보도 후 피고가 2007. 7. 11.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에서 이 사건 홍삼원과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전혀 무관함이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그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이은정
판사 이지민

〈별지 1〉 방송내용 녹취록 생략 - 편집자 주 □

판결 2

원고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는 방송을 통해
원고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자 판결(2007가합2388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신○○ 외 6인(이하 원고들)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 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지난 1997. 12. 20. 방영한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 신○○이 살인 범죄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피고 방송사가 신○○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여 공개 수배하는 왜곡된 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인 다른 원고들 까지 정신적 고통 받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신○○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로

지목하는 방송을 하여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버지인 원고 신□□, 계모인 원고 이○○,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무죄 사유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그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10년이 경과한 지금 다시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2006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23884 손해배상(기)

- 원 고 : 1. 신 ○ ○
2. 신 □ □
3. 이 ○ ○
4. 신 △ △
5. 신 X X
6. 신 ▷ ▷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김 수 응, 하 금 열

변 론 종 결 : 2008. 4. 17.

판 결 선 고 : 2008. 5. 15.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5,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신○○에게 50,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13,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

녁뉴스(20:00)가 끝난 직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상단화면에 '강도살인범 신○○에 대한 공개수배사건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글자는 통상 '추적, 사건과 사람들'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추적, 사건과 사람들'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적 사건과 사람들(85회)'이라는 방송을 통하여 공개수배된 자이다. 원고 신□□은 원고 신○○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은 원고 신○○의 계모(원고 신□□과 1971. 8. 28. 혼인하였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신○○의 형제자매들이다.

2)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피고는 각종 사건·사고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을 방송하고 있던 중,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용의자가 포착되었지만 검거되지 아니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용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경찰청의 수사결과 및 설명에 따라 1997. 12. 20.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97긴급

수배' 라는 주제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방송내용과 같이 1996. 6. 13. 소외 망 유○○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용의자로 원고 신○○을 지목하며 공개 수배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다. 원고 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

1) 원고 신○○의 도주 및 귀국

원고 신○○은 위 유○○의 납치용의자로 지목되어 1996. 6. 18.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위 살인사건 당일 피해자 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다음날 원고 신○○을 데리고 국민은행 및 제일은행에서 위 원고가 예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필름을 가지고 왔다. 그 후 원고 신○○은 같은 날 아침 무렵 경찰관과 같이 사우나를 하던 중 몰래 도망하였다. 원고 신○○은 같은 날 15:00경 후배인 조○○에게 자신 소유의 겔로퍼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위 승용차를 730만원에 매각한 다음 1996. 6.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원고 신○○은 자신이 위 유○○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의 범죄인 인도신청에 따라 2003. 9. 4.경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하였다.

2) 형사재판 결과

가) 원고 신○○은 2003. 9. 26. 위 유○○에 대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 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원고 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가

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녹화되었으며, 원고 신○○이 과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부근에 다녀 온 적이 있는 등의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 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고합 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57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96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신○○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로 지목(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 신○○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원고 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는 사체가 들어있던 그 가방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까지 한 이 끔찍한 사건' 이라고 표현하거나 원고 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신○○의 아버지인 원고 신□□과 계모인 원고 이○○,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

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라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 신○○을 단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을 뿐이어서 방송 내용이 진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우선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원고 신○○을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역시 원고 신○○이 위 살인사건을 실제로 범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다소 극화하여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방송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방송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방송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고로서는 그 방송에 앞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공개수배 방송을 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송의 내용, 방송사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영향력, 원고들의 나이 및 지위,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및 원고 신○○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 원고 신○○이 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도망하여 1996. 6. 21. 일본으로 출국한 후 자신이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2003. 9. 4.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신○○에 대하여 5,000,000원, 원고 신□□, 이○○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신○○을 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여 공개수배하는 왜곡된 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신○○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고 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원고 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가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녹화되었으며, 원고 신○○이 과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부근에 다녀 온 적이 있는 등의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일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 신○○은 위 살인사건 직후 피해자의 납치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없이 경찰관의 지배를 벗어나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자신이 위 살인사건

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방송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원고 신○○의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원고 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신○○에게 5,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방송일)인 1997.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종문
판사 권기백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방송내용 녹취록 생략 - 편집자 주 □

판결 3

보도 취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게재한 내용만이 아니라
보도의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2008가합1069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 농림수산식품부(이하 원고)가 피고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별지 1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08. 4. 29.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내보낸 내용에 대해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으며, 방송은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특정위험물질의 분류에 따르면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의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

다는 취지로 방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23)을 하여 중재부는 별지 4의 결정문을 보도하라고 조정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0694 정정, 반론

원 고 : 농림수산식품부

과천시 중앙동

대표자 장관 정 운 천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경영센터

대표이사 엄 기 영

변 론 종 결 : 2008. 7. 25.

판 결 선 고 : 2008. 7. 31.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

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운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라고 일컫는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빼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원고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피고는 별지

4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이 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MBC-TV "PD 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한다.'라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일반론

가. 관계 법률(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

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일컫는다)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있다.

2)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제①주장(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의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은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저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사실,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헨슨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송○○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 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5,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일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라고 묻자, 오○○ 프로듀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4월 29일 생방송 중에 저의 말실수 즉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정하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에 나타난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광우병도 분명히 그 원인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제②주장(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사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루이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 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계(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②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현재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8의 1, 9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오동운 프로듀서가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6. 17.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OO 프로듀서가 “지난 12일 CDC, 즉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CDC에 의하면 이 의심사례가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지만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13). 그리고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2008. 6. 12.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위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방송을 통하여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③주장(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

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③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된 사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

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불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 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전인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더라도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제④주장(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 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 끝 부분에서 송○○ 프로듀서가 “지난 4월 29일 PD 수첩은 한국인의 특정유전자형인 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

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거나 그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더라도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단 1회, 그것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제⑤주장(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가지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 프로듀서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⑤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⑤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 즉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 중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제⑥주장(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⑥주장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 프로듀서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⑥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등뼈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점(갑1, 2, 을4)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위 보도 내용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⑥보도 중 쟁점 부분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결국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역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 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의 제⑦주장(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⑦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 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김○○ PD! 쪽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김○○ 프로듀서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

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⑦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언론사인 피고는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판단이나 평가도 보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기회에 그

에 관한 반론이나 비판적인 견해 등을 방송한다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간접강제

원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정정하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종문
판사 권기백

〈별 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8. 4. 29. 방송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

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 지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 지3〉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 지4〉 언론중재위원회결정문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판결

피고의 기자회견 보도 내용과 관련된 libel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사례

텍사스주 제1항소법원(Texas Court of Appeals First District)
 재 판 부 : 재판장 RADACK, 배석판사 KEYES, HIGLEY.
 사 건 번 호 : 01-08-00009-CV.
 원고(피항소인) : David TANG
 피고(항소인) : Jianguang WANG 및 Yellow Emperor Communications, Inc.
 D/B/A Houston Chinese Press
 1 심 법 원 :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Texas District Court, Harris County)
 2008. 6. 5.

미디어 내용의 규율

에 대한 개연성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명예훼손-책임의 기준-현실적 악의

[2] 명예훼손-명예훼손적 내용-부정확한 인용

이해관계 있는 증인들 명의의 선서 진술서들은 “명료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이고, 그 밖에 신뢰할 만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없으며, 여기에 기꺼이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탄핵 가능한 것” 이라면,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는 문제된 진술의 진실 또는 거짓에 대한 그의 주관적 정신 상태와 신념에 관하여 선서 진술서에 의하여 증언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서 진술서는 문제된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의 신념

피고 중국어 신문의 편집장은 CCC의 기자회견에서 유발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인하였다. 그 기자회견은 CCC의 과다 회계 및 재정문제에 관한 논쟁을 전달하는 자리였는데, 원고 CCC의 부의장은 폐회사를 하면서 “일본 악마들”의 침략을 언급하였다.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할 입증책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전환된다. 첫째, 사실심리생략판결의 증거로서 제출된 피고의 선서 진술서는 피고가 공표 당시 진술(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고 진술들의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

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줌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진술들에 대하여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서 진술서는 피고가 자신의 사고 과정과 함께 일본 침략 언급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 언급이 이루어진 맥락에서 자신으로서는 언론을 포함한 청중들이 원고가 언급한 “일본 침략자”로 보였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고의 진술은 피고 신문이 보도한 방식처럼 원고의 발언들을 이해한 다른 청중들의 선서 진술서로 보강되었기 때문이다.

[3] 명예훼손-명예훼손적 내용-부정확한 인용 명예훼손-책임의 기준-현실적 악의

사실심리생략판결에서는 원고 CCC의 부의장이 기자 회견의 폐회사에서 “일본 악마들”에 의한 침략 발언을 하게 된 의미를 중국계 지역사회가 단결하여 CCC의 재정적 난관들을 극복할 것을 촉구함에 있고 중국계 지역사회와 언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실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중국어 신문과 피고 편집장이 원고의 폐회사 전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첫째로 생략으로부터 회복을 구하는 공인은 공표자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소재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가 기자 회견에서 원고의 발언들을 직접 들었고, 기사가 공표되기 전에 원고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현실적 악의에 관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진술의 후반부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강력하게 의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수정헌법 제1조는 기사 내용에 관한 편집상의 선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원고는 기자 회견의 흐름상 및 원고에 의한 비유발언의 자극적 속성상 원고 발언들에 대한 피고 해석이 그럴듯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판단상 과오들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4] 명예훼손-책임의 기준-현실적 악의

전문가 선서 진술서에서 전문가는 원고 진술의 절반을 생략하여 인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고 원고 진술의 일부만 공표한 유일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원고가 실제 말한 것과 달리 잘못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데, 전문가 선서 진술서가 유력한 증거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전문가 선서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첫째, 전문가 의견은 객관성의 기준에 대한 무모한 경시와 관련되어 있을 뿐 진실에 대한 무모한 경시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적 악의는 오로지 피고의 정신 상태만을 조사할 뿐인데,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사 LAURA CARTER HIGLEY

David Tang의 libel(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문서

등 영구적 형식에 의한 명예훼손, 주로 서면이나 인쇄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림) 소송에서 1심 사실심 법원은 Houston Chinese Press가 제기한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간적 항소(interlocutory appeal) 사건에서 우리는 1심 사실심 법원의 기각결정이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한적 공인(a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¹⁾인 Tang이 그의 libel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실적 악의 요소에 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an issue of material fact)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Houston Chinese Press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파기하고 판결한다.

기초사실

Chinese Civic Center(이하 'CCC' 라고 한다)는 휴스턴 지역 중국계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활동들을 제공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CCC는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CCC는 연극 '찾집'을 공연하기 위하여 휴스턴 지역에 '베이징 사람들의 연극 극장'을 유치하는 것을 도왔다. 휴스턴 지역 공연 후에 중국계 지역사회에서 그 공연과 관련된 CCC의 재정적 회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CCC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도 생겨났다.

2006. 4. 22. CCC는 새로운 임직원들을 소개하고 '찾집' 공연 문제를 포함해서 CCC 회계와 재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

회견의 초기에 David Tang은 CCC의 새로운 부의장으로 소개되었다. 그 모임에는 Houston Chinese Press의 편집장 Jianguang Wang을 포함해서 중국어 언론과 중국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 도중 위원들은 CCC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청중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몇몇의 청중들은 위원회의 관리방식을 비판하였고, 때때로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경직되었다.

Tang은 기자회견에서 식순의 주제자로 활동하였지만, 어떠한 청중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의 말미에 Tang은 아래와 같은 폐회사를 하였다.

최근 나는 한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작년에는 우리는 대일항전 승리 60주년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한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오늘 그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일본 악마들의 침략에 맞서, 그들은 이러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영토의 1인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오늘 우리 모임의 결론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사회가 활동하는 한, 우리가 지역의 사회의 마음에 따뜻한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한, 우리, CCC는 확실히, 확실히 지난 10년간 찬란한 활동을 벌여왔고, 향후 10년 이상 찬란한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4. 30. Houston Chinese Press는 "귀신(Guizi, 번역하면 "일본 침략자들")이 온다: CCC의 위원회는 일본에 항쟁하기로 맹세하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공표하였다. 그 기사는 청중이 제기한

1) (번역자 주) 제한적 공인이란 특정한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참여시키거나 참여가 되고 그리하여 제한적 범위의 쟁점들에 한하여 공인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위원회 답변의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며, CCC의 재정과 관련된 회계 불일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그 기사는 또한 “일본 악마들”에 의한 침략을 언급한 Tang의 폐회사 일부를 인용하였지만, Tang의 폐회사 중 위에서 빗금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Tang의 폐회사에 관하여, 기사의 일부를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 침략자들”은 확실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전쟁에서 적들, 즉 8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약탈, 대학살, 강간, 기타 모든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 귀신을 언급한다. David Tang은 비유적 방식으로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그런 다음 그는 “전선을 방어함에 있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CCC 위원회의 단결력을 향상시킬 것 등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추려낸다면, David는 지역사회를 일본에 대한 전쟁터로, CCC를 일본 침략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선으로 삼고 있다. 그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임 중 및 모임 후 당혹감을 느꼈다. David Tang이 언급한 일본 침략자들은 언론매체인가, CCC를 지지하고 관심을 갖고 CCC에 기부하는 참석자들인가? CCC의 몇몇 임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중국인들이 혐오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는 “일본 침략자들”로 사실상 되었다면, CCC를 제외한 휴스턴 중국계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본인이고 따라서 사실상 CCC는 반일 기관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기금은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얻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을 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CCC가 생긴 이래로 CCC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다가, 지금 지역 사회가 예의주시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유는 “일본 침략자들”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CCC는 휴스턴 지역 해외 중국인들의 안식처(home)이다. 자신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중국인들의 전통이다. 우리는 CCC가 잘 관리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불법적인 행태의 관리행위를 규탄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일본 침략자들”로 고려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를 사랑한다.

CCC에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꿀치덩이들”로 간주하지 말라. CCC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Lang Yanshan에서의 영웅들로 생각한 일본 침략자들로 간주하지 말라. CCC에서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CCC의 전체적인 이익 보다 위에 두지 말라. 그와 달리 “일본 침략자들”이 온다면, 당신들이 자신들의 전선을 지킬 수 있는가? 기억해라. 전선을 지키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사랑하여 “일본 침략자들”로 매도된 전체 지역사회일 것이다.

11개월 후 Tang은 Wang과 Houston Chinese Pres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4. 30.자 기사에 기초한 libel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Tang의 주장에 의하면, Tang 자신의 기자회견 폐회사 전문을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Houston Chinese Press는 Tang이 중국계 지역사회와 언론매체를 “일본 침략자들”로 언급하였다는 식으로 그의 말의 의미를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하였다. Tang은 그의 말 전문을 들었을 때 그의 폐회사는 오로지 아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CCC는 향후 10년간 휴스턴 지역 해외 중국계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나갈 것이다.” Tang은 그의 폐회사를 통하여 그가 휴스턴 지역 중국계 지역 사회를 “일본 침략자들” 또는 “귀신”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부인하였다.

Houston Chinese Press는 Tang의 libel 소송에 대

하여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²⁾ 신청을 하였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의 근거들 중 하나로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진술들을 공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Tang은 일본 침략 언급 외에도 4, 30자 기사와 다른 내용들에 기초한 libel 청구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의 청원서를 수정하였다. Houston Chinese Press는 Tang의 libel 관련 새로운 주장들이 시간적 제한에 걸린다는 점을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에 추가하였다. 심문을 거쳐, 1심 사실심법원은 Tang이 청원서를 수정하여 포함시킨 추가적인 libel 청구에 대하여 Houston Chinese Press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하였다. 1심 사실심 법원은 Wang이 CCC의 위원회에 “일본 침략자들” 또는 “귀신”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휴스턴 지역 중국계 지역 사회에 각성을 일으킨 기사 내용과 관련된 libel 청구에 대하여 Houston Chinese Press가 제기한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다.

Houston Chinese Press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한 1심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이 사건 중간적 항소(interlocutory appeal)³⁾를 제기하였다. Tex. Civ. Prac. & Rem.Code Ann. § 51.014(a)(6) 참조.

전통적인 사실심리생략판결의 기준 및 청구요건 (Elements of Claim)

우리는 새로운 심리 원칙(de novo standard, “de novo”는 new trial이라는 의미로서, 재심리, 새로운 소송절차로도 불림)에 따라 사실심리생략판결의 법리를 검토한다. Provident Life & Accident Ins. Co. v. Knott, 128 S.W.3d 211, 215 (Tex.2003). 검토를 함에 있어 우리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증거를 진실하다고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합리적 추론을 하며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의문들을 해결한다. Diversicare Gen. Partner, Inc. v. Rubio, 185 S.W.3d 842, 846 (Tex.2005). 법률문제로서 원고의 청구를 유지시키는 필수적 요건 가운데 적어도 하나라도 깨뜨린다면, 피고는 전통적 사실심리생략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다. Science Spectrum, Inc. v. Martinez, 941 S.W.2d 910, 911 (Tex.1997) 참조.

제한적 공인인 Tang은 명예훼손 소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공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2, 94 S.Ct. 2997, 3008, 41 L.Ed.2d 789 (1974) WFAA-TV, Inc. v. McLemore, 978 S.W.2d 568, 571 (Tex.1998) 참조. Houston Chinese Press는

2) (번역자 주) summary judgment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완전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판, 약식판결, 약식재판, 즉결판결, 중간판결로 불리는데,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보통 Fed. R. Civ. P.라 인용되나, 여기서는 평의상 FRCP라 칭한다)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trial)은 사실이 다투어질 때에 필요한데, 사실의 다툼이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통한 사실심리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FRCP §56). 이 신청은 피고의 답변이 제기된 이후 어느 때나 제기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통상 실질적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행하여진 후에 제기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심문 없이 이 신청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부 인용시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며, 일부 인용시 분쟁 중인 쟁점만 본격적인 재판절차로 나아가고, 기각시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절차로 나아간다.

3) (번역자 주) 중국판결의 원칙(final judgment rule, 중국성의 원칙으로도 불림) : 1심 재판 과정에서 등록된 명령, 이른바 중간적 명령(interlocutory orders)은 중국 판결에 대한 항소와 결부하여 심사될 수 있고, 그에 앞서 중간적 항소(interlocutory appeal)라는 이름으로 심사될 수 없다. 다만, 중간적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 의한 심사(appellate review)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적 항소가 허용된다.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다. *Hearst Corp. v. Skeen*, 159 S.W.3d 633, 637 (Tex.2005) *Huckabee v. Time Warner Entm't Co. L.P.*, 19 S.W.3d 413, 420 (Tex.2000) 참조. *Houston Chinese Press*가 이러한 입증을 충족시킨다면, Tang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적 차원의 현실적 악의

A. 적용 원칙

공인들이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 기준은 공적 분쟁(public issues)에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보호하는 반면, “계산된 거짓말(calculated falsehoods)”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Turner v. KTRK Television, Inc.*, 38 S.W.3d 103, 120 (Tex.2000) 참조. 명예훼손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는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진술을 하였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New Times, Inc. v. Isaacks*, 146 S.W.3d 144, 162 (Tex.2004) *Huckabee*, 19 S.W.3d at 420. 무모한 무시(Reckless disregard)는 피고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는 주관적 기준이다. *Isaacks*, 146 S.W.3d at 162; *Bentley v. Bunton*, 94 S.W.3d 561, 591 (Tex.2002). 특히,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공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고려하였거나, 공표된 정보가 허위일 개연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saacks*, 146 S.W.3d at 162 (인용 *Bentley*, 94 S.W.3d at 591). 공인은 피고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 있다. *Bentley*, 94 S.W.3d at 591.

B.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는 Wang의 증거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정하기 위하여, *Houston Chinese Press*는 편집장인 피고 *Jianguang Wang*의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였다. 이해관계 있는 증인들 명의의 선서 진술서들도 “명료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이고, 그밖에 신뢰할 만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없으며, 여기에 기꺼이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탄핵 가능한 것”이라면,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부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Tex.R. Civ. P. 166a(c) Huckabee*, 19 S.W.3d at 424 참조.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는 문제된 진술의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한 그의 주관적 정신 상태와 신념에 관하여 선서 진술서에 의하여 증언하는 것이 허용된다. *Casso v. Brand*, 776 S.W.2d 551, 559 (Tex.1989) 참조. 그러나,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서 진술서는 문제된 진술의 진실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의 신념에 대한 개연성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야 한다. *Huckabee*, 19 S.W.3d at 424. Wang의 선서 진술서는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먼저, Wang의 선서 진술서는 명예훼손적 진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Wang은 공표 당시 “허위”라고 볼 만한 기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어떠한 의문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선서하고 진술하였다. 특히, Wang은 아래의 부분을 선서하고 진술하였다.

나는 Tang이 이러한 대결적 모임 말미에 일본의 중국 침략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놀랐으며 충격을 받았다. 나는 Tang의 발언이 찻집 공연과 CCC의 재정 및 회계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중들과 언론들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내 견해로는, Tang이 그의 발언에서 언급했던 유일한 것은 CCC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그들 모두는 거의 중국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

나는 모임 말미의 맥락에서 Tang의 말들을 이해했다. 나는 “일본 침략자들”, “우리 지위의 방어”에 관한 Tang의 말들이 CCC의 조치들과 CCC 지위들의 방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나는 Tang이 CCC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중국의 적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아마도 Tang의 진술들이 과장이었겠지만, 나는 그의 진술이 CCC의 조치들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선서 진술서는 Wang이 문제된 명예훼손적 진술들이 진실이라는 그의 믿음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Wang은 그가 CCC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Tang이 일본의 중국 침략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Wang은 Tang의 일본 침략 발언에 관하여 중국계 지역사회에의 역사적 의미로 설명하였다. Wang은 Houston Chinese Press의 기사내용들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적 사고과정을 묘사하였다. 특히, 그는 Tang의 발언이 청중(거의 모두가 중국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었다)과 CCC위원회(그 중 한명이 Tang이다) 사이의 “대결적 모임” 끝부분에 나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Wang의 관점에서 참석한 언론을 포함해서 청중들은 Tang이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한 일본 적대자로 보였다.

또한 Wang은 청중의 다른 구성원들이 Tang의 발언들에 충격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선서하고 진술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일본 침략 발언을 듣자마자 “My God!”라고 소리치는 한 여자를 포

함하고 있다. Wang은 선서 진술서에서 이러한 반응을 볼 때 다른 청중들이 그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Tang의 발언을 해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ang은 그의 선서 진술을 다른 5명의 청중들이 Tang의 발언을 듣고 작성한 선서 진술서로 보강하였다. 이 5명 각자는 Houston Chinese Press가 보도한 방식대로 Tang의 발언을 해석하였다. 특히 4명의 선서 진술인들이 이해한 바로는 Tang이 CCC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청중들의 문제제기를 일본의 중국 침략과 동일시하고, 중국어 언론과 중국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인 청중들과 “일본 침략자들”을 비교하였으며, CCC위원회를 방어자인 중국 군대에 비유하였다. 마지막 1명의 선서 진술인은 Tang이 “청중과 일본 침략자들을 혼동하였다”고 믿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Wang은 기자 회견을 다룬 다른 중국어 신문들의 2개 기사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선서 진술을 보강하였다. 그 기사 중 하나는 Chinese Times에 실렸는데, 기자 회견 동안 문제를 제기한 측과 CCC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긴장감을 묘사하였다. 일본 침략 동안 중국 군인들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Tang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기사는 Tang이 “아마도 일을 잘 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언론은 그의 발언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 기사는 ‘우리는 모두 일본 악마들과 앞장이 군대들로 매도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어 신문 World Journal에 실린 다른 기사는 기자 회견의 논쟁적 특징을 묘사한다.

제출된 사실심리생략관결의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Wang이 현실적 악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결

론을 내린다. Wang의 선서 진술서는 “명료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이고, 그 밖에 신뢰할 만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없으며, 여기에 기꺼이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탄핵 가능한 것”이다. 그의 선서 진술서에서, Wang은 현실적 악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의 믿음의 기초를 묘사한다. 따라서,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할 입증책임이 Tang에게 전환된다. *Freedom Newspapers of Tex. v. Cantu*, 168 S.W.3d 847, 853 (Tex.2005) (부정확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기사 내용들의 정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발행인과 편집장 명의의 선서 진술서는 신문이 악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증거이고, 사실심리생략판결을 기각시킬 반대 증거를 제출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Hearst*, 159 S.W.3d at 637 (광범위한 조사에 기초하여 볼 때 기사가 진실하고 정확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는 필자의 선서 진술서는 현실적 악의를 부정하게 하고 사실적 쟁점을 제기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판단하였다) *Isaacks*, 146 S.W.3d at 164-65(편집장, 편집 간사, 필자의 선서 진술서가 법률문제로서 현실적 악의 요건을 결여토록 한다는 이유로 피고 언론사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였다) 참조.

C. 현실적 악의에 관한 Tang의 증거

1. Tang의 진술 일부분 “생략” 문제

위에서 언급하였고 사실심리생략판결 증거에서 검

토하였듯이, Tang은 기자회견의 말미에서 아래의 진술을 하였다.

(위 빗금친 표시 부분)⁴⁾

증거는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 진술의 일부분만 공표하였음을 보여준다. 위 빗금친 표시 부분 중 밑줄친 부분을 공표하지 않았다.

선서 진술서에서, Tang은 그의 진술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오늘날에도 슬로건(slogan)은 보통 사용되는 표어이다. 슬로건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들이 충분히 명확히 한 대로, 내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들은 긍정적인 논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함이었다. : CCC와 그의 마음씨 따뜻한 지역사회 친구들이 함께 일하는 한, CCC는 장래에 중국계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고,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들었다. 나는 어떠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사실심리생략판결 절차에서, 우리는 CCC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계 지역사회의 단결을 촉구할 의도로 진술하였다는 Tang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Cantu*, 168 S.W.3d at 85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Tang은 여전히 *Houston Chinese Press*가 공표 당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에 의하여 저질러진 그의 진술 “변경(alteration)”

4) (번역자 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자체가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가 위에서 본 밑줄친 말을 생략함으로써 Tang의 진술을 “변경시켰고”, “왜곡시켰으며”, “전적으로” 의미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가 잘못된 인상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그의 발언 중 마지막 부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고 주장한다. Tang은 자신이 중국계 지역사회를 “귀신” 또는 “일본 악마들”이라고 불렀다는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Houston Chinese Press가 “변경된” 기능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한다.

Tang은 인용문의 일부만 알면서도 공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증거라고 추론한다. 특히, Tang은 “피고가 알면서도 변경된 또는 불완전한 인용문구를 공표하고 그러한 변경 또는 불완전한 문구가 실제의 인용문과 실질적으로 달라졌을 때” 현실적 악의는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미에 Tang은 Wang이 전체 진술 내용을 알았지만 일부만 공표하기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증거를 제시한다. Tang은 Wang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에서 Tang의 발언을 들었고 또한 기사가 공표되기 전에 그 진술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검토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인용한다.

그의 사실심리생략판결의 답변으로, Tang은 주장한다.

피고가 기자회견의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고, Tang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진술의 절반정도를 생략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의미 변경을 알면서도 또는 의미 변경 여부에 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진술을 공표하였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Tang의 입장과 달리, 이것만으로는 현실적 악의에 관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생략으로 회복을 구하는 공인은 공표자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소재를 선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Huckabee, 19 S.W.3d at 426. 현실적 악의의 증거인 생략에 대하여, 원고는 생략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공표자가 알았거나 강하게 의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Turner, 38 S.W.3d at 121. 생략이 매우 눈에 띄고 결과적으로 왜곡의 정도가 커야 그 자체로 현실적 악의의 증거를 구성한다. Huckabee, 19 S.W.3d at 426. “그러한 사건에서, 생략이 이야기의 성질을 변화시켜 피고로서는 생략이 잘못된 인상을 전달해줄 것이라고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Houston Chinese Press 기사의 전체적인 목적은 기자 회견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CCC위원회는 CCC의 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답변하였고,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기사는 기자 회견의 논쟁점과 위원회에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향한 감지된 적개심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Houston Chinese Press는 일본의 중국침략 비유에 관한 Tang의 말을 인용하였다.

비록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세밀한 발언 전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Tang은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발언 중 마지막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강하게 의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지적하였듯이, Wang은 그의 선서 진술서를 통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킨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Tang이 CCC위원회에 질문을 던진 중국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일본 침략자들”로

언급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진술하였다. Wang으로서는 이것이 “주목할 만한” 또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발언이었다. 결론적으로, Tang의 발언 중 이 부분이 Houston Chinese Press가 공표하고자 선택하였던 부분이다. Tang은 그의 진술 중 생략된 부분이 “특히 그 기사가 Tang에게 덮어씌운 명예훼손적 혐의를 반박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Tang의 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단지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Tang의 진술들을 허위로 묘사하기 위하여 그의 발언들을 생략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미 수정헌법 제1조는 기사에서 어떠한 소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Houston Chinese Press의 편집상의 선택을 보호한다. Tang은 그의 발언들에 대한 해석을 담은 Wang의 선서 진술내용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Tang은 기자 회견의 흐름상 및 Tang에 의한 비유 발언의 자극적 속성상 Wang의 해석이 그럴듯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Cantu, 168 S.W.3d at 855 (애매한 사실들에 대한 이해할만한 오해는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Tang의 발언들에 대한 Wang의 이해에 비추어 볼 때,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폐회사 전부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해주지 않는다. Huckabee, 19 S.W.3d at 425 (공표가 특정한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는 강력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해도 현실적 악의의 증거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참조. 기껏해야 Houston Chinese Press가 Tang의 발언 도입부만을 포함시킨 결정은 Tang의 발언들에 대한 Wang의 해석과정에서 빚어진 판단상 실수에 불과하였다. 판단상의

실수들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Time Inc. v. Pape, 401 U.S. 279, 290, 91 S.Ct. 633, 639, 28 L.Ed.2d 45 (1971) (“추정된(alleged)”라는 단어를 생략한 피고의 해석이 현실적 악의의 증거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비록 그러한 해석이 오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Huckabee, 19 S.W.3d at 426 (비록 생략된 사실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독자라면 보도된 것과는 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세한 것들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피고 언론의 잘못을 판단상 과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 악의의 증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참조.

우리는 Tang이 그의 폐회사 전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한 Houston Chinese Press의 결정이 현실적 악의에 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 Testimony)

현실적 악의에 관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제기하기 위하여, Tang은 휴스턴 지역에서 가장 큰 Chinese press의 편집자 John Robbins 명의의 “전문가 선서 진술서(expert affidavit)”를 제출하였다. 그 편집자는 기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의 의견을 형성하기에 앞서, Robbins는 기자 회견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Houston Chinese Press의 해당 기사를 읽었다. 선서 진술서에서, Robbins는 “단지 절반의 인용을 전체의 인용으로 공표하고 언급한 다음 절반의 인용을 토대로 사실로 쓰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Robbins는 Tang의 진술 중 발췌된 부분만 공표한 유일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Tang이 말한 것을 잘못 전달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Tang의 주장과 달리, Robbins의 진술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전문가 증언은 ‘그 의견이 진실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객관성의 기준에 대한 무분별한 경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Gonzales v. Hearst Corp., 930 S.W.2d 275, 283 (Tex.App.-Houston [14th Dist.] 1996, 불게재) (Harris v. Quadracci, 856 F.Supp. 513, 519 (E.D.Wis.1994)를 인용). 게다가, 현실적 악의는 단지 피고의 정신 상태만을 조사하는데, Robbins는 그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가적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다. Cantu, 168 S.W.3d at 858-59 참조. Robbins의 의견은 피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주는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읽고 기자회견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것에 토대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 선서 진술서”가 유력한 증거라고 가정하더라도, Houston Chinese Press가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거나, 진위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경시하면서 명예훼손적 진술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인데, Robbins의 의견은 이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사실심리생략판결의 기록은 법률문제로서 Houston Chinese Press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Tang은 현실적 악의 요건에 관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적 쟁점을 보여줄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Houston Chinese Press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Houston Chinese Press의 첫번째 쟁점을 받아들여, 1심 사실심 법원이 Houston Chinese Press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기각한 한도에서 1심 사실심 법원의 명령을 파기하고 Tang이 패소한 것으로 판결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6, No.25, PP.1769~1800

번 역 : 흥 기 만 (춘천지방법원 판사) □

독일 판결

중요하지 않은 사실주장의 인격권 침해 여부

해당조문 : 기본법 제1조, 제2조; 민법 제823조, 제1004조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의 제1소위원회) 2007년 10월 23일자 결정 - 1 BvR 150/06

판결요지

1. 어떠한 주장이 당사자의 인간상에 중대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허위사실에 불과한 경우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방어적 청구권의 허용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2. 어느 출판매체가 특정 문제에 대해 누군가를

언급한 경우 그 기사내용에는 처음부터 인격권과 관련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인간상이 중대한 형태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는지의 판단여부는 출판사의 특성과 평판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공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평가와 같은 개별 사례의 상황의존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실관계

소송 청구인은 그의 인격권이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작위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이의 무효화를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자본투자자들의 집단에서 중요한 위임을 받고 있다. 2003년 1월에 청구인은 당시 연방정부의 투자자보호프로그램에 관해 데페아 통신(dpa : Deutschen Presseagentur)과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한 대담내용은 데페아 신문보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슈테른(Stern) 잡지에서 이를 인용하게 되었다. 소송을 당하게 된 피고는 자본투자자들을 주요 독자로 하는 신문인 'Effecten Spiegel' (ES)의 발행인이었다. 피고는 3월 20일에 발행된 신문에 소송 청구인인 변호사 "R"을 제하로 하여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러 번 ES는 무의미한 소송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ES는 수차례에 걸쳐 투자자에게 돈 욕심에 눈이 어두운 변호사들이 의미 없는 손해배상소송에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경고하였다. 즉, 일반인들은 주식환차손실에 그들의 귀중한 돈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무의미하게 던지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따라 몇몇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EM.TV 사건, ComROAD 사건, Informatec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한 주요 인사 중의 하나이며, EM.TV 사건에서 500명의 주주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R은 최근에 슈테른(stern) 잡지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속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무효선고가 내려지는 것일까? 변호사들의 포커늘 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 경우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데페아 통신보도 내용으로부터 인용한 것으로서 소송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간주하여 인용된 것이다.

청구인은 그가 데페아 통신이 아닌 슈테른 잡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 기사내용이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먼저 뮌헨(München) 주지방법원 제1부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성공한 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본 사건에 대해 2004년 7월 13일자 판결로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에서 2005년 11월 15일자 판결로 이를 확정하였다. 항소심과 상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원고)이 슈테른 잡지에서 언급했다고 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

니다. 즉 허위사실이 매체를 통해서 일반 공중에게 전파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허위보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언급으로 스스로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와 이것이 침해되었다고 정의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권 침해의 여부에 따라서 부작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피고가 쓴 기사에서 드러난 적절치 않은 표현은 소송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해 모욕하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소송 청구인이 자신의 인격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처분권은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공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의 인격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소송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에서가 아닌 슈테른 잡지에서 언급했다는 허위 사실로 ES의 독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청구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은 법원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 측 입장에서는 소송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과 한 인터뷰의 내용을 스스로 공중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잘못된 표현을 어떻게 보아서든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데페아 통신보도와 인용문의 관계를 빠뜨리고 ES의 보도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소송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그의 인격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S에서 청구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는 허용된 그리고 공중에게 본질적으로 언급했던 사안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러

한 사실 때문에 그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본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비본질적인 것도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닌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3자나 공중에게 묘사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타인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성과는 무관하게 약간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어떠한 출판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중에게 드러나는 본인의 인격상 형성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피고가 가지는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가 잘못된 사실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의사의 자유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는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에서 인터뷰 한 보도로부터 인용을 통하여 전혀 새롭게 창출해냈기 때문에 그의 인격권 침해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판결이유

본 사건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소송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견해는 전혀 예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의 성공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1. 소송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

다는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문제가 된 기사내용이 청구인의 인격권을 중대한 정도로 침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견이 없다.

a)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함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은 자기 자신의 표현방법에 대한 처분권과 함께(BVerfGE 54 S. 148 [153 ff.] = AffP 1980 S. 149 ff.; BVerfGE 99 S. 185 [193 f.] = AffP 1999 S. 57 ff.; BVerfGE 114 S. 339 [346 ff.] = AffP2005 S. 544 ff. 참조), 어느 정도까지 타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묘사해도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BVerfGE 35 S. 202 [220] = AffP 1973 S. 423 ff.). 이 경우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가 된다. 그러한 면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보유자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BVerfGE 54 S. 148 [155 f.] = AffP 1980 S. 149 ff.; BVerfGE 82 S. 236 [269] 참조).

인격권의 주체는 특히 그 스스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는 보여지고 싶은 데로 다른 사람이 표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BVerfGE 82 S. 236 [269]; BVerfGE 97 S. 125 [149] = AffP 1993 S. 733 ff.; BVerfGE 97 S. 391 [403] = AffP 1998 S. 386 ff. 참조). 하지만 인격권은 그것이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다(BVerfGE 97 S. 391 [403] = AffP 1998 S. 386 ff.; BVerfGE 99 S. 185 [194] = AffP 1999 S. 57 ff.; BVerfGE 114 S. 339 [346] = AffP 2005 S. 544 ff. 참조). 이에 대해 일반적 인격권은 관련자가 당사자의 인격상의 형성에 대해 중대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의 인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b) 무엇이 사회적 가치판단의 본질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의 권한이라는 원칙으로부터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사례는 소송 청구인의 견해와 다른 예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원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소송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상황에 따라 소송 청구인의 인격상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대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단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 청구인이 허위주장으로 인해 공공에게 그의 인격상이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 있는지 충분할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인격권 침해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문제가 된 대담의 내용이 왜 문제가 될 정도로 중대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헌법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기본권상의 기준이 됨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사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BVerfGE 101 S. 361 [388] = AffP 2000 S. 76 ff. 참조). 그러한 인터뷰 대담내용이 인격권과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한계를 위반했다고 독자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가 된다.

c) 어떠한 대답의 내용이 인격권 침해여부와 필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단지 개별 사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상응하는 사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은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헌법적 관점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지배하고 있는 소송원칙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사실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 스스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온 사건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인격상에 대한 대답내용의 의미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당사자의 소송제기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에 그의 인격상이 모욕적으로 언급됨으로써 공중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d) 이에 대해 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헌법적인 고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소송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슈테른” 잡지에서 말한 인터뷰 대답내용의 인격권 관련성을 명백하게 평가하지도 않았어야 했고, 헌법적 관점에서 중대성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가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야 했다.

동시에 어떠한 보도매체에서 누군가에 대해 특정 문제를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에 처음부터 인격권과 관련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주장이 공중에게 특정인의 인격상을 부정적으로 침해하는지의 판단기준은 특히

개별 사례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출판매체의 특성이나 평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가 공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가치평가에 달려있기도 하다.

개별 사례에서 이러한 경계위반을 확정할 수 있는 중대성의 경계와 어느 정도에서 당사자 소송제기가 충분한지는 모든 사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문법원이 평가하는 것이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BVerfGE 94 S. 1; [9 f.]; BVerfGE 101 S. 361 [388] = AfP 2000 S. 76 ff. 참조).

법원은 어떠한 것이 추인될 수 있는지와 소송 청구인이 문제를 삼지 않게 될 것인지 고소의 대상이 된 대답내용에 대해 소송 청구인이 “슈테른”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슈테른”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을 추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만을 가지고 법원은 인격권이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 청구인의 대답내용으로부터 그 근거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련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왔다. “슈테른” 잡지가 가벼운 대중잡지에 불과하다는 소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한 점에서 판단에 필요하고 충분한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미 가벼운 대중잡지(Boulevardblatts)라는 개념자체가 생각건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다. “슈테른” 잡지가 특히 다방면에 걸쳐 품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슈테른”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함으로써 독자들이 소송 청구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이유서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은 여기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러 소송 청구인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개별적 사례조사를 위해 극단적인 사례의 형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체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부터는 관련 상황이 소송청구인의 인격상에 대해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추론에 반대되는 간접증거가 이미 드러난다. 왜냐하면 소송청구인은 데페아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스스로 그가 언급한 내용이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미 그의 이름이 “슈테른” 잡지에서 언급이 되고 그의 주장이 실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스스로 한정하고 있는 인격상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슈테른”이라는 잡지에서 주장을 펼쳤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실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e) 이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기본권 위반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관련 당사자간의 이익형량을 할 필요는 없다.

2. 데페아 통신과의 대담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옳지 못하게 잘못 인용될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a) 일반적 인격권은 대화내용이 옳지 못하게 잘못 인용된 경우에 침해받을 수 있다(BVerfGE 54 S. 208 [220] = AfP 1980 S. 151 ff.; BVerfGE 97 S. 125 [149] = AfP 1993 S. 733 ff. 참조). 그러나 대화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3자가 해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된 경우에는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도록 하는 권리까지 부여하지 않는다(BVerfGE 82 S. 236

[269] 참조). 당사자는 그가 말한 내용이 올바르게 표현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방어적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b) 피고는 그가 본래의 대화내용이 아니라 소송 청구인과 다른 가치를 담고 있는 적절히 요약되어 있는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고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되고 있다.

소송 청구인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떠한 투자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실질적인 사안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법적분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원래 이러한 표현은 소송 청구인이 데페아 통신과 대담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투자자를 위한 가능한 법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소송 청구인이 한 이러한 표현을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소송이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소송제기는 본질적으로 돈에 굶주린 변호사들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투자자보호소송이 현재의 법적 상황에 따를 경우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은 소송청구인이 데페아 통신과의 대담 내용에 해당되며 왜곡된 의사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와 철저히 연관성 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데페아 통신에서 소송청구인이 말한 표현은 지금까지 투자자의 이익이 불충분하게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자보호소송에서 승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데페아 통신과의 대담내용과 연관하여 소송과정에서의 미약한 성공이 미약한 성공가능성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로부터 입법자는 법

틀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소송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송절차가 부분적으로 항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한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성이 결여된 성공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부족한 성공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표현의 정당성은 의문시될 수 있다. 하지만 데페아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결론을 전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의문시되지 않는다.

소송청구인이 순수하게 과거 상황과 관련하여 표현한 내용에 대해 피고가 인용과정에서 데페아 통신에서의 표현과는 달리 불충분하고 불명확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라는 표현과 함께 데페아 통신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ES의 독자들도 소송청구인이 미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청구인의 대담내용은 내용에 있어서 왜곡되어 표현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용에 있어서 분류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청구인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 처 : AFP 38 Jahrgang Heft 1 - 2008 SS. 55~58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본 판결 1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 등 기사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 甲野太郎

피 고 : 乙川花子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산업경제신문사

피고대표자 대표취체역 : 佳田良能

도쿄지법 2006(7) 제25914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2007. 12. 5 민사 제32부 판결, 청구 기각 · 확정

2007년 8월 29일 변론 종결

참조조문 : 민법 723조 · 709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만엔 및 2006년 11월 8일(불법행위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는 「석간후지(フジ)」수도권 판에 별지1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참가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500만 엔의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등

(1) 원고는 A주식회사(이하 「A사」로 한다)의 집행임원이며 피고는 동사의 전 사원이다.

(2) 피고는 2006년 9월 11일 원고로부터 세쿠하라(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의 일본식 약어로 성추행을 뜻함)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원고 및 그 사용자인 A사를 피고로, 연대하여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하 「별건 소송」으로 한다) (현저한 사실).

(3) 보조참가인은 일간지 「석간후지」 2006년 11월 8일호 지면에 「『DOA(Dead on Arrival의 약자)』보다 과격했던 성추행(セクハラ)기교」라는 큰 제목으로 별지2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를 게재하여 발행했다.

본건 기사에는 「甲野의 성추행으로 나는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기재(이하 「본건 ①부분」이라 한다) 및 「소장(訴狀)이나 본인의 말에 의하면 전(前) 사원이 최초로 성추행 행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2003년 9월 9일이었다고 한다」는 기재(이하 「본건 ②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2. 쟁점

- (1) 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
- (2) 본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
- (3)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의 위법성
- (4) 원고의 손해
- (5)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성 및 상당성

3.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아래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거론되므로 생략함)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1) (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에 대하여

(1) 신문기사의 제목은, 우선 독자의 눈을 끄는 부분이고, 독자에게 본문 기사의 내용을 추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본건 기사의 별지2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확실히 본건 기사에는 「『DOA』보다 과격했던 성추행 기교(セクハラ技)」라는 표현으로, 「성추행 기교」라는 부분이 특히 큰 활자 포인트로 기재된 큰 제목이 있다.

또한 본건 기사 중에는 「택시 안에서 강제적인

키스, 출장지에서는 관계를 강요, 「입속에 혀까지, 「부적절한 행위, 「피해자가 역으로 하고 압박받아…」 등의 소재목이 본문의 활자보다 큰 활자 포인트로 기재되는 등 성추행 행위를 특별히 나타낸 기재(記載)가 있다. 또한 본건기사 중에는 「전 사원으로부터 1,000만 엔이 청구된 초(超)인기게임 개발책임자」라는 소재목 등 성추행 행위와 원고를 결부시키는 제목도 있다.

상기 대체목과 소재목만을 보면, 본건 기사는 일반독자에 대해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원고)가 「전 사원」(피고)에 대해 「택시 안에서 강제키스, 출장지에서는 관계를 강요, 「입속에 혀까지, 「『DOA』보다 과격했던 성추행 기교」를 자행했고, 그 후 「피해자」(피고)가 「역으로 하고 압박을 받는」 한편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원고)가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격하(格下)당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건 기사에는 「전 사원으로부터 1,000만 엔의 청구를 받은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라는 제목 외에 「도쿄지법에서 재판 중」이라는 소재목도 기재되어있어, 본건 기사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본건 기사가 일반독자에 대해 「전 사원」(피고)이 「초인기게임 개발책임자」(원고)로부터 「택시 안에서 강제키스, 출장지에서는 관계를 강요, 「입속에 혀까지」 등의 성추행 행위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도쿄지법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기사의 제목만으로 본건 기사의 명예훼손성을 판별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제목은 독자에 대해, 본문 기사의 내용을 추지(推知)케 하여 본문

기사의 선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자는 제목뿐만 아니라 본건 기사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 등 기사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한다.

(2) 그러면 본건 기사의 본문에 대해 검토한다.

(가) 본건 기사의 모두에는 「…甲野太郎씨(39)가 여성인 전 사원(31)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도쿄지법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7일에 알게 되었다」고 성추행 행위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나타낸 기재 외에 「그녀는 9월 8일에 동사를 퇴직하고 10일에 甲野씨와 동사를 제소, 10월 4일에 제1회 구두변론이 열렸다」고 전기 소송이 계속(繫屬)중임을 밝힌 기재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추행 행위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그것들은 「소장(訴狀)이나 본인의 말에 의하면」 혹은 「…라고 한다」는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로서가 아니라 피고의 별건 소송에서의 주장임이 명시되어있다.

(나) 또한 본건 기사에는 「사내조사에서 甲野씨는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의에 의한 연애했다』고 주장」이라 하고 A사내의 조사단계에서의 원고의 주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코멘트했다」고 하여, 보조참가인의 취재에 응한 A사 담당자의 코멘트가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기재들과 전기의 소송 계속의 기재를 함께 읽어보면, 본건 기사에는 본건 성추행 행위의 유무에 대해 소송에서 원고 및 A사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별건 소송에서의 본건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판명될 것이므로, 일반 독자는

피고가 주장하는 본건 성추행 행위를 곧바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이상에 의하면,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본건 기사 전체를 볼 경우, 본건 기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성추행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동 소송에서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본건 피고의 주장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해 원고는, 본건 기사는 단순한 제소(提訴)보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나) 확실히, 본건 기사는 그 대부분이 별건(別件) 소송의 원고인 본건 피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A사에 의한 사내조사 당시의 주장을 기재하는데 그쳤으며, 본건 기사 게재에 있어 원고의 주장이 게재되지 않았던 것이나, 상기 표현 중 신문기사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분이 있어 「『DOA』보다 과격했던 성추행 기교」이라는 대체목을 붙인 점 등 적절치 못한 혐오(嫌惡)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본건 기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지에 관해서는 전기 판시한 그대로이다. 또 본건 기사가 별건 소송의 제1회 구두변론부터 약 1개월 후에 게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점에서의 보도방식으로서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건 기사가 원고의 주장이나 A사의 코멘트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건 기사가 통상적인 제소보도의 방식을 현저히 이탈(逸脫)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송상태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한쪽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독자에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소괄(小括)

따라서 본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3) (피고의 보조참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1)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귀착되나 본건 사안의 성질을 감안하여 쟁점(3)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2) 피취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신문사에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어 이에 의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경우, 당해 제3자가 그 정보제공행위에 관해 피취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취재자의 정보제공과 제3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는 신문사의 취재와 편집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것이므로, 피취재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발언내용 등이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취재자로서도 그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피취재자의 정보제공을 원인으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어, 이로 인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피취재자의 정보제공과 제3자의 사회적 평가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피취재자가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신문사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 후 취재를 받는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취재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발언내용 등이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취재자로서도 그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증거(갑36, 병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년 10월 중순경, 「석간후지」 보도부의 北川昭夫차장(이하 「北川」으로 한다)에게 게임소프트 업계에 정통한 프리라이터로부터 「원고를 성추행으로 제소한 부하 여성이 있다. 기사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 바란다」는 취지의 정보가 들어왔다.

(나) 北川으로부터 동 정보가 기사화될 수 있겠는지 취재해 보도록 지시를 받은 동 보도부 소속의 南野和男(이하 「南野」로 한다)은 전기 프리라이터를 통해 피고와 연락을 취한 후 동월 27일 경 피고를 면담, 취재했으며, 그 취재내용은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취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원고 및 A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제소한 사실

- 성추행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 원고의 성추행 행위에 관해 피고가 A사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실 및 A사의 대응

- 피고가 A사를 퇴직하게 된 경위

(다) 南野는 그 후 피고로부터 별건소송에서의

답변서를 팩시밀리로 수령하는 등 보충취재를 하여 본건 기사를 집필했다.

(4) 전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취재를 계기로, 보조참가인의 보충취재 및 편집을 거쳐 보조참가인의 판단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그대로의 형태로 기사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보조참가인과 사전에 의사를 통한 다음 취재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와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만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령 본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와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가 보조참가인과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독립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소괄(小括)

그러므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보제공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本訴)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사죄광고 내용, 별지2 사죄광고 게재조건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 1269호 PP. 226~231.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일본 판결 2

「붕괴된 생활쓰레기 리사이클 御殿場(고덴바) RDF처리의 실태」
라는 제목으로 된 서적의 저작·출판에 대해 전 고덴바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 内海重忠

피 고 : 亡 乙川太郎 소송승계인 乙川花子 외 2명

주식회사 綠風출판

피고대표자 대표취체역 : 高須次郎

靜岡지법 沼津지부 2005(7) 제21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7.3.13 민사부 판결, 청구 기각 · 확정

2006년12월26일 변론 종결

참조 조문 : 민법 709조 · 723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기 각 피고 등과 연대하여 500만 엔 및 2004년 6월 2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사실 및 이유

제2. 사실의 개요

제1. 청구

1. 피고 망 乙川太郎의 소송승계인 乙川花子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과 연대하여 250만 엔, 동 乙川薫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과 연대하여 125만 엔, 동 乙川櫻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과 연대하여 125만 엔 및 2004년 6월 2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은 고덴바시(御殿場市) 시장이었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綠風출판(이하 「피고회사」로 한다)이 출판한 乙川太郎(이하 「太郎」으로 한다)의 저작 「붕괴된 생활쓰레기 리사이클 고덴바 RDF 처리의 실태」(RDF는 Refuse Derived Fuel 의 약자로 생활쓰레기 재생연료)라는 표제의 서적(이하 「본건 서적」으로 한다)에 대해, 소위 RDF 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도입을 원고가 적극 추진했는데 그 문제가 선거의 중요쟁점이 되면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원인이 되어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술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소송 계속(繫

屬)중에 太郎이 사망했기 때문에 승계자인 그의 유족과 피고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우선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본건 소송이 소권(訴權)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검토한다.

(1) 본건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서적이 출판되어 본건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경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본건 서적은, 일간시즈오까(日刊静岡) 기자인 太郎이 동 지면에 1998년 5월부터 2001년 1월에 걸쳐 연재한 본건 시설에 관한 기사를 근거로 집필한 것으로, 2004년 6월 20일 피고회사에서 간행, 전국에 배포되고,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시즈오까신문 각 지면에도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고텐바시 지역의 주요서점 점포 앞에 쌓아 놓고 동년 7월 17일 고텐바시내의 호텔에서 출판 축하회까지 개최되었다.

(나) 원고는 신문기사의 연재나 본건 서적의 출판과 기술(記述)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원고에 관한 기술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신문기사 연재 중에는 물론 본건 서적이 출판·판매된 뒤에도 원고와 그의 관계자들은 太郎이나 피고회사에 대해 그 내용에 관한 조희, 항의, 진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05년 1월에 실시된 고텐바시 시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본건 서적이 상대후보 진영에 의해 비판재료를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본건 소송의 제기를 결의했다. 그리고 피고 등에 대해 사전 통고없이 본건 소송을

제기한 후 간사신문사인 마이니찌신문 누마즈(沼津)지국 앞으로, 본건 서적에는 곳곳에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기재가 있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팩스로 송신했다. 한편 피고회사 대표자는 마이니찌신문 기자로부터 제소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太郎도 피고회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앞으로 검토할 본건 서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구제를 청구한 것을 명확하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와 같은 동기나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소송은 소권(訴權)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의 주장은 채용하지 않는다.

2. 본건 서적의 명예훼손의 해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1) 본건 서적(甲1)을 통람하면 그 개요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가) 본건 서적은 서장(序章)에 이어 제1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 그 뒤에 자료로 「고텐바·고야마(小山) RDF센터 계획개요」의 소개와 「전국의 중·대규모 RDF시설」의 일람표, 그리고 맺는 말로 끝내고 있다.

(나) 서장에서는,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의 하나로 등장한 RDF방식이 「꿈의 생활쓰레기 리사이클」이 아니라 「환멸, 혹은 지옥의 양상이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는 리스크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서 매각하려는 시공메이커의 비뚤어진 기업윤리가 표출되고 있다고 하여, 본건시설을 증거로 끌어내 그 계획의 당초부터 취

제한 입장을 통해 이 공공사업이 「폐배한 유산」임을 검증, 생활쓰레기 문제 본질의 일부분을 밝히려고 한 것이 본건 서적에서의 저자의 목적, 의도로 들어나고 있다.

(다) 이어 제1장에서는 「생활쓰레기 고형연료(RDF)처리를 결정」이라는 표제로 「[소각방식을 방기(放棄)]」라는 항목으로 시작하여 RDF방식의 계약체결과 본건 시설의 준공까지의 경과가 기술되어있다.

(라) 제2장 「꿈(희망)의 시설에서 지옥의 시설로」에서는 본건 시설에서의 시운전 개시부터 갖가지トラブル이 발생한 상황이 기술되었다. 제3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행각」이라는 제목으로 본건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이에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가 기술된 다음 개조공사가 끝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쓰면서 「이 화재로 가장 당황한 사람은 조합관리자인 고덴바시장. (중략) 표정도 경직되고, 어려운 사태에 몰린 자신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다. (중략)」고 기술하고, 화재사고를 당한 후 그 재발방지를 위해 센서를 설치했으나, 그 영향으로 미묘한 변화에도 센서가 작동하여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하는 등 「만화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RDF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 「오싹할 정도의 공포가 몰려왔다」면서 시설개조에 의해 경비가 증대한 점을 지적하고, 본건 시설을 리사이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흉으로 지적될 괴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기술로 제3장의 끝을 맺었다.

제4장 「계속 고등(高騰)하는 유지·관리비」에서는 본건시설의 운영·관리비에 막대한 원가가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으며, 제5장 「날조된 기술평가서」에서는 RDF방식을 선택하면서 제출받은 기술심사보고서에 얽힌 문제를, 제6장 「생산되어

도 용도가 없는 RDF」에서는 제조된 RDF의 소비처 확보문제를 각각 소개하고 있다.

(마) 제7장 「혼미(昏迷)하는 기업체와의 교섭」에 들어가면, 본건시설의 트러블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기업체 간의 교섭상황과 함께 책임을 추궁하려는 조합측이 기업체측에 의해 농락당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RDF문제로 현직 시장이 낙선)」이라는 항목에서는 2001년 1월에 실시된 고덴바 시장선거의 상황이 소개되었으며, 그 속에 본건 기술 (마) 및 (사)가 있다.

(바) 제8장 「제3자 기관에 검증을 위임」에서는, 고덴바시가 사태의 타개를 위해 제3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시설의 검증을 위임한 경위를 기술했으며, 제9장 「RDF 생산·연소 시설의 설치에 이의(異議)있다」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상황이 소개되었다. 제10장 「생활쓰레기 처리-원점으로 돌아가다」에서는 그 이후의 고덴바시에서의 생활쓰레기 수집과 처리상황을, 제11장 「그리고 제소(提訴)」에서는 RDF문제에 관한 기업체와의 교섭이 암초에 걸려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각각 소개했다. 종장(終章)인 제12장 「RDF가 가져다준 것」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이라는 미명아래 『꿈의 리사이클』로 출발한, 가연(可燃)생활쓰레기를 고형(固形)연료화하는 RDF시설은 고덴바·고야마(小山)의 경우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지옥의 리사이클』로 변모하고 말았다」고 본건 시설을 총괄한 다음 생활쓰레기 시스템을 매각하는 기업체의 무책임한 상법을 비판하고, 기업체와의 재판결과를 전망하면서 본문을 마감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은 본건 서적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기술 부분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신문이나 서적 등의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데(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판결), 본건 서적의 논지로서 일관되고 있는 본건 시설에 대한 통렬하고도 신랄한 비판과 함께 위에서 적시된 사실을 읽었을 때, 이와 같은 비판의 화살이 본건 시설의 도입을 결정한 행정당국, 특히 그 중에서도 최고책임자였던 원고에게 향하고 있음을 순수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로부터 받는 원고의 정치가로서의 명성, 신용 등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서적의 원고에 관한 기술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다음은 본건 각 기술의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전기 본건 서적의 내용을 보면, 그 기술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음은 명백하며, 또한 본건 증거(을41, 피고회사 대표자 본인)에 의하면 출판의 목적과 의도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면 본건 서적에 기술된 내용의 진실성과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 우선 본건 증거(갑3, 6, 9, 11, 17, 19, 을1, 3, 5, 7, 9, 10, 14, 17, 19, 36, 47, 49, 51, 원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합은 고텐바시와 고야마쵸(町·우리나

라 읍(邑)에 해당)가 쌍방에 걸쳐있는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조직한 지방자치법상의 일부 사무조직이며, 의회와 집행기관에 의해 구성되어있다. 집행기관인 관리자 등의 인선은 고텐바시와 고야마쵸의 장이 호선으로 선임되고, 사무는 고텐바시와 고야마쵸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나) 조합은 1989년 8월 가연생활쓰레기 소각방식으로 스토커방식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1990년 12월 28일 고텐바시, 고야마쵸, 조합 및 고야마쵸 桑木구 간에 스토커방식에 의한 가연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건설과 조업(操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1991년 3월 스위스의 카트렐사가 개발한 RDF방식을 미쓰비시상사 등에서 기술을 도입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것을 계기로, 고텐바시에서 정보수집, 해외시찰 등을 통해 검토를 계속한 한 끝에, 1992년 말 조합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카트렐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도달했다.

(라) 이러한 가운데, 원고는 1992년 말 국토청(당시) 대도시권 정비국 특별정비과장직을 사퇴, 1993년 1월에 실시된 고텐바 시장선거에 출마하여 첫 당선을 했다. 그리고 전임자로부터는, 신청소센터의 안건에 관해서는 RDF방식으로 한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속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며, 또한 桑木구와는 소각방식에 의한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처리방식의 결정과 병행하여 해당지역의 조정을 거친다는 취지의 인계를 받았다.

(마) 원고는 시장에 취임한 직후인 1993년 3월 「고텐바시 생활쓰레기처리기본계획책정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켜 위원장에 야스다(安田)조교수를 위촉하는 한편 후생성(당시)의 외곽단체인 폐기

물연구재단의 평가위원장으로 출신대학의 동급생이었던 요코다(横田)교수를 고텐바시로 초빙, 조합사무국에 대해 고행연료화시설의 역사, 일본의 기술상황, 조사상황 등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원고는 1993년 7월 19일에 개최된 조합의회(議會)의 위원회에서, 관리자로서 RDF의 추진화는 종전과 같이 해나가겠다고 했으며, RDF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생활쓰레기를 연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치졸한 처리방법이고, 일단 고행연료로 하여 이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편이 우수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원고는 카트렐방식이나, 리사이클매니지먼트 방식이나, 혹은 그 외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좀 더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해, 결국 카트렐방식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채 고행연료 처리방식의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바) 그런데 건설예정지인 桑木구에서는, 일단 소각방식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F방식 도입이 수면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태도가 경화되고, 또한 桑木구가 속해있는 고야마쵸(小山町) 의회에서도 고텐바시의 주도로 RDF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저항감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어 「조합의회생활쓰레기 소각장건설검토위원회」에서는 고텐바시 시장이 桑木구를 방문, 주민들에게 사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조합직원이 桑木구 전 가구를 호별방문, 사과와 해명을 했으며, 그 후 원고와 다시로 고야마쵸(町·우리나라 읍에 해당) 정장(町長)도 桑木구를 방문했다.

(사) 그 후 1994년 3월 조합의회의 위원회에서 고행연료화 처리방식을 정식으로 채용키로 한데 이어 동년 10월에는 동 위원회에서 고행연료화의 방식을 카트렐방식으로 결정했으며, 동년 12월 9

일 고텐바시, 고야마쵸, 조합 및 桑木구 간에 RDF방식에 의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 상기 협정을 일부 변경하여 교환했다. 이어 동월 13일 본건 시설의 건설공사실시설계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고 다음 해에 공사청부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95년 11월 1일 본건 시설의 건설공사가 착공, 진행되는 한편 조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RDF의 소비처 확보문제 등이 토의되었으며 국내 유사시설에 대한 시찰도 계속되었다.

(아) 다마호(玉穂)지구에 건축되는 옥내풀에 RDF 고행원료 보일러를 채용하려는 고텐바시의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다이옥신 발생의 위험성을 내세워 도입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물리치고 채용을 결정했다.

(자) 한편 본건 시설에서는 1998년 2월 3일부터 시운전 조정용 생활쓰레기의 반입이 시작되었으나, 변경공사의 필요성, 당초의 예산을 대폭 상회하는 유지관리비문제, 제조된 RDF의 품질과 제조공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두 번의 화재사건까지 겹쳐, 1998년 5월 31일 화재복구공사, 2000년 2월 28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개조공사를 거쳐 7월 2일에 완료했다.

(차) 1998년 7월 8일 조합은 본건 시설의 일련의 트러블과 관련, 공동기업체로부터 납기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본건 시설의 개조공사와 관계되는 몇 가지 제안을 받았다. 이와 관련 1999년 5월 20일 개최된 조합의회 위원회에서, 원고는 납기지연손해금 부과문제를 언급, 이를 부과했을 경우 재판에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며, 계쟁(係爭)기간, 화해권고까지의 과정도 지연될 염려가 있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조합에도 느슨한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도 없어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

한 일련의 원고의 발언은 모두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카) 그런 가운데, 현직인 원고와 시 직원이었던 나가다(長田) 현 시장이 입후보한 2001년 1월의 고텐바시 시장선거에서 현직 유리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얼굴의 나가다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선거 직후 원고 진영의 시의원을 취재한 太郎은 「RDF가 실패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것이 현직의 유일한 실정이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이러한 선거결과를 보도한 시즈오카(靜岡)신문도 「당초의 의도대로 기능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고형연료화시설 『RDF센터』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선거전을 통해 단숨에 높아져, 예상 이상의 비판표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본건 각 기술의 진실성, 상당성을 검토한다.

(가) 본건 기술 (가) 내지 (다)에 대하여

• 본건 기술 (가) 내지 (다)에서, 원고가 특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①원고가 스스로 정보수집, 조사·연구를 하여 RDF방식의 채용에 「go sign을 내렸다」는 점 ②원고 스스로 桑木구의 전 가구를 방문, 사죄했다고 한 점 ③RDF방식의 채용을 위해 다시로 고야마쥬 정장(町長)과 의원 등에게 작용하여 설득했다고 한 점 등으로,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기술에 의해 일반독자에게 원고가 RDF방식의 채용을 주도했다는 오인(誤認)을 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이를 검토해 보면, 상기 인정사실 (1)(나) 내지 (아)에 의하면 원고가 고텐바 시장 취임 이전부터 RDF방식을 후보의 입장에서 검토했으며, 시장 취임 후 조합관리자의 지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RDF방식이라는 방향이 잡혀있으므로 계속 검토되어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계를 받았

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면, 건설예정지인 桑木구의 설명과 설득이 끝나지 않았고, 고텐바시의 추진 방법에 桑木구의 태도가 경화(硬化)되어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고야마쥬 의회에서도 RDF방식 채용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다시로 고야마쥬의 장(長)조차도 고텐바시의 추진 방법에 비판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 RDF방식 중 카트렐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원고의 시장 취임 때는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는 시장 취임 직후 요코다 교수를 방문, RDF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한데 이어 의원, 직원, 桑木구 주민에게 국내 유사시설에 대한 시찰을 계속했고, 스스로도 취임 1년째가 되는 1993년도에 3회에 걸쳐 시설 시찰을 하는 한편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RDF의 유의성(有意性)을 설명하고, RDF에 관한 심포지엄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의견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원고에 의한 외형적 사실을 볼 때 원고는 전임자로부터의 인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에 관해 그 나름대로의 조사·연구를 하여 얻은 식견에 근거하여 그 채용 여부를 판단했으리라는 것을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적하는 ①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귀결로 원고가 「go sign을 내렸다」고 표현한 것은 결코 부당한 것도 과대한 것도 아니다.

• 더구나 원고가 지적하는 ②의 점에 관해, 본건 기술(記述) (나)에서는 원고 자신이 桑木구의 전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합 직원이

전 가구를 방문하여 사죄와 설득을 했고, 또한 고텐바 시장인 원고 스스로가 설명을 위해 桑木구로 갔다는 점에서는 부합하고 있어, 그 주요부분에 있어 큰 오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원고가 지적하는 ③의 점에 대해 검토하면, 이상과 같은 원고의 일련의 활동에 의한 최종적인 결과로서, 고텐바시의 추진 방법에 태도가 굳어져있던 桑木구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론이 있던 고야마쵸 의회나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고야마쵸의 장도 RDF방식에 찬동하여 본건시설의 건설에 이르렀다는 경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적극적인 태도에 소극적이었던 관계자들이 감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추인(推認)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 따라서 본건 기술 (가) 내지 (다)에 대해서는, 그 중요부분 모두가 진실이거나 혹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본건 기술 (라)에 대하여

상기 인정사실 (1)(차)에 의하면, 원고가 위치한 입장과 거기에서 나타난 일련의 언동으로 볼 때 「불가해(不可解)」, 「우유부단한 대응」, 「소극적인 태도」라는 평가나 비판은 하등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건 기술 (라)에 대하여, 합동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언동은 사실이며, 그 밖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원고의 언동에 대한 시민일반의 평가로서 적시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가 혹은 그 평가를 원고의 언동에 대한 논평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논평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 본건 기술 (마) 내지 (사)에 대하여

상기 인정사실 (1)(카)에 의하면, 시장선거에서 RDF문제가 클로즈업 되고, 원고에 대한 비판표가 결집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太郎도, 원고 진영

의 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취재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RDF문제가 「선거전의 자웅을 결정하는 과제」였다는 평가가 타당했으며, 그 기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기술 (마) 내지 (아)에 대해서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인정된다.

(라) 본건 기술 (자)에 대하여

상기 인정사실 (1)(아)에 의하면, 고텐바시는 RDF의 소비처의 하나인 다마호(玉穗)지구의 옥내풀의 열원(熱源)으로 고흥화연료를 쓰도록 계획했으나, 다이옥신 발생에 의구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이를 밀어붙여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의향이 작용했다는 것을 용이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인에 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기술 (자)에 대해서도, 적어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이상과 같이 원고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본건 서적의 각 기술은 모두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혹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공정한 논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64호 PP. 302~316.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호주 사례 1

**핵심적 의미 손상하지 않았다면
신문사의 편집행위는 정당**

언론평의회는 Arthur Hadaway가 「Bribie Weekly」 2008년 3월 7일자에 보도된 기고문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기각 처리했다.

그 기고문은 Hadaway의 집근방 통행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는 신문에 실린 내용이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평의회는 그 기고문이 편집을 통해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의미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평의회는 Hadaway와 신문사 편집인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Hadaway와 신문사는 기고문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모든 신문사는 기사의 분량, 문법, 명예훼손적 요소 등의 이유로

인해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 사건에서 변경된 Hadaway의 기고

문의 내용은 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취 사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평의회는 지난 2008년 2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Hadaway가 자신의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

호주 사례 2

**소문과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언론평의회는 서호주 자원부 장관인 Francis Logan이 「The Australian」가 Woodside Petroleum사가 운영하던 West Shelf 공장의 폐쇄와 관련한 지난 1월 2일 보도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제기 건을 받아들였다.

공장 폐쇄와 관련한 기사는 2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기사는 “혼란 상태에서 매입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9

만 달러의 가스료를 지불하게 됐다”는 제목 등으로 보도됐다.

Logan은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것은 주의 가장 큰 에너지 공급업체인 Verve Energy사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Builisers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Logan의 개입 때문에 Verve Ener-

gy사가 높은 인수 비용을 치르게 했으며, 이러한 일들은 그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자원부 장관의 불만 건에 대해 언론평의회는 “9만 달러의 가스비”라는 기사와 관련 가스비는 1만 달러에 불과하고 8만 달러는 디젤 가격이라는 사실과 그것은 당시의 시장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Logan을 겨냥한 비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사 중 소문에 근거한 것과 사실에 근거한 것을 구별해 내는 것은 신문사의 책임이라고 평의회는 판단했다. 신문사는 Burrup Fertilisers의 안정된 가스 공급을 위한 협상에 대해 누설된, 피고용인의 이메일에 담긴 발언에 근거해 보도를 합리화하려고 애써왔다.

평의회는 신문사가 Logan 장관이 Burrup Fertilisers사의 가스 공급을 위한 가격 협상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취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주장에 대하여 Logan 장관의 의견을 밝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건과 관련, 신문사는 Logan 장관의 언론 담당 비서와 연락했지만 Logan 장관이 Burrup Fertilisers가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하고 가격을 보장받도록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데 그쳤다. Logan 장관은 그때 “가스 가격에 관해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원 기사가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해, 평의회는 신문사가 Logan 장관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Logan 장관은 신문사의 보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Logan 장관의 브리핑에 의하면, 신문사는 심지어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한 가스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그가 이에 개입했다고 곡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의 발언을 유죄를 인정한 것 마냥 해석함으로써 Logan 장관을 불공정하게 대했다. “보도를 3일간 부인한 이후 Logan 장관의 자인한 것은...”으로 시작되는 2월 23일의 보도는 합리적인 독자에게는 Logan 장관이

Burrup Fertilisers사와의 가스 가격 협상에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신문사가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불만 제기에 대응해, 신문사는 결국 Logan 장관이 보낸 서한을 보도했으나, 신문사가 그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장관이 비판한 부분을 삭제했다. 그 서한은 2008년 3월 22일에 보도됐다. 신문사는 Logan 장관의 언론 담당 비서가 서한을 「The Australian」 시드니 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퍼스나 시드니 지사 그 어느 쪽에도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한의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신문사가 Logan 장관의 개입 보도에 대해 신문사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불만 제기를 인정했다. □

영국 사례 1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무 있다

Carloyn Pople는 언론불만처리 위원회(PCC)에 2008년 2월 5일 「Scarborough Evening News」가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게시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PCC

의 실천강령 제3항(프라이버시)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또 그 사진이 “마약과 현금 압수”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

회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촬영하였으며 경찰이 마약을 찾기 위해 신청인의 집을 수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영상은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사진은 신문을 통해 기사화 되었다.

불만 신청인은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동의없이 보여준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 보도는 그녀의 집 주소까지 명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약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으나 그녀는 그것의 출처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고, 아직 그 건에 대한 기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문사는 (보도와 관련해) 마약 퇴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과 동행하여 수색에 참여하였으며, 신청인의 집에서 불법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그 보도는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소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에 대하여서는 그 주위 사람의 집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에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승인 없이 신청인의 집 내부를 촬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특히 그 주소를 공개한 것은 더욱 더 그러한 것이라며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과 함께 수색현장을 촬영했다는 것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보다 공중의 관심사가 우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은 촬영장면이 경찰의 임무수행 중 중요

한 부분을 보여줄 것과 특별한 범죄의 폭로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마약 퇴치와 관련된 경찰의 캠페인을 보여주는 것은 공중의 관심사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에 대한 충분한 보호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동영상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뛰어넘어 불만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영국 사례 2

사고에 대한 보도라도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은 신중하게 다루야

Paul Kirkland는 Hartley 가족을 대신해 「Wiltshire Gazette & Herald」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8년 2월 13일자 “사고 후 폐쇄된 길”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2월 14일자 “운전기사의 뒷”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장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의 가족을 충격에 빠뜨려 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 제5조(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입)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제1조(정확성)와 제2조(반론기회)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러나 언론불만처리

위원회(PCC)는 신문사의 보도에 대한 구제 행위가 충분했다고 판단,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불만 제기인의 장모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신문이 사고에 대한 온라인 기사를 제공하면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포함시켰고, 불만 제기자는 그 사진이 너무나 적나라하다고 생각했다.

불만 제기인은 그 기사가 가족 중 누구도 그 사고와 부상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

도되었으며, 신문이 경찰관의 말을 인용, “생명이 위독하다”고 (부정확하게) 보도해 그것이 심각한 사고였다고 이해하도록 한 것은 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입이자 부주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그 다음 날 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였으나 불만 제기인은 여전히 그 기사가 실천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신문사는 그 사고가 한 낮에 일반 도로에서 일어나 긴 정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고, 불만 제기자가 Wiltshire 경찰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사는 불만 제기인의 의견을 다음 날 신문에 실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충분한 구제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실천강령이 신문사에게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대한 사항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신문은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불만 제기인의 얼굴이 인식가능하지 않고 이름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차량의 종류와 번호판도 사진에서 알아 볼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 (불만 제기인 얼굴의 일부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 게재되었으며 다음날 신문에 보도된 그 사진은 분명히 해당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고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가족이 사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고자의 상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사고자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신문사는 사고가 공공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관한 것과 의료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진을 보도할 때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충분한 필요가 있으며, 다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자연재해 등 공중의 관심사가 지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건의 경과에 대해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일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서 사고자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자의 얼굴과 치료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는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충분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문사의 이후 조치에 대해 주목했다. 신문사는 사과와 함께 즉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고, 가족의 비판과 신문사의 사과를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홈페이지에 사진이 게재되었던 비교적 짧은 시간을 고려하면, 실천강령 제3조, 제5조와 관련한 불만에 대한 조치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신문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 신문상의 사진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사진에서는 불만 제기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조치되었고, 치료받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고장면을 담은 사진의 사용에 대한 가족의 염려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신문의 사진 사용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윤리강령 제1조, 제3조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서는 신문사가

현장의 경찰관이 사고자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을 위원회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그 건의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경찰의 명확한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문이 발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사고자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문사가 그 사건에 대해 빠른 정정을 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고자의 상태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그 건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신문에 실은 것 또한 적절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들은 윤리강령 제1조, 제2조와 관련한 불만처리에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사로 인해 피해 가족이 느낀 감정과 불만에 대해 신문 편집인이 취한 조처를 고려할 때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

미디어 고문인 Iain Butler가 공개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Butler는 기사가 나가자 바로 교육부 장관인 Kare Sewell의 서한을 가지고 신문사를 찾았으며, 이 기사는 부정확한 것이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직원이 220명 증가했다는 내용은 잘못이며 실제로는 2,000명이상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보는 신문사에 전해졌고 신문사도 실수를 인정했지만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정확한 보도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신문사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11월 19일에 불만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연봉 총액의 증가는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담당 직원들이 2200명 이상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10만 달러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 직원도 4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전체 인원에 대비한다면 평균 연봉은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신문사에도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또 Donna Hikey는 인금인상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그 보도는 공정함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 제목 역시 부정확한

뉴질랜드 사례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할 의무 있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는 교육부가 「The Dominion Post」의 2007년 9월 18일자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불만제기를 받아들였다.

「The Dominion Post」는 “9천4백만 달러의 월급이 분노를 불렀다”라는 기사를 통해 직원들의 월급은 2002년 이후 16퍼센트 올랐는데 반해 교육부 월급 총액은 154퍼센트 상승했으며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27명에서 142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으며, Wellington

College의 총장인 Roger Moses, 교장 협의회 의장 Arthur Graves 등의 비판적인 논평도 함께 실었다.

기사는 또 교육부의 인적자원 담당 Donna Hikey의 말을 인용, 이러한 상승은 220명의 특수교육 담당 직원의 증가를 포함하는 조직의 변화와 함께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와 교육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The Dominion Post」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신문사는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The Dominion Post」의 편집인은 12월 21일 불만제기 건에 대한 회신을 통해 그 기사는 지난 7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당한 요구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교육자금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그 기사에 대한 보도 연기 요청을 해오자 휴가 중이던 담당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으나 최종 기사 마감일까지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최종 기사는 다른 기자에 의해

쓰여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원래 담당이던 기자는 교육부 미디어 고문인 Butler와 기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했으며 Butler는 그러한 수치들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편집인은 일부 잘못된 수치들이 사용된 것과 Ms Hikey의 말에 대한 인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음은 인정했다. 그는 Butler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의사가 있으며 그러한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논평들은 교육부가 제공한 수치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목 역시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평의회는 이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신문사가 수치와 인용 내용 중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러한 내용들은 이 기사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언론평의회는 정정보도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교육부와 신문사의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신문이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경감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관련, 제목 자체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기사 자체가 잘못된 가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부정확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도 표현의 자유”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및 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문연은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신혜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며칠 뒤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친일청산작업은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가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제3자의 시평을 실었다.

신씨 등은 민문연 앞에서 ‘민족말살연

구소’, ‘패륜아’라고 외치며 현관을 때어 내는 등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보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 서정갑씨 등은 같은 해 12월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를 선정하면서 민문연을 포함시키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민문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적행위’ 표현 및 친북단체 선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총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씨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봐 민문연에 1천700여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

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8년 7월 29일

강동순, 신현덕·이정식 상대 손해소 기각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이사와 이정식 CBS 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10일 기각됐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병실)은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 전 대표이사의 녹음행위에 대해 “진본이 있는 5명이 참석한 비공개 저녁식사 모임에서 그 중 일원인 피

고 신현덕이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소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녹음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신 전 대표이사가 이정식 사장에 녹음기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원고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의 사적 생활도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 △이 사건 비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히 침해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신현덕의 전달행위를 위법하게 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강동순 전 의원은 신현덕 전 대표이사와 이정식 CBS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8월 24일 서울 남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 2008년 7월 24일

“명예훼손 글 방치한 포털 3000만원 손해배상하라”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해당하며,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은 포털이 알아서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2일 김모(32)씨가 포털 뉴스로 게재된 기사, 블로그·미니홈피에 게시된 글, 그리고 이 게시물들에 달린 ‘댓글’ 등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네이버·다음·싸이월드·야후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액은 회사별로 네이버 1000만원, 다음 700만원, 싸이월드 800만원, 야후 500만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총 1600만원의 책임을 물었다.

김씨는 2005년 5월 자신이 사귀던 여성 서모씨가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김씨가 임신

한 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항의하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딸이 이때 받은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실은 직후였다. 이어 각종 포털에 김씨의 실명과 사진·소속·전화번호 등이 게재되고 비난 글들도 잇따랐다.

김씨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린 과립치한 남자”로 낙인찍혔고, 네티즌들의 협박을 받아 이사를 가고 다니던 직장도 대학도 그만뒀야 했다.

이에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가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갖춘 ‘언론’ 매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언론으로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포털이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해 기사를 실는 것이 ‘편집행위’에 해

당한다고 봤다. 또 포털이 하루 평균 5000~1만 건의 기사를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네티즌들에 전달하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기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달린 댓글,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글들을 방치했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처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스스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8년 7월 3일

미 연방법원 “익명의 소식통 공개 안 해도 된다” 판결

신문기사를 쓰면서 언급한 익명의 소식통 신원은 공공의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졌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이날 방위산업 스파이에 대한 신원을 건네준 미 행정부 내 소식통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것을 거부, 소송을 당한 워싱턴 타임스의 국가안보 전문가 빌 거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빌 거츠 기사는 지난 2006년 5월 16일자 신문에 중국 출신 엔지니어 치막과 그의 친인척들이 미 국방부 군사기술 기밀을 빼내 중국에 건네준 사실을 보도하면서, 법무부 내 관리로부터 신원을 확인해 보도했었다.

이로 인해 거츠 기사는 연방 보안당국으로부터 법무부 내 신원 정보 제공자들

밝히려는 요구를 거절, 법정에서 서게 됐다.

재판장 코맥 카니 판사는 “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최고로 중대한(paramount) 권익이다”고 지적하고 “거츠 기사가 스파이의 신원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을 위한 서비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 거츠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카니 판사는 이어 “제이 브래트 연방 검사 측이 주장한 항소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카니 판사의 이번 판결은 최근 뉴욕타임스 등 일부 신문에서 익명의 소식통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법정모독 혐의로 기자들이 구류형을 받거나, 거액의 하루 단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반하는 것이다.

빌 거츠 기사의 변호사 찰스 리퍼는 “미국에서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가 오래 됐었다”고 지적하고 “물론 법정마다 판결은 다르겠지만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추론은 매우 시려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거츠 기사는 선고 이후 “익명의 소식통은 바로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자유의 생명선이다”고 지적하고 “미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조항은 도전을 받았었으나 시정됐으며, 만일 그것이 없다면 정부의 실정과 권력 남용은 시정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2008년 7월 25일

인터넷 댓글 실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 아이디(ID)나 필명이 아닌 본인 실명이 게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시키더라도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방통위가 검토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의 본인확인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도입된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한정됐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이트 종류를 따지

지 않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으면 무조건 본인확인을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현재 37개에서 268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악성 댓글 비중이 1.9%포인트 감소했고 심각한 악성 댓글 비중도 8.9%에서 6.7%로 줄었다"며 "본인확인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을 표시하

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악성 댓글 옆에 자신의 이름이 함께 보여야 네티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제도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공청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창근 교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며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약용한 모욕, 명예훼손, 악플, 거짓여론 형성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08년 8월 8일

법원 "PD수첩, 정정보도하라"

광우병 논란을 촉발한 MBC의 지난 4월 29일 보도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른 만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이어 법원도 PD수첩의 일부 보도가 허위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PD수첩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PD수첩은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로 인식하게 한 부분 등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우너소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600마리의 다우너 소가 발생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PD수첩이 후속 보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정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영상 속 다우

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달라'는 원고측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정정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유전자형으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판단하기는 힘든 만큼 MM형 유전자가 많은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분류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볼 때 그 중 몇 가지가 수입된다는 식으로 특정해서 보도했어야 했다"며 반론보도로 이를 바로 잡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PD수첩이 인간광우

병으로 숨진 것처럼 보도한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보도는 허위이지만 후속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할 수단이 없다", "라면스프나 알약 캡슐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보도가 아닌 취재팀의 판단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만큼 정정·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방송 중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낭독해야 한다. MB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항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8년 8월 1일

‘일심회’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 판결

간첩단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간첩단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일심회’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장씨에게는 7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진 2006년 10월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취재진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간첩 혐의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발표하는 데 한정돼야 하는 수사기관의 발표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들은 국정원장의 발언에 신뢰성을 가졌다”고 말해 국정원 수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일신문 2008월 7월 10일

KBS ‘방통위 제재’ 불복 소송

KBS가 감사원 특별감사 비판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조치에 불복,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KBS는 이와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 소송 판결 전까지는 방통위 제재 효력이 중지된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BS는 최근 방통위가 “감사원 특별감사와 관련해 ‘KBS 뉴스9’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만큼 ‘주의’ 조치를 방송 고지하라”는 결정에 불복, 방송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KBS가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해 지난 5월 22일과 6월 11일 ‘KBS

뉴스9’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정성 훼손 우려’, ‘표적감사 비판 확산’ 등 제목으로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 등의 주장을 중점보도,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KBS 측에 명령 7일 이내에 ‘KBS 뉴스9’ 프로그램 종료 시 이 같은 주의조치 내용을 고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KBS는 “이번 특별감사가 KBS에 대한 압박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회적으로 제기됐고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평이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로 나타난 데다 이 사건 보도는 공적

인 관심사항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KBS 측이 소송과 함께 “방통위의 주의 제재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8월 5일

“학교 비방했다고 제적한 것은 부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한 박씨씨가 상지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 1994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 입학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김 전 이사장측 구인원진과 이후 선임된 임시 이사들 사이에 갈

등이 지속돼 왔다. 편입생이었던 박씨는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학교의 저지로 무산되자 언론사 두 곳과 인터뷰를 했다. 박씨는 ‘학교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 ‘(학교에) 반대가 득실거린다’는 등의 표현으로 학교를 비방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박씨를 제적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인터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반대가 득실거리는 것’이라는 등 발언이 학교 임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되지만 박씨가 학교 직원·학생 등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제적 처분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2008월 8월 18일

- 강재원(2008. 6월). 콘텐츠·망동등접근 규제에 IPTV 확대 적용은 타당. 신문과방송, 통권 제450호, 26-30.
- 권오근(2008. 여름). 선거보도 심의 사례 분석. 언론중재, 통권 제107호, 4-18.
- 김경환(2008. 3월).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 일본. 방송문화, 통권 제319호, 48-57.
- 김경환(2008. 4월).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 미국. 방송문화, 통권 제320호, 54-61.
- 김경환(2008. 5월).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 독일. 방송문화, 통권 제321호, 56-63.
- 김남석(2008). 정부와 언론의 관계 : 오늘의 이해와 내일의 모색. 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학회 주최 '정부와 언론의 관계 성찰과 모색' 세미나 발제문. 2008. 8. 8.
- 김병선(2008). 지역방송의 편성규제.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정책 : 분석과 제언' 세미나 발제문. 2008. 7. 17.
- 김연식·조성호(2008. 6월). PD저널리즘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2호.
- 김영수(2008. 6월). 융합 환경에서는 수용자 논의 중심 이동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50호, 36-41.
- 김영수(2008). 광고제도의 변화와 지역방송.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정책 : 분석과 제언' 세미나 발제문. 2008. 7. 17.
- 김영주(2008. 6월). 미디어 산업의 구조 변동 : 공급자 지형과 규제 정책의 변화. 미디어 인사이트, 통권 4호, 2-52.
- 김진웅(2008).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제 정립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방송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문. 2008. 6. 24.
- 김창룡(2008).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 PD수첩 사건의 주요 특징과 쟁점. 한국언론학회 주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 발제문. 2008. 7. 7.
- 김현식(2008. 7월). 포털 매트릭스 : 포털 제국과 문화의 위기. 로크미디어.
- 다니엘 솔로브(2008. 8월).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비즈니스맵.
- 문재완(2008. 6월).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 박기욱(2008. 8월). 위축되는 탐사보도(일본) - 비밀보호법 등 규제 강화로 심층취재 어려워져. 신문과 방송, 통권 452호, 164-167.
- 설진아(2008). PD수첩과 PD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 한국언론학회 주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 발제문. 2008. 7. 7.
- 심재철(2008). 신문광고 중단 소비자 운동 - 참아내기 어려운 압력에 대한 인내. 한국언론학회 주최 '광우병 파동에서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한계 긴급 토론회' 발제문. 2008. 7. 2.
- 양재규(2008. 6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7 - 기소 전 범죄보도의 위험성. 신문과 방송, 통권 450호, 152-155.
- 양재규(2008. 7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8 -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범죄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451호, 132-135.
- 양재규(2008. 8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9 - 연예보도에 관한 법적 쟁점 살펴보기(1). 신문과 방송, 통권 452호, 134-137.
- 언론중재위원회(2008. 6월).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5집. 언론중재위원회.
- 우병동(2008). 뉴스보도의 객관성 문제 - 최근 광우병 사태의 보도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광우병 파동에서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한계 긴급 토론회' 발제문. 2008. 7. 2.
- 이승선(2008).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대응, 어떻게 볼

- 것인가 : 언론법제적 시각. 한국언론학회 주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 발제문. 2008. 7. 7.
- 이용성(2008. 여름).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터넷 자료 근거한 오보의 발생구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제107호, 41-49.
- 이종욱(2008. 8월). 위축되는 탐사보도(유럽) - 협박·소송에 살해위협까지, 위기의 탐사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452호, 158-163.
- 이진구(2008. 여름). 의사공시자유권의 헌법적 제한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통권 제107호, 50-65.
- 이진로(2008). 지역방송 정책의 어제와 오늘.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정책 : 분석과 제언' 세미나 발제문. 2008. 7. 17.
- 이화행(2008. 여름). 인터넷을 통한 선거 관련 의사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 통권 제107호, 30-40.
- 이효성(2008. 여름). 지역신문에 나타난 18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논의. 언론중재, 통권 제107호, 19-29.
- 전범수(2008. 6월). 융합 시장으로의 진화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 필요 때문. 신문과 방송, 통권 제450호, 31-35.
- 정걸진(2008).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 유형과 특성.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대구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8. 7. 10.
- 정두남(2008). 방통융합시대 방송재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방송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문. 2008. 6. 24.
- 정진석(2008). 정부의 언론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학회 주최 '정부와 언론의 관계 성찰과 모색' 세미나 발제문. 2008. 8. 8.
- 차용범(2008. 여름). 알권리와 인격권의 법리 및 한계 - 피의자 신상공개보도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제107호, 82-91.
- 최민재(2008. 6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 수용자 인식과 쟁점. 미디어 인사이트, 통권 4호, 2-52.
- 최영목(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방송규제기능에 관한 검토.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방송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문. 2008. 6. 24.
- 한국언론재단(2008, 7월). 세계의 언론법제 - 정보공개와 언론, 2008년 상권, 통권 제23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홍수원(2008. 8월). 위축되는 탐사보도(미국) - 외부 압박과 재원 부족으로 계속 위축. 신문과 방송, 통권 452호, 152-157. □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 절차

▶ 조정·중재 신청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정·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조정·중재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서면의 제출, 구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 신청의 경우는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 조정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지만, 중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 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중재 신청기간

-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중재 처리기간

조정·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재부의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조정·중재 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는 조정·중재대리 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중재 효력

• 조 정

조정성립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언론사)은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성립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도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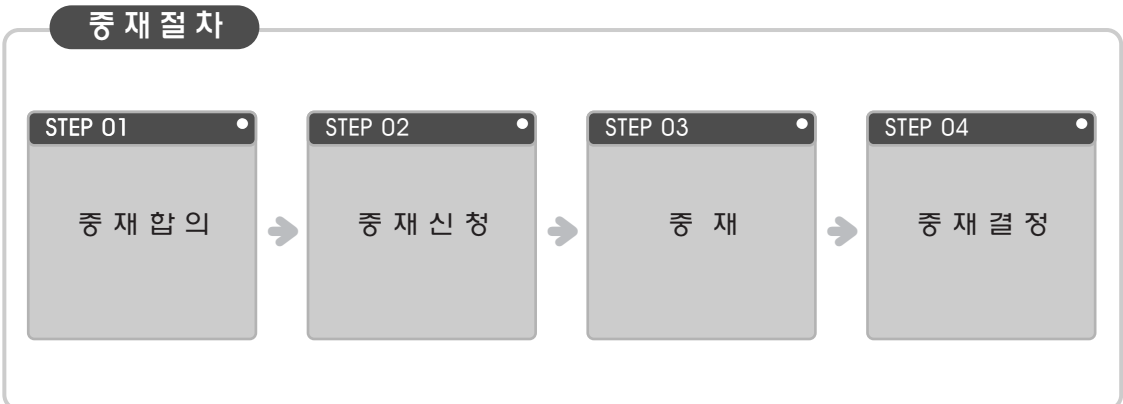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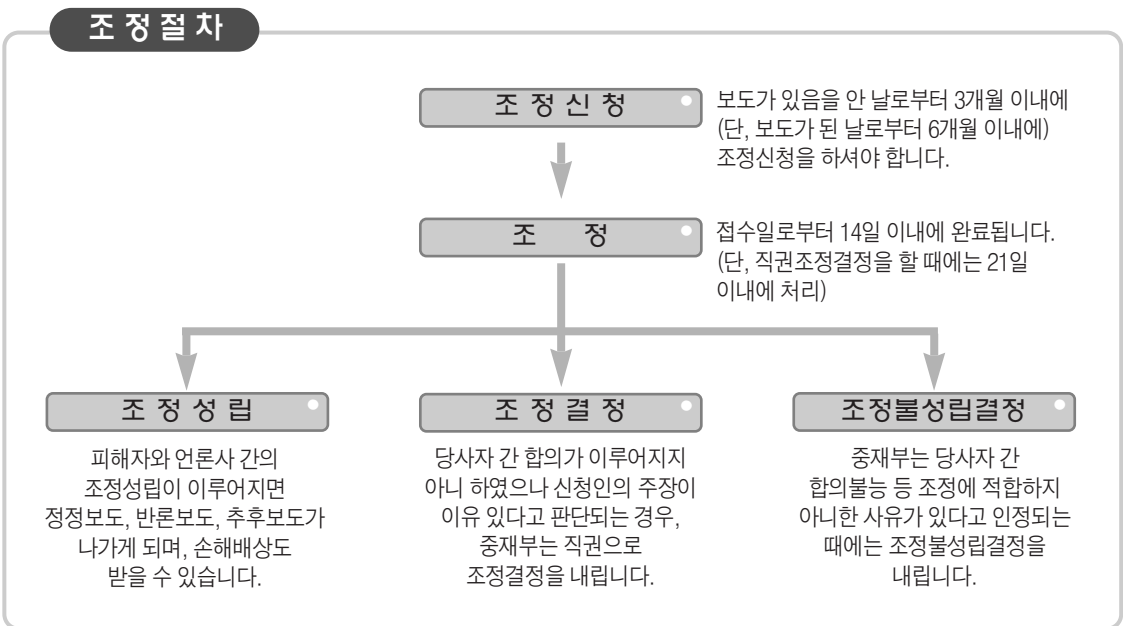
직권조정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다만,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조정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그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